

研究報告書 96-25

女性の 經濟活動と 家族福祉

李顯松

鄭京姬 韓慶惠

李慧京 姜惠圭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리말

80년대 이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현재 전체 여성취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기혼여성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세가구당 한가구는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로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여성의 전문직 혹은 사무 관리직 진출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맞벌이에 따른 가정의 문제점이 과거와 같이 貧困에 수반된 문제만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저소득층 및 중산층 모두에게 있어 맞벌이 가정의 확대에 의하여 가정을 둘러싼 社會規範 및 制度上的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므로서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家族福祉의 提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여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제 측면에 대한 경험분석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기획 및 편집은 李顯松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외 본원의 鄭京姬 책임연구원, 姜惠圭 주임연구원, 韓慶惠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교수, 李慧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데, 가족의 주요 영역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부분과 가족 정책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각 장의 집필자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序論(李顯松)

女性の經濟活動參與が家族の經濟的 삶에 미치는 影響(李顯松)

女性の經濟活動參與が家族構造 및 世代間의 關係에 미치는 影響
(鄭京姬)

女性の經濟活動參與が家族의 子女養育機能에 미치는 影響(姜惠圭,
李顯松)

低所得層 女性の經濟活動參與와 家族問題(韓慶惠)

女性の經濟活動參與와 家族福祉政策의 特性變化(李慧京)

要約 및 家族福祉增進을 위한 政策課題(李顯松, 鄭京姬, 韓慶惠, 李
慧京, 姜惠圭)

본 보고서가 출간됨으로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가져오
게 될 家族福祉의 변화상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이 불러 일으켜지기를
기대하며,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담당관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
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전
문가와 또한 본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변용찬 인구
가족연구실장, 박찬용 부연구위원, 그리고 편집에 많은 도움을 준 사
회복지연구실의 양시현 연구원과 박수진 연구조원, 인구가족연구실의
손숙자 연구조원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淸

目次

要約	11
第1章 序論	19
第2章 女性の經濟活動 參與가 家族의 經濟的 삶에 미치는 影響	26
1. 既婚女性の 就業 増加와 經濟的 動機	26
2. 既婚女性 就業의 家族所得 寄與效果	35
3. 要約	47
第3章 女性の經濟活動 參與가 家族構造 및 世代間 關係에 미치는 影響	50
1. 世代間 關係의 變化에 관한 理論的 背景	51
2. 女性の經濟活動 參與가 家族構造 및 家族關係에 미치는 影響	56
第4章 女性の經濟活動 參與가 子女養育機能에 미치는 影響	78
1. 女性の 就業과 子女 養育	78
2. 就業女性 兒童의 養育 實態	82
第5章 低所得層 女性の經濟活動 參與와 家族問題	98
1. 低所得層 家族의 特性과 家族問題	98
2. 低所得層 女性 就業과 家族問題	104
3. 低所得層 偏母家族의 家族問題	118
4. 低所得層을 위한 家族政策	125

第 6 章 女性の 經濟活動 參與와 家族福祉政策의 特性變化	127
1. 家族福祉의 概念 및 類型	128
2. 福祉國家와 家族	134
3. 就業女性과 福祉欲求	137
4. 就業女性家族을 위한 家族福祉政策 分析	144
5. 就業女性을 위한 家族福祉政策의 方向	151
第 7 章 要約 및 政策課題	155
1. 要約	155
2. 女性就業과 家族福祉 向上을 위한 政策課題	161
參考文獻	168

表目次

〈表 2- 1〉	夫婦 個個人の 就業 形態	35
〈表 2- 2〉	夫婦家口の 就業·非就業 結合類型	37
〈表 2- 3〉	맞벌이 夫婦家口の 就業 結合類型	38
〈表 2- 4〉	所得階層別 女性就業率 比較 (他家口員所得 基準 階層 區分)	39
〈表 2- 5〉	所得階層別 女性就業率 比較 (家族總所得 基準 階層區分)	40
〈表 2- 6〉	所得階層別 婦人の 就業·非就業 家口間の 所得隔差	42
〈表 2- 7〉	他家口員所得과 就業婦人所得의 所得階層別 分布	43
〈表 2- 8〉	맞벌이 家口 婦人の 就業所得 寄與度 分布	45
〈表 2- 9〉	就業婦人の 所得과 餘他 家口所得員과의 相關度	47
〈表 3- 1〉	分析에 使用된 變數들	54
〈表 3- 2〉	父母의 生存現況	57
〈表 3- 3〉	女性의 經濟活動與否別 家族形態	58
〈表 3- 4〉	老父母와의 同居與否 및 近距離 居住를 決定하는 要因들	60
〈表 3- 5〉	女性의 經濟活動與否別 同居時 決定權	63
〈表 3- 6〉	女性의 經濟活動與否別 同居時 父母의 도움	65
〈表 3- 7〉	도움의 決定要因들	66
〈表 3- 8〉	女性의 經濟活動與否別 非同居時 父母와의 接觸度	68
〈表 3- 9〉	非同居時 父母世代와의 接觸程度를 決定하는 要因들	70

〈表 3-10〉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子女의 必要性和 아들의 必要성에 대한 態度	72
〈表 3-11〉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理想的 老父母扶養者에 대한 意見	73
〈表 3-12〉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자신의 老後扶養에 대한 意見	73
〈表 3-13〉	子女觀과 老後觀의 決定要因들	74
〈表 4- 1〉	學齡前 兒童의 養育擔當者	83
〈表 4- 2〉	就業母 特性別 養育擔當者	85
〈表 4- 3〉	家口 特性別 養育擔當者	87
〈表 4- 4〉	養育費支出에 따른 養育擔當者	88
〈表 4- 5〉	就業母 特性에 따른 養育費用 支出 實態	89
〈表 4- 6〉	家口 特性에 따른 養育費用 支出 實態	90
〈表 4- 7〉	子女養育 擔當者에 따른 養育費用 支出 實態	91
〈表 4- 8〉	婦人의 일하지 않는 주된 理由	92
〈表 4- 9〉	婦人 및 男便特性別 일하지 않는 理由	93
〈表 4-10〉	家口 特性別 婦人의 일하지 않는 理由	95
〈表 6- 1〉	家族福祉政策의 類型	131
〈表 6- 2〉	女性 經濟活動 參加率 推移	138
〈表 6- 3〉	女性の 雇傭地位別 勞動力의 分布推移	138
〈表 6- 4〉	婚姻狀態別 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139
〈表 6- 5〉	年齡別 女性の 經濟活動 參加率	140
〈表 6- 6〉	保育對象 嬰幼兒 推計	143
〈表 6- 7〉	育兒休職制度 運營實態	145
〈表 6- 8〉	保育施設 및 保育兒童 推移	147
〈表 6- 9〉	1995年 保育事業 擴充 推進實態	148
〈表 6-10〉	主體別 嬰幼兒保育施設(1991~1995)	149

圖 目 次

[圖 6-1] 社會保障法體系에 따른 家族福祉法制的 分類	140
--------------------------------------	-----

附 表 目 次

<附表 1> 父母生存類型(性構成比)	79
<附表 2> 父母와의 近距離居住를 決定하는 要因들(全體모델)	80

要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크게 두 범주의 연구로 구성됨.
 - 첫째, 여성경제활동참여가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이는 다시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족구조와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는 가족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 세번째는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에 미치는 영향임.
 - 둘째, 여성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하여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들을 분석해 보았음. 이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가족문제를 다룬 정책적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 추세에 따라 전반적 가족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조망한 논의임.

1. 就業女性 家族의 經濟的 삶

-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金錢的인 동기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94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경제적인 삶에 기여하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으로 요약됨.
 -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는 취업하지 않은 가구 보다 가구총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남. 취업가구는 월 175.1만원, 비취업가구는 월 133.3만원의 수입으로, 취업가구가 비취업가구보다 31.4% 더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하위 소득층일

수록 이들간의 상대적 격차는 큼.

- 취업여성의 家口所得 寄與度는 전체적으로 가구총소득의 32%에 달하며 남편의 근로소득과 대비하여서는 54.2%에 달함. 하위소득가구의 경우 부인의 소득은 남편소득의 68.2%에 달하며 하위소득층일수록 기혼취업여성 소득의 기여 정도는 높아짐.
 - 他家口員 소득에 기준해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취업여성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족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음.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의 취업이 가계에 寄與하는 바가 크며 일부 중간 소득계층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여성의 소득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여성의 소득이 하위소득 집단을 次上位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함으로서 소득을 平準化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 서구의 경우처럼 여성의 소득이 중위 소득집단을 상위로 끌어올려 계층간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음.
-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政策的 對應方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의 취업은 저소득층에게는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서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들 가족의 생존 현실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저소득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비숙련 노동력이 주종을 이루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알선을 촉진하여 빈곤수준으로 부터의 탈출을 誘導하는 정책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하므로서 세대를 통한 貧困의 世襲을 막는 방안이 유효할 것임. 이는 저소득층 자녀 중 남자 형제를 위하여 교육 기

회를 포기하는 경향이 높은 현실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임.

- 교육수준과 남편의 소득이 높은 기혼여성들을 경제활동으로誘引하기 위하여는 비임금적인 요소, 예컨대 대졸여성의採用,職務配置,昇進 등에 있어 능력보다性基準에 근거한 인사를 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보다 정책의 비중을 두어야 함.

2. 女性 經濟活動參與와 家族構造 및 世代間 關係

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형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음.
 - 核家族이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었지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
 - 擴大家族내에서 노인들의 권위적인 위치는 높지 않지만 기여도는 높음을 볼 수 있었음. 이는 노부모가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扶養의受惠者가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양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修整擴大家族과 擴大家族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擴大家族이 아직도 父系中心의 直系原理라는 규범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 修整擴大家族은 비교적 자발적인 관계로 兩系制를 지향하고 있음.
 -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약 60%가 형편되는 자녀가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택적인 세대관계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노후에 대하여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살기를 원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가족형태와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는 취업여성의 경우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음.
 - 취업여성과 부모의 동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거시 養育이나 家事補助 등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부모와의 동거로부터 발생하는 보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 때 동거를 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부모의 건강악화가 擴大家族형성에 따르는 비용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 취업여성은 양육서비스등 公的인 支援體系가 부족하므로 이의 제공이 가능한 부모와의 접촉이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짐.
 - 취업여성의 경우 修整擴大家族을 빈번히 이루고 있으며, 친정 쪽으로 修整擴大家族을 이루는 비율이 높고, 친정부모와의 접촉이 더 많아 뚜렷한 양계제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나.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세대간의 관계는 당위의 문제에서 選擇의 문제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족구조와는 별도로 부모와 밀접한 精神的, 感情的 紐帶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세대가 自律性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정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교육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修整擴大家族을 뒷받침할 수 있는 住居環境을 조성하여야 함. 앞으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한 지붕밑에서 동거하되 공간적으로 세대별로 분리된 구조를 가진 주택이나, 자녀세대와 인접한 지역에 노인주택건설 등 주택형태의 활발한 개발이 요청됨.

- 擴大家族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부모의 건강악화에 따른 부양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요구됨. 따라서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부양을 社會化할 필요가 있음. 이의 일환으로 在家 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 家族看護休職制(family leave)와 같이 일과 가족생활을 무난히 수행하게 하는 제정책이 수행되어야 함.
- 가족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위에 두는 사회에서는 점차로 交換原理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대간의 관계가 유지될 것 이므로 노인들의 권력자원 증대에 의한 지위향상이 필요함.
 -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세대의 經濟的 能力的 강화를 통하여 지위향상이 이루어져야 세대간의 관계의 질이 높아질 것임.
 - 개인의 차원에서도 가정경제설계가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 여유자금을 자녀세대의 주거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이전시키는 두세대에 걸친 連續的인 설계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축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3. 就業女性 家族의 子女養育

가. 자녀양육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바, 1994년 출산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자녀의 양육 실태와 비취업부인의 미취업사유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취업모 가정의 학령전자녀는 家庭內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가 1/3 가량을 차지했으며, 양육자가 없다는 응답도 1/4에 달했고, 전적으로 保育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수정도였음.
- 家庭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한다는 비율은 20대의 젊은 취업모일수록, 취업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의 직종일수록,

家口員이 많을수록, 마지막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單純勞務職과 販賣·서비스職의 취업모들은 양육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子女養育費用은 취업모가 젊은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사무직종일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서 子女養育者 不在의 문제를 주로 지적한 경우는 젊은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4인이하의 가구에서, 막내자녀의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들과 별거하는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求職의 문제는 저학력의 기혼여성과 남편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결혼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 많이 지적되어 이들은 자녀양육의 문제를 고려하기에 앞서 취업에 대한 의사가 강력하여 이들의 子女養育 및 保護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

나.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여성의 經濟活動 參與를 용이하게 하고 子女養育의 質을 제고하기 위한 政策的 對應方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적절한 代理養育者가 없는 기혼취업여성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施設 및 프로그램의 開發이 요구됨.
 - 保育施設의 量的인 擴充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多樣化, 예컨대 대상아동의 年齡帶, 受託費用, 受託時間 등이 다양화됨으로서 수탁 서비스의 質을 需要者의 欲求에 맞게 높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

- 中産層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양육의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보다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低所得 階層의 경우 低廉하게 良質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보육시설의 설치가 短期的으로는 공공과 민간시설의 양적 및 질적 확충으로, 長期的으로는 아동의 보육을 민간의 경쟁적 시장원리에 맡기기 보다 社會的 支援體系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현재 低所得 기혼취업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國家의 재정지원이 확충되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고, 民間保育施設의 경우도 모든 계층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용을 差等支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직장에서의 활동이 가정의 요구와 葛藤을 일으키지 않도록 직장에서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함. 이러한 범주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育兒休職制度 및 彈力勤務制度(flexible working system)가 실효성을 갖도록 함.

4. 女性의 經濟活動參與와 綜合的인 家族福祉政策

-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중심으로 低所得層의 家族問題를 검토하고, 취업여성을 위한 전반적인 家族政策 現況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經濟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 또는 각종 수당의 현실화, 즉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職業教育 및 就業斡旋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 소득감소의 우려로 교육기회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훈련기간 동안 手當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어머니와 가계책임자로서의 二重負擔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노력, 특히 子女養育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保育프로그램 보급의 문제는 偏母家族에게 특히 심각하며, 이들을 위한 放課後 프로그램의 실시가 시급함.
-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우선 시행되고 있는 兒童福祉法과 母子福祉法의 적용대상 확대, 서비스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기존정책의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나. 취업여성을 위한 全般的인 家族政策을 검토한 결과, 家族問題에 대한 社會福祉의 接近은 要保護者를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치료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취업 기혼여성들의 문제도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채 個人次元에서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보였음.

- 母性保護를 위한 育兒休職制와 職場保育施設의 실시정도는 매우 낮으며, 育兒休職制의 경우 無給으로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 就業女性은 접근 자체가 어려움.
 - 따라서 기업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재의 정책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女性勤勞者를 위한 母性保護 조치가 필요함.
- 여성이 家族內에서 아동·남성·노인·환자·장애인 등을 돌보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臥病老人 保護의 社會化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노인에 대한 다양한 療養施設, 在家保護, 託老所 등의 확대와 看護休職制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第1章 序論

서구사회의 경우 産業化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간에는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Scott & Tilly, 1987). 과거 농업위주의 사회에서 남편과 부인은 생산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생산의 장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빈곤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에 남게 되고 男性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養育과 家事를 도맡는다는 傳統的 家族 理念形이 형성되게 되었다. 단지 남성의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전쟁의 기간에 일시적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금세기 후반에 들어와 여성의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60년대 이래 男女平等 理念의 본격적인 확산이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의 이러한 과정이 큰 차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0년대의 産業化 출발 이전의 농촌 사회에 있어 여성의 농사일 참여는 당연한 여성의 삶의 부분이었다. 또한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저소득 계층 미혼여성의 노동력이 광범위하게 생산현장에서 활용되었으나, 中産層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위치는 가정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한편 80년대 이래 既婚女性 경제활동이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현재 전체 여성취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既婚女性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세가구당 한가구는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

여성은 집안에서 육아 및 가사를 담당하고 남성은 밖에 나가 생계를 벌어온다는 전통적인 가족의 이념이 많은 가족의 경우 더이상 당연스럽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로 대학 교육을 받은 中産層 여성의 전문직 혹은 사무 관리직 진출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맞벌이에 따른 가정의 문제점이 더이상 과거와 같이 빈곤에 수반된 문제로 해석될 수 만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저소득층 및 中産層 모두에게 있어 맞벌이 가정의 확대로 인하여 가정을 둘러싼 社會規範 및 制度上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먼저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특징적인 점을 서구의 경우와 대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어수봉, 1991; 정진화, 1991; Voydanoff, 1984).

첫째,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자체가 낮으며 남녀간의 賃金 隔差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여성 취업이 저소득층의 비숙련 노동자가 주를 이루어 온 현상의 반영이다. 과거 서구의 경우 '60년대 이전에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여성취업의 유형을 보였으나, 이후 정치, 경제 등 사회의 각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여성의 취업율, 직종 및 임금의 隔差가 좁혀지게 되었다.

둘째로 특징적인 점은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볼 때 뚜렷한 M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점이다. 즉 15세 이후부터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여 25세를 전후로 하여 가장 많아지고,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25~29세 연령층에서는 급격히 낮아졌다가 30세 이후부터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의 경우 逆 U자형의 연령구조와 대조를 이룬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시 育兒와 家事등 가정에서의 여성 노동에 대한 요구를 대치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낸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셋째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이 줄어든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율은 比例의 관계에 있으며 서구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교육수준과 취업율은 비례적 관계를 이루는 것과 대조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吸引力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의 특징은 결혼을 전후로 하여 여성의 취업구조가 相異한 유형을 띠는 점이다. 미혼의 경우 사무직 및 상시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나 기혼의 경우 이러한 직종 및 고용형태의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 서비스업 및 임시직 고용의 비율이 높다. 서구의 경우에도 여성의 취업이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기혼과 미혼간에 이와 같은 뚜렷한 구별은 관찰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에 대하여 결혼으로 인한 고용의 差別이 이러한 직종 및 고용형태에 존재하는 결과 초래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가족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자. 여성의 취업이 미칠 가족생활의 영역은 크게 結婚의 安定度, 經濟生活, 子女養育, 家族構造 및 世代間의 關係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성의 취업이 가족을 결합시키는 부부관계의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구의 경우 여성의 취업은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pitze, 1988). 여성이 취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므로써 여성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런 결혼생활을 解止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의 원인을 여성취업의 증가에 귀속시키는 연구결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

립된 수단을 획득하게 될 경우 이혼을 과거보다는 덜 어렵게 하나의 代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여성취업에 따른 이혼율의 증가가 우리 나라에서도 예상된다고 하여도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듯 하다. 서구의 경우 부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각자가 독립된 人格體로서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반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결손 혹은 양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경우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 보다 불리하므로 여성취업의 확대가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否定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경제적인 福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자. 서구의 경우 여성의 취업은 특히 중하층의 가족을 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로서 취업여성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은 큰 것으로 밝혀졌다(Rainwater, 1970). 즉 빈곤층 여성의 경우 남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補完的 역할로서 및 흑인집단의 경우에는 가족의 주요 수입 획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하강기에 여성의 취업으로 벌어오는 소득의 중요성이 이들 계층의 경우에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취업을 통하여 빈부간의 隔差가 늘어나는 현상에 접하여 이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있으나, 거꾸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가족의 경제적 복리에 어느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가하는 연구는 全無한 상태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남성의 근로 소득과 대비하여 약 30% 정도의 寄與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남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여성 소득의 중요성이 다르게 해석될 것이므로 본격적인

계층별 여성의 소득 寄與度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이 자녀의 養育 및 社會化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양육 기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이 직장에 나간 동안 자녀들은 부모 이외의 친척이나 혹은 아동의 保育 機關에 맡겨져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된다. 과연 이러한 양육 형태가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서구의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既婚女性の 취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인 '70년대 초반까지만하여도 代理養育이 어머니의 취업을 위한 필요악의 요소로 파악되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既婚女性の 취업이 자녀에게 미칠수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Menaghan & Parcel, 1990). 자녀의 성격 및 학업 성취 정도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에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되었던 점들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 때 따른 문제점 혹은 남편의 부인 취업에 대한 태도에서의 문제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점이 통제될 경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의 非취업시 나타내는 가정내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작용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성격 및 학업 成就度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부 연구가 있기는 하나 표본의 제약으로 보편적인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미흡한 감이 든다(이용숙 외, 1988).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어머니의 취업이 전반적으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계층에 따라 다른 樣態를 띠는 것으로 나타나나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既婚女性の 취업은 우리의 전통적인 家族構造 및 世代間의 關係에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의 理念形은 부모와 장남 부부 및 손자가 함께 하는 삼세대 가족이었다. 이러한 이념형적 가족구조가 실제에 있어 숫적으로 지배적인 가족 형태는 아니었다 하여도 일반적으로 장남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기대되는 規範이었다. 그러나 既婚女性の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에서 차남의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選好하거나 혹은 장남의 경우에도 부모를 현실적으로 모시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養育期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모와 함께 동거 혹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하게 된다. 반면 부모가 연로하거나 혹은 자녀 양육기를 지난 가정의 경우 장남이라도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볼 수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세대간의 관계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새로운 사회환경과 만나면서 겪게되는 독특한 현상으로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새로운 家族規範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참여가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주제들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체험되는 가족관련 변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본격적인 연구가 뒤따르지 않았던 분야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기존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각 주제별로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領域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독해 냄으로서 현재 관찰되고

있는 여성취업의 확대 추세가 가져올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의 두번째 목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어떠한 부문의 어떠한 측면에 정책적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여성의 취업이 가족 생활에 가져올 영향을 가늠하면서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구성할 수 있다면, 개개의 정책들이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가지 목적에 寄與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요소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既婚女性の 경제활동이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이는 크게 가족구조 및 世代間의 關係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子女養育機能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되어 검토된다. 여기에서 서구의 경우 가족의 安定性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가 가족의 삶의 영역에서 갖는 중요한 변화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자료의 제약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가족의 다양한 기능에 가져온 변화상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여성취업의 확대가 가족복지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데 하나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가족복지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요컨대, 여성취업이 가져오게 될 경험적 및 정책적 가족복지의 방향에 대한 본 연구는 가족관련 정책의 틀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가족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構圖를 잡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第2章 女性の經濟活動 參與が 家族の 經濟的 삶에 미치는 影響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家族의 經濟的인 福利, 보다 구체적으로 家族所得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소득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먼저 가족소득의 영향으로 既婚女性이 經濟活動에 참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기혼녀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家族所得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既婚女性의 就業과 家族所得과의 關係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가족 소득 및 남편의 소득수준에 따라 既婚女性의 經濟活動 參與率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서 가족소득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가족소득의 수준에 따라 女性就業家口와 非就業家口間의 소득의 격차를 비교하여 봄으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女性의 소득이 가족소득에 기여하는 정도 및 所得階層에 따른 變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女性就業 및 家族의 所得에 대하여 본 분석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

1. 既婚女性의 就業 增加와 經濟的 動機

요즈음 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與 問題는 새로운 쟁점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農村地域에서의 여성의 농사일 참여를 통한 生産活動에의 참여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도시

의 低所得層의 경우 또한 生存戰略의 일부로서 가족 중 가능한 모든 노동력을 동원하여 公式 혹은 非公式의 勞動市場에서 돈을 벌어들여 生計를 이어가는 것이 과거 현재에 가릴 것없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조은, 1990; 이효재·지은희, 1988; Tilly & Scott, 1987).

그렇다면 '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既婚女性の 經濟活動 參與率의 증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少子女 家族主義의 擴散과 女性の 教育水準 向上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양승주, 1995; 신영수, 1991). 다른 한편으로 가족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논리적으로 두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에 低所得層의 부인들이 주로 經濟活動에 參與하였으므로 과거와 비교해 이 소득집단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의 더 많은 비율이 勞動市場에 진출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과거에는 별로 經濟活動에 參與하지 않던 집단인 中産層 以上の 기혼부인들이 새로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두가지의 가능성이 함께 작용하여 '8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既婚女性 經濟活動參加率 增加를 이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經驗的인 研究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勞動需要의 側面에서 남녀간의 差別的 勞動市場構造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어수봉 등, 1991),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주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최규련 외, 1995; 노미혜 외, 1992).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家族所得과의 關聯性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다. 양승주(1995)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연령 및 6세 미만 자녀의 유무와 함께 기혼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家口所得(他家口員所得)이 既婚女性の 취업에 有意味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김수곤과 심경옥(1984)은 통계청의 1974년 고용구조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他家口員所得과 既婚女性의 就業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他家口員所得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들의 경우 他家口員所得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급격히 감소하는 樣相을 띠나 他家口員所得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女性의 就業은 他家口員所得과는 별로 상관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략적으로 中産層 以上の 경우 女性의 就業決定은 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의 수준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음을 間接的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中産層의 경우에도 女性의 就業이 금전적 동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調査結果와 어긋나는 지적이나, 이 연구의 대상 시기가 既婚女性의 經濟活動이 本格的으로 擴大되기 이전의 시기인 '70년대 중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요즈음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위의 두 연구를 제외하고는 家族所得과 既婚女性의 經濟活動과의 관련을 분석한 경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女性의 經濟活動과 관련하여 여성의 소득이 家族所得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1995c)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구의 경우 低所得과 中間所得 階層에 걸치는 범위의 가족에서 기혼여성의 經濟活動이 家族所得의 주요한 지지원으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다(Levy & Michael, 1991; CBO, 1988). 이는 貧困水準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低所得 既婚女性들이 經濟活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면 및, 停滯된 남성 實質賃金の 推移에 반하여 중산층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득의 하한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中産層 女性이 적극적으로 經濟活動에 參與해야 하는 측면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中間所得層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專門職 女性의 경우 금전적 동기 이외의 社會參與 및 自我實現의 欲求가 점차 취업 동기의 큰 부

분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家族所得 水準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因果關係의 논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취업 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既婚女性의 就業과 타가구원 소득간에는 뚜렷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소위 他所得效果라 하여 소득과 여가간에는 代替財의 關係가 있다는 經濟學的 一般論理가 적용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Ehrenberg, 1991: Chapter 7). 그러나 가족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전혀 상반된 현상을 보인다. 가족 소득이 낮은 경우의 既婚女性은 가족 소득이 높은 경우의 여성보다 經濟活動에 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經濟的으로 餘裕있는 집안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더 참가한다는 觀察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족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삼등분하였을 때 가장 낮은 소득집단 여성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40%에도 못미치는 반면 가장 上位의 所得集團의 경우 그 비율은 60%를 넘어서며 中位所得 集團의 경우 약 50%에 이르고 이러한 유형은 유럽 제국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Rainwater, 1970). 이는 女性의 經濟活動으로 인하여 획득한 소득이 가족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西歐의 경우 기혼여성의 經濟活動率 自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未就學 兒童을 둔 어머니의 經濟活動이 최근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크게 기여한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Smith & Ward, 1985) 막상 여성의 소득이 家族所得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의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家族所得의 範圍 및 여성의 就業 地位에 따라 큰 변이를 보이나 貧困層을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20~30%의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빈곤층의 경우 부인소득의 가족소득 기여도는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Rainwater, 1970; Brown, 1979). 이는 勞動市場에서

의 남녀간 所得隔差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家事勞動에의 남편의 參與度가 서구에서도 매우 빈약한 현실에서 취업여성이 時間制 雇傭 등으로 勞動投入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시간당 임금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이는 勞動市場에서의 남녀간 賃金隔差의 縮小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所得間에는 微弱하게만 聯關關係가 形成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인의 취업으로 획득한 소득의 약 30%만이 부인의 취업으로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소득임을 검증하여 부인의 家口 所得 寄與度의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한다(Hanson & Ooms, 1991).

우리 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취업여성의 직업적 지위나 임금의 수준이 夫婦間의 權威關係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는 제한적으로 연구가 있으나(최규련 외, 1995; 조혜정, 1981), 막상 가족소득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기존의 연구가 미미하다. 더우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하여 가족 소득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연구는 全無한 實情이다. 이는 주제의 중요성에는 모두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信憑性 있는 所得資料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한 결과로 推測된다.

본 연구는 家族의 所得과 既婚女性の 經濟活動과의 연관성을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¹⁾. 첫째의 쟁점 사항은 家族所得과 既婚

1) 가족의 소득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나서야 하는 여성들이 있음과 함께 동시에 노동시장에 참가하므로써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 두 방향으로의 영향이 상호교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타당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간접적인 추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둘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보는 해석을 삼가하기로 한다.

女性の 經濟活動參與率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與와 관련하여 家族所得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이 둘간의 관계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한 기혼여성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家族所得 즉 他家口員所得을 중심으로 소득집단을 구분할 때 이는 노동과 여가간의 所得效果의 측면을 검토하는 논의가 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양승주, 1995; 김수곤·심경옥, 1984)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他家口員所得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 반면 취업여성 자신의 所得을 포함한 가족 총소득을 중심으로 所得集團을 구분할 때 외국의 경우가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家族所得과 여성의 經濟活動參與率間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Hiller & Philliberg, 1980).

두번째의 쟁점 사항은 女性 就業家口의 소득이 女性 非就業家口의 소득과 비교하여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각 소득 계층에 따라 女性就業家口와 非就業家口間의 所得 隔差가 어떠한 變異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 또한 흥미있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貧困層의 경우 女性の 就業으로 인하여 家族所得이 끌어 올려지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女性就業家口의 가족소득이 女性非就業家口의 가족소득 보다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就業과 非就業 集團間의 所得 隔差는 家族所得이 낮을수록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성취업은 低所得層의 경우에 더 크게 家族所得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所得分佈를 平準化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취업의 所得分配 平準化 效果에 관하여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검증된 현상이며(Treas, 1987; Harris & Hedderson, 1981), 단지 '80년대 중반이후에 中産層 女性の 취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여성취업이 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효과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나(Treas,

1983) 아직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시기상조의 논의로 생각된다.

세번재의 쟁점사항은 就業女性の 家口所得 寄與度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남편과 부인간의 相對的인 家口所得 寄與度에 대한 비교와 관련된 논의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4년 都市勤勞者 家口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남자가 근로자인 가구중 맞벌이 가구는 30.7%인 것으로 나타나며 부인의 근로소득이 남편의 근로소득의 44.4%에 달한다(통계청, 1995c). 統計廳의 자료는 표본을 근로소득자 가구의 가구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을 기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非賃金勤勞者의 比率이 아직도 매우 높으며 많은 가정의 경우 賃金所得이외에 남편 혹은 부인의 事業所得과 기타 非勤勞所得의 比重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연구되어야 한다. 低所得層 및 高所得層의 경우 이러한 非賃金的인 要素의 比重은 더욱 중요할 것이므로 취업 부인의 소득 기여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취업 결합 유형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所得集團別로 남편과 부인의 就業類型에 따른 부인의 所得寄與度를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위의 세가지 주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社會統計調査는 사회관심분야를 크게 9부문으로 구분하여 매년 2~3개 부문씩 선정하여 전국의 약 3만가구에 대한 無作爲抽出 家口標本調査를 基盤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근거가 되는 조사자료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조사자료는 1994년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의 家口特性과 所得에 관한 자료로서²⁾ 전체 26,817

2) 이 자료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1995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조사개요 부분을 참조할 것.

가구의 80,082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중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함께 존재하는 가구(이후 편의상 부부가구로 지칭함) 중에서 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都市地域에만 한정하는 이유는 都市와 農村間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행태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既婚女性の 所得寄與度の 의미 또한 도시와 농촌 간에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배우자가 함께 존재하는 가구만을 선택한 이유는 단독가구나 혹은 여성과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결손가족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가족소득과의 관련성이 부부가구와는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수준에서의 비교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의 선택이었다.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부부가 함께 존재하는 가구중 소득이 없는 가구는 약 3.6%에 달하며 이는 대개 노부부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段階的 선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13,203 가구의 37,171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所得活動은 조사 연도의 전년도 즉 1993년의 經濟活動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의 개념에는 勤勞所得, 事業所得 및 其他所得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에는 임금 및 월급과 상여금 및 기타근로소득이 포함되고 기타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과 연금 및 정부와 사회단체로 부터 혹은 가족 친지로 부터의 수증보조금이 포함된다. 勤勞所得과 事業所得의 경우 과거 1년 중 직장 혹은 사업의 이진이 있었을 경우 제일 오래 일한 직장 혹은 사업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합산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家族所得을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남편 및 부인 각자의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경우와 근로소득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으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인의 소득

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남편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勤勞所得과 事業所得間의 이러한 구분은 취업 여성의 所得寄與度를 엄밀히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작업이다.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로그노말 分布(Log-Normal distribution)를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득편기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집단의 평균을 算術的인 平均(mean)이 아닌 중앙값(median)으로 나타내었다.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집단간 변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먼저 所得集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所得集團에 대한 區分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소득집단을 삼등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분포에서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밑으로는 중앙값의 50~80%를 하한선으로 하고 위로는 150~200%를 중위 소득집단의 상한선으로 하는 방법이나, 혹은 소득분포에서 하위 1/4과 상위 1/4을 각각 소득 하위 및 상위집단으로 하고 가운데 50%를 중위 집단으로 하는 方法이 많이 활용된다³⁾.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 총소득 및 취업 부인의 소득을 제외한 他家口員所得에 대하여 하위 소득집단, 중위 소득집단, 상위 소득집단으로 구분하고, 또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就業關聯 행태가 보통 수준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득수준의 상위 5% 집단을 별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본 조사자료에서 就業의 概念에는 돈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公式部門에서의 취업을 통해 임금을 받는 賃金勤勞者 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 특히 自營業 및 家族從事者의 경제활동 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많은 여성 취업자들이 無給家族從事者로 일하고 있으며 臨時職 및 日傭職 從事者의 비율도 많다는 점을 고려

3) 소득집단의 구분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Karoly(1993) 및 Horrigan & Haugn(1988)을 참조할 것.

할 때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취업 개념이라고 판단된다4).

2. 既婚女性 就業의 家族所得 寄與效果

가. 所得家口의 夫婦間 就業 結合類型

본 분석 대상 표본 전체의 家口總所得은 평균(중앙값) 1,528,500 원으로 나타나며 算術的인 平均所得은 도시가계소득의 평균치에 근접하는 수치인 1,770,800원으로 나타난다5). 가구 소득의 구성은 대부분 經濟活動에 종사하는 남편과 취업 혹은 비취업 상태에 있는 부인의 賃金所得 및 事業所得 및 부부의 어느 쪽의 전적인 기여부분이 아닌 재산 및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다. 가구소득의 근원이 되는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남편과 부인의 就業 類型을 살펴보자.

〈表 2-1〉 夫婦 個個人的 就業 形態

(단위: %, 명)

	무직	피고용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합계	
		상용	입시	일용					
남편	4.2	64.3	46.2	9.2	8.9	12.7	18.7	0.1	100.0(13,203)
부인	54.2	27.1	9.2	10.3	7.6	1.4	5.9	11.3	100.0(13,203)
		(59.2)	(20.1)	(22.5)	(16.6)	(3.1)	(12.8)	(24.7)	

註: 괄호의 숫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의 비율임.

- 4)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 행태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신영수(1991) 및 정진화(1991)의 연구를 참조할 것.
- 5) 가족소득의 최고 한도를 월소득 기준 1,000만원으로 하였다. 이는 남편의 임금 및 사업소득의 상한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부인 소득의 경우 월 800만원을 소득 최고한도로 설정하였다. 원자료에는 소득상한선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는 가구소득 혹은 남편 소득 1000만원 및 부인소득 800만원을 전후하여 소득 분포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며 이러한 상한선을 넘어서 사례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부인소득의 경우 3 사례에 불과하며 가족 및 남편 소득의 경우에도 20 사례를 넘어서지 않음).

위의 <表 2-1>은 남편과 부인의 취업 유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부가족의 경우 남편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부인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既婚女性の 經濟活動 參與率이 '94년 현재 47.1%에 불과하다는 점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女性の 就業形態에 있어서도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20.1%에 불과하며 臨時 및 日傭職의 근로자와 無給 家族從事者의 비율이 높은 점 또한 기존의 고용통계와 일치한다. 남편과 부인의 所得 隔差를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임금 및 사업소득) 평균은 113.0만원이며(산술평균 130.6만원) 소득이 있는 취업자 부인들 중에서의 소득 평균(賃金 및 事業所得)은 50.4만원(算術平均 64.8 만원)으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소득의 4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4년 全産業 勤勞者의 남녀간 임금소득 비율이 56.6%인 것과 비교할 때(노동부, 1995), 여기서는 남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추가로 덧붙여진 결과 남녀간 소득의 비율이 여성에 불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부부 개개인의 취업 형태에 대한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부부간의 就業形態의 結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기존의 女性就業에 관한 연구는 女性の 就業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여성 개인의 취업 행태에 관하여는 자료가 있으나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男便의 취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의 <表 2-2>는 부부간의 취업결합유형을 전반적으로 및 소득 계층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表 2-2>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經濟活動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家族所得이 있는 경우는 전체 가구의 3.6%에 불과하며 주로 下位所得階層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 2-2> 夫婦家口의 就業·非就業 結合類型

(단위: %, 가구)

취업 여부		소득 계층				
남편	부인	하층	중층	상층 ¹⁾	상위5%	전체
비취업	비취업	11.4	1.2	0.7	0.7	3.6(469)
비취업	취업	1.5	0.4	0.2	0.1	0.6(81)
취업	비취업	66.2	47.9	41.1	40.8	50.7(6,688)
취업	취업	20.9	50.6	58.0	58.3	45.2(5,965)
		100.0	100.0	100.0	100.0	100.0
		(3,324)	(6,679)	(3,300)	(691)	(13,203) ²⁾

註: 1)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2) 총가구수는 소득 하, 중, 상위 집단의 가구수를 합산한 수치임.

다음으로 남성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이는 우리사회에서 남성의 家族扶養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례로서 남편과 부인 모두 비취업인 경우 보다 사례수가 현저히 적으며 (전체가구의 0.6%) 특히 下位所得階層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은 직업이 있고 부인은 經濟活動을 하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전통 가족형의 경우 전체가구의 과반수에 불과하며 中上流層에서 보다는 下位所得層에서 보다 많이 관찰된다. 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의 45.2%에 달하며 家族所得이 높을수록 이러한 比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과 부인사이의 就業形態의 결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다음의 <表 2-3>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남편과 부인을 종사상의 地位別로 조합한 類型別 가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表 2-3>에서 맞벌이 부부가구중 남편과 부인 모두 僱傭主 혹은 賃金勤勞者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체의 55.8%에 불과하며 所得階層別로 볼 때 상대적으로 상층의 경우 중하층 보다 그 비율이 작음을 볼 수 있다.

〈表 2-3〉 맞벌이 夫婦家口의 就業 結合類型

(단위: %, 가구)

취업 유형		소득 계층				
남편	부인	하층	중층	상층 ¹⁾	상위5%	전체
고용주·임금근로	고용주·임금근로	58.5	59.5	48.3	50.6	55.8(3,328)
고용주·임금근로	자영·가족종사자	8.2	15.6	25.3	30.3	17.9(1,066)
자영·가족종사자	고용주·임금근로	4.6	6.0	7.8	4.2	6.5(385)
자영·가족종사자	자영·가족종사자	28.8	18.9	18.6	14.9	19.9(1,187)
		100.0	100.0	100.0	100.0	100.0
		(674)	(3,377)	(1,914)	(403)	(5,965) ²⁾

註: 1)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2) 총가구수는 소득 하, 중, 상위 집단의 가구수를 합산한 수치임.

다음으로 남편은 고용주 혹은 임금근로자로서 일하나 부인은 남편과는 독립적으로 自營業을 하거나 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남편과 부인 모두 자영업이나 가족종사자로서 일하는 경우와 비슷한 비율(각각 17.9%, 19.9%)을 보이나 所得階層間의 分布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전자의 경우는 현저하게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나, 후자의 유형은 그 반대로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그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家族所得을 기준으로 중하층의 경우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자영업 혹은 가족종사자로서 일하는 비중이 고용주 혹은 임금근로자로서 일하는 비중 다음으로 대표적인 經濟活動 類型인 반면, 소득 上位層의 경우 남편은 대부분 고용주 혹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부인의 고용주 혹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거나 혹은 남편과는 독립적으로 자영업 혹은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所得階層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취업형태의 결합에 있어서의 차이는 상위 5%의 소득계층의 경우 더욱 뚜렷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소득 집단의 경우 부부 모두가 自營業 혹은 家族從事者로서 일하는 비율은 전체 맞벌이 부부의 14.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既婚女性 就業率의 所得集團別 變異

어떤 가족 소득의 배경을 지닌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가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는 가족 소득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는 가상적인 경우의 가구소득인 취업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他家口員所得을 基準으로 女性就業家口와 女性 非就業家口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소득을 포함한 家口全體의 所得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 女性の 就業의 주요 동기가 金錢的인 目的에 있는 한 전자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타가구원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율은 높아야 할 것이며 후자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취업율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表 2-4>에서는 먼저 여성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총소득을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계층을 셋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집단에서의 부인의 취업 및 비취업 가구의 비율을 검토해 보았다.

<表 2-4> 所得階層別 女性就業率 比較(他家口員所得에 基準한 階層 區分)
(단위: %, 가구)

부인 취업여부	소득 계층				
	하층	중층	상층 ¹⁾	상위5%	전체
취업 가구	48.3	45.9	43.0	40.6	45.8(6,047)
비취업 가구	51.7	54.1	57.0	59.4	54.2(7,156)
계	100.0 (3,297)	100.0 (6,606)	100.0 (3,300)	100.0 (653)	100.0 (13,203) ²⁾

註: 1)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2) 총가구수는 소득 하, 중, 상위 집단의 가구수를 합산한 수치임.

위의 표를 보면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女性 就業家口의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상위 5%를 포함한 소득 전구간에서 여성의 취업과 他家口員所得間에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양승주(1995)의 개략적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나 김수곤과 심경옥(1984)의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어긋나는 발견이다. 이는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김수곤과 심경옥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既婚婦人의 經濟活動參與가 증가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시기인 1974년의 고용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80년대 이래 본 연구의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既婚女性의 經濟活動 행태에 변화가 온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한 경험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 총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집단을 구분하여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與 比率의 變異를 살펴보자. 아래의 <表 2-5>는 가구 총소득에 따라 소득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부인의 취업 및 비취업 가구의 相對比率 分布를 보여주고 있다.

<表 2-5> 所得階層別 女性就業率 比較(家族總所得에 基準한 階層區分)
(단위: %, 가구)

부인 취업여부	소득 계층				
	하층	중층	상층 ¹⁾	상위5%	전체
취업 가구	22.4	50.9	58.2	57.9	45.8 (6,047)
비취업 가구	77.6	49.1	41.8	42.1	54.2 (7,156)
계	100.0 (3,224)	100.0 (6,679)	100.0 (3,300)	100.0 (658)	100.0 (13,203) ²⁾

註: 1)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2) 총가구수는 소득 하, 중, 상위 집단의 가구수를 합산한 수치임.

예상했던 바와 일치하게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이 經濟活動에 參與하는 家口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부유

한 집단(상위 5%)의 경우에는 도리어 덜 부유한 집단 보다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율이 낮음을 위의 表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부유한 가족의 경우 부인이 취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매우 부유해지기 보다는 남편의 소득 혹은 기타 財産所得 등으로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위의 表에서 특기할 사항은 下層 集團의 경우 中層 集團과 비교할 때 부인의 취업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이는 일단 부인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低所得層으로 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中層과 上層間에는 여성 취업가구의 비율이 하층과 중층간의 차이 만큼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기혼 부인의 취업이 대부분 큰 소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여성이 취업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中間所得層에서 부터 上位所得階層으로 여성의 소득에 기인하여 상승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 女性就業에 따른 家口所得의 隔差

앞의 분석에서 他家口員所得이 낮을수록 및 家口總所得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與 家口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인이 취업한 가구가 전업주부의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既婚女性이 취업한 가구와 비취업가구의 家口所得 隔差는 얼마나 될까 하는 점과 함께 가구소득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격차에 어떠한 變異가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떠오른다. 앞의 절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듯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의 취업을 통하여 獲得된 收入의 重要性은 높을 것이며 소득이 매우 높을 경우 여성의 취업은 가구소득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의 表는 이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表 2-6〉 所得階層別 婦人の 就業·非就業 家口間の 所得隔差

(단위: 천원)

부인 취업여부	소득 계층 ¹⁾				전체평균(중앙값)
	하층	중층	상층 ²⁾	상위5%	
취업 가구(A)	937	1,562	2,731	4,217	1,751
비취업 가구(B)	846	1,500	2,717	4,627	1,333
소득평균(중앙값)	867	1,521	2,727	4,400	1,528
(A - B)	91	62	14	- 410	418
(A - B) / B	0.108	0.041	0.005	- 0.089	0.314

註: 1) 가족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구분임.

2)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전체적으로 볼 때 婦人 就業家口는 非就業家口 보다 家口總所得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就業家口는 월 175.1만원의 수입을 갖는 반면 비취업 가구는 월 133.3만원의 수입을 갖는다. 두집단간의 所得隔差는 월 41.8만원으로 취업가구가 비취업 가구보다 31.4% 더 수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각 所得階層別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격차가 所得階層에 따라 큰 변이를 보임을 발견하게 된다. 예상했듯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就業家口와 非就業家口간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下位所得層의 경우 부인 취업가구는 비취업가구 보다 10.8% 더 소득을 갖게 되나 상위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업가구와 비취업가구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기할 점은 매우 부유한 상위 5% 소득계층의 경우 부인 就業家口가 婦人 非就業家口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表에서 이 소득집단의 경우 부인 취업가구는 비취업가구 보다 월 41만원, 비율로는 8.9%나 낮은 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나라에서도 所得 上位層 婦人の 경제활동의 경우 금전적인 목적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반면 經濟外的 動機가 보다 강력하리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취업 부인 소득의 經濟的 意味가 가족소득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이하다면, 과연 취업 부인의 소득과 취업 부인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소득과의 가족소득에서의 구성은 所得階層에 따라 어떠한 양태를 띠는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해 진다. 다음의 <表 2-7>은 이러한 의문에 부분적으로 답하고 있다.

<表 2-7> 他家口員所得과 就業婦人所得의 所得階層別 分布

(단위: 천원)

부인 취업여부	소득 계층 ¹⁾									
	하층		중층		상층 ²⁾		상위5%		전체평균(중앙값)	
	타가구 ³⁾	부인 ³⁾	타가구	부인	타가구	부인	타가구	부인	타가구	부인
취업 가구(A)	700	180	1,155	400	2,165	618	3,415	1,000	1,268	504
비취업 가구(B)	846	0	1,500	0	2,717	0	4,627	0	1,333	0
소득평균(중앙값)	809	-	1,332	-	2,458	-	4,000	-	1,300	-
(B - A)	146		345		552		1,212		65	
(B - A) / A	0.209		0.299		0.255		0.355		0.051	

註: 1) 가족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구분임.
 2)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3) “타가구원”은 취업부인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전체의 소득을 의미하며 “부인”이란 취업부인 본인의 소득을 의미함.

전반적으로 婦人 就業家口의 他家口員所得은 非就業家口의 타가구원 소득보다 6.5만원 높으며 비율로는 5.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所得階層別로 비교해 보면 中上層의 타가구원 소득의 비율이 下位所得層의 타가구원소득의 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 부인 소득에 기인한 경우 보다는 남편의 소득이 부인의 취업에 관계없이 높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층과 상층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중층이 도리어 상층보다 부인 취업가구의 소득평균 대비 타가구원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각각 29.9%, 25.5%) 所得 中位層과 上層間

에는 부인의 就業動機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단 소득상위층 중에서도 매우 부자인 상위 5% 집단의 경우에는 여타의 상류층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이 소득집단의 경우 부인 취업집단과 미취업 집단간의 타가구원소득의 차이의 절대액(121.2만원) 자체가 현저하게 클 뿐만 아니라, 就業家口의 所得平均과 대비한 비율 또한 매우 높다(35.5%). 이는 취업부인의 소득이 매우 부유한 층을 매우 부유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就業婦人들의 所得의 絶對額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소득집단 취업 여성의 소득평균은 월 100만원으로 전체 취업여성 소득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며 所得 上位層의 취업부인의 소득평균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소득 상위 5%의 집단은 부부간의 就業 結合形態에 있어서도 여타의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임과 함께 취업 부인의 소득의 의미 또한 여타의 소득집단과는 매우 다를 것임을 여기에서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라. 就業女性의 家口所得 寄與程度

앞의 절에서 就業女性의 所得은 소득계층별로 그 의미가 다를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취업 여성의 家口所得에의 寄與度는 얼마나 되며 남편의 소득과의 상대적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취업여성의 家口所得 寄與度에 대한 검토는 간단하지 않다. 재산소득이나 기타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부터 얻는 수입이 아닌 소득의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하여도, 우리 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많은 부분이 自營業 및 無給家族從事者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⁶⁾ 엄밀하게 여성의

6) 본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족의 경우 취업여성중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는 비율은 37.5%에 달하며 고용주의 범주까지 포함할 경우 40.6%에 이른다.

경제활동에 따른 보상의 부분을 남편의 수입과 구분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본 분석에 활용한 자료에서도 부부 모두가 자영업 혹은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1,187가구의 사례중 86%의 사례에서 부인의 소득은 없으나 경제활동에는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동일한 수준의 비교를 위하여 여기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자영업 혹은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남편과 부인 모두 소득이 있는 就業活動에 從事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의 <表 2-8>은 이러한 選別過程을 거친 후의 4,388 가구에 대하여 가구총소득 및 남편의 소득에 대비한 취업 부인의 소득의 기여도를 所得階層別로 제시하고 있다.

<表 2-8> 맞벌이 家口 婦人の 就業所得 寄與度 分布
(他家口員所得에 基準한 階層區分)

(단위: 비율)

부인소득 ²⁾ 의 비율	소득 계층				
	하층	중층	상층 ¹⁾	상위5%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0.405	0.289	0.201	0.158	0.320
남편소득 ²⁾ 대비	0.682	0.485	0.401	0.329	0.542
부인과 남편간의 근로소득 비율 ³⁾	0.642	0.450	0.457	0.708	0.523

註: 1)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2) 부인 및 남편의 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개념임.
3) 남편과 부인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2,982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婦人所得의 總家口所得에 대한 寄與度は 평균 32% 로서 예상했던 대로 所得 下位層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서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인소득의 가구총소득에의 기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서구의 경우 보다는 평균적으로 약간 높은 비율인 반면 低所得層의 경우 서구의 경우보다 낮은 寄與率을 보인다. 所得 上位 5% 집단의 경우 부인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15.8% 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소득에 대비한 취업 부인소득의 상대적인 비율은 家口總所得에의 寄與率의 경우에서 보다 더 뚜렷한 유형을 보인다. 所得概念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정하였을 때 婦人所得의 男便所得 對比 比率은 평균 54.2%로서 이는 全產業體의 남녀간 賃金隔差 比率인 56.6%와(노동부, 1995)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下位所得層일수록 남편소득에 대한 부인소득의 상대 비율은 높아져 하층 집단의 경우 이 비율은 68.2%에 달한다. 소득의 개념을 勤勞所得에만 한정했을 경우 부인과 남편간의 근로소득의 비율도 유사한 유형을 보여 전체적으로 부인의 근로소득 규모는 남편의 근로소득의 52.3%의 수준이며 下位所得層의 경우 64.2%에 달한다. 특기할 사항은 근로소득에 한정할 경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男便對比 婦人의 所得比率은 낮아지나 매우 부유한 상위 5% 소득집단의 경우는 이 추세와는 반대로 여성의 소득이 남편소득의 70.8%에 달하여 하층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매우 부유한 층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남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비교하여 적지 않으며, 또한 여성의 經濟活動이 일부의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타집단과의 所得隔差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구의 경우 中産層 女性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所得隔差를 확대시키는 양상과 유사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Treas, 1983).

마지막으로 부인의 소득과 여타 소득원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다음의 <表 2-9>와 같다. 예상한 대로 就業婦人의 所得과 家口總所得間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관계의 강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취업 부인의 소득과 타가구원소득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所得階層別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관계가 미약하거나 상위 5% 소득집단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부적인 상관관계($r=-0.249$)가 존재함을 본다. 勤勞所得과 事業所得을 합산한 소득개념을 적용할 때 남편소득과 부인의 소득간에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表 2-9〉 就業婦人の 所得과 餘他 家口所得員과의 相關度
(他家口員所得에 基準한 階層區分)

(단위: 피어슨의 상관계수)

부인소득 ²⁾ 과의 상관도	소득 계층				
	하층	중층	상층 ¹⁾	상위5%	전체
가구총소득	0.871	0.871	0.669	0.473	0.662
타가구소득	-.059	0.099	0.087	-0.249	0.208
남편소득 ²⁾	0.003 ⁴⁾	0.142	0.215	-0.012 ⁴⁾	0.259
부인과 남편간의 근로소득의 상관도 ³⁾	0.642	0.450	0.457	0.708	0.523

註: 1) 소득계층의 상층에는 상위 5%를 포함한 상위의 25% 가구를 지칭함.
 2) 부인 및 남편의 소득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개념임.
 3) 남편과 부인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2,982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4)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그러나 勤勞所得에 한정할 경우 남편과 부인의 근로소득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크며 특히 매우 부자들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관계의 강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각각 $r = .708, .642$ 임). 이는 同種婚姻 assortative mating)의 결과 人的資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간에 적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간에 婚姻關係를 맺는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要約

본 장에서는 既婚女性の 經濟活動 參與를 이끄는 가장 큰 要因의 하나이며 經濟活動 參與의 가장 큰 결과의 하나인 가족의 소득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앞의 문제제기의 부분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복잡한 分析技法을 동원하여 설명을 시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되어 오던 가설들이 현상에 비추어 타당한가 여부를 밝히는 데 분석의 중점을 두었다. 분석의 결과 확인된 상식 및 새로운 발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夫婦의 就業 結合類型에 있어 低所得層과 上位所得層間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자영업 혹은 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상위소득층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자영업이나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대신 남편은 雇傭主거나 賃金勤勞者이고 여성은 自營業이나 家族從事者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취업하지 않았다는 가상적인 경우의 가구소득인 취업여성 본인의 소득분을 차감한 他家口員所得에 기준해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婦人 就業家口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就業婦人의 소득을 포함한 가족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經濟的인 動機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所得階層間의 부인 취업가구 비율의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우 女性就業으로 인해 低所得層으로 부터 中位 이상의 소득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中位所得層으로 부터 上位所得層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女性就業家口는 非就業家口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소득을 누리고 있으나 취업가구가 누리고 있는 소득에서의 우위는 低所得層의 경우에 가장 큰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줄어들며 매우 부유한 상위 5% 소득집단의 경우 女性就業家口가 도리어 非就業家口 보다 소득이 낮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부유

한 층의 경우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발견이다. 이러한 부유층 중에서도 여성이 經濟活動에 參與하는 경우에는 취업여성의 수입이 여타 所得階層의 취업여성의 수입보다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이 집단을 부유층으로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이 중요한 寄與 要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就業女性の 家口所得 寄與度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구의 수준과 비교할 때 全般的인 比率로는 약간 높은 수준이나 低所得層의 경우에는 서구의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편소득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특히 부부의 근로소득을 비교해 볼 때 低所得層 婦人의 소득이 가계에서 큰 몫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우 부유한 가구의 경우 勤勞所得만을 놓고 보아도 여성의 취업이 階層間的 所得 隔差를 더 벌여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위의 분석은 우리 나라 여성의 經濟活動에 家族所得에 기여하는 바는 일부 예외적 소득집단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특히 低所得層의 경우 女性の 就業이 가계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일부 中間 所得階層이 그 地位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여성의 소득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알게 된다. 기존의 貧困層에 관한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취업은 이들에게는 必需的인 生存戰略으로서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따라서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들 여성들의 生存現實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第3章 女性の經濟活動參與が 家族構造 및 世代間 關係에 미치는 影響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與가 家族構造, 家族關係, 家族規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既婚女性の 경제활동참여가 家族構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核家族化를 촉진시키는가 혹은 方位家族(Family of Orientation)⁷⁾과의 연계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家族構造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⁸⁾. 둘째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家族關係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져왔던 表現的 役割의 수행, 즉 가족을 보살피고(Caregiving) 친족 관계를 돈독히 하는(Kin-keeping) 역할(Finley, 1989)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與가 家族規範 또는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어떠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 측면에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與가 미치는 影響力이 동일한가 여부도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7) 방위가족이란 한 개인이 출생하여 소속하게 된 가족을 의미하며, 이에 대비되는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은 한 개인이 성인으로 소속되는 가족으로 자녀라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가족을 일컫는다.

8)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구조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이와는 반대의 인과관계, 즉 확대가족이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世代間 關係의 變化에 관한 理論的 背景

가. 家族變化的 複合性

한국에서의 산업화와 가족변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권태환 외, 1995; 장현섭, 1993; 조 은, 1993), 전산업사회에서의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았지만⁹⁾, 산업화된 한국사회에서는 核家族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원리가 아직은 붕괴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권태환 외, 1995; 장현섭, 1993).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서 외형적 변화와 내면적인 변화, 즉 家族構造의 變化와 家族成員間의 關係 및 價値指向性을 區分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家族構造에 있어서의 核家族의 비율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家族變化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변화가 가족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면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증대되고 있는 女性就業이 家族에 미치고 있는 影響力을 파악함에 있어서 家族의 外形的 變化 뿐만 아니라 內面的인 變化에 미친 影響도 살펴보고자 한다.

9) 조은(1993)과 장현섭(1993)은 각각 한말 한성부 호적자료와 조선시대의 자료분석에 기초하여 가족의 조직원리가 핵가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외형적으로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권태환 외(1995)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분석을 통한 인구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근대화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1960년대에 이미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 社會交換理論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세대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社會交換理論(Blau, 1964; Sussman, 1985; Mutran & Reitzes, 1984; Treas & Bengtson, 1987)이 갖는 理論的 含蓄性은 매우 크다. 이 이론은 인간은 자신에게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인간관계를 택하며, 보상과 비용의 평가는 狀況에 따라서 변하는 流動的인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補償과 費用이라는 틀로써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가 설명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청장년층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효의식을 갖고 있어서(서병숙, 1988; 성규탁, 1995; 옥선화, 1989) 보상이나 비용에 대한 고려보다 규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女性의 經濟活動參與가 오히려 부모의 자원으로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설명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김명자, 1991).

女性의 經濟活動參與는 증가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역할 관념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公的인 支援體系가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가족 내에서 생계유지라는 기능수행과 더불어 표현적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就業女性에게 부모세대 특히 어머니는 가사, 아이양육등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노부모가 일방적인 의존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비공식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손승영, 1994; Rossi & Rossi,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與가 이러한 費用과 惠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모세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研究質問에 답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4년도에 실시한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한 경험

적 분석을 하였다. 이 자료는 家族關聯 深層 調査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표본으로 전국 지역에 대한 확률 표집을 하였고 政府의 出産力 및 家族保健關聯 公式 統計를 만들기 위하여 '60년대부터 매 3년 마다 지속적으로 調査를 시행하여 資料의 信賴度가 높다¹⁰⁾. 그러나 자료의 목적이 출산력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취업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지 않아 女性就業의 決定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는 限界를 갖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센서스 표본조사구 중 섬지역과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150개의 표본조사구를 시, 군 및 아파트지역에 대하여 층화추출한 確率標本資料이다. 조사완료 가구수는 총 10,613가구이며 조사완료 가구내 조사완료 부인수는 6,060명이다¹¹⁾. 본 연구에서는 이 중 市部에 속하는 6,557가구의 4,810명의 부인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郡部 地域을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農村地域과 都市地域間의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與 行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農村地域의 경우 노동가능한 대부분의 기혼 부인이 다양한 형태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公式的으로 報告되는 經濟活動參加率 또한 매우 높다. 반면 都市地域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의 구분이 농촌 지역의 여성보다 명확하며 經濟活動參加率 또한 낮아 많은 遊休勞動力이 存在하는 차이를 보인다.

분석의 내용으로는 첫째로, 家族構造와 世代間의 關係를 유배우 부인의 취업상태와 직업, 가족주기별로 제시하였으며, 세대간의 관계에 유배우부인의 취업유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경우는 회귀분석을 범주형일 경우는

10) 이 조사자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를 참조할 것.

11) 조사완료가구수와 조사완료 부인수의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조사대상 부인의 연령을 15~49세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로지스틱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變數들은 <表 3-1>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크게 婦人의 特性과 父母의 特性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表 3-1> 分析에 使用된 變數들

독립변수	정의
부인의 특성	
연령	연령
교육수준 ¹⁾	교육년수
가족주기 ²⁾	1 형성기 2 재생산기 3 집중육아기 4 육아완료기
취업유무 ³⁾	0 미취업 1 취업
직업	1 전문직 및 사무직 ⁴⁾ 2 판매 및 서비스직 4 기능직 5 기타
부모의 특성	
(시)부모의 생존	0: 한분만 생존 (사별상태) 1: 양친생존 (유배우 상태)
(시)부모의 건강상태	0: 양친모두 건강 1: 양친중 한분 이상 건강상의 문제를 갖음
(시)부모의 경제적 능력	0: 경제적 능력 없음 1: 경제적 능력 있음
(시)부모의 주거형태	0: 단독가구형성 1: 동거
(시)부모와의 거주거리	1: 이웃·같은동네 2: 동일 동 3: 가깝지는 않지만 동일 구·시·군 4: 같은 도 5: 다른 시도 6: 기타
친정부모/시부모	0: 친정부모 1: 시부모

종속변수	정의
주거형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0: 비동거 1: 동거
비동거시의 (시)부모와의 주거거리	0: 기타 1: 이웃에 삼
동거시의 생활	
결정권자	0: 부부중심형(부모의 결정권 없음) 1: 부모중심형(부모의 결정권 있음)
부모로부터의 도움 (경제, 가사, 자녀양육, 집보기, 정서적)	0: 없음 1: 있음
비동거시의 접촉	
방문을 통한 접촉도	년간방문회수
전화를 통한 접촉도	월간전화회수
가족관	
자녀의 필요성	0: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1: 자녀는 꼭 필요함
남아선호	0: 남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1: 남아가 꼭 필요함
바람직한 부모봉양방법	0: 자녀가 부양을 해야 함 1: 단독가구형성이 바람직함
바람직한 노후생활	0: 자녀의 도움 1: 독립적

- 註: 1) 동류결혼 assortative mating)의 추세로 인해 남편의 교육수준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보이므로 부인의 교육수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음.
- 2) 형성기는 결혼을 하여 첫자녀가 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재생산기는 첫자녀가 출생후부터 막내자녀가 출생하기 전의 기간을, 집중육아기는 막내자녀가 출생한 후부터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를, 육아완료기는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를 말함.
- 3) 취업은 임시직, 시간제고용, 비공식부문의 노동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모든 활동을 포함함.
- 4) 남편의 직업의 경우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을 포함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전문직이 매우 적어,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을 포함하는 전문직/사무직이라는 동일범주로 분류하였음. 또한 기타는 단순조립공,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업을 포함함.

부인의 특성에는 배경변수인 연령과 교육수준 외에도 일과 관련된 변수로 여성의 경제활동유무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직

업의 종류가 포함되었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변수로 家族週期가 고려되었는데, 이는 양육에의 책임이 부모부양에의 책임과 就業女性の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두고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Brody, 1981), 家族週期에 따라서 就業女性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주기에 따라서 부인이 느끼는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혜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특성으로는 노년기의 특징인 경제적 능력의 감소, 건강의 악화, 배우자의 상실 등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에는 家族構造, 家族關係, 家族價値와 관련된 변수들이 있으며, 家族構造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는 주거형태와 부모와의 거주거리가 포함되었다. 家族關係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중요한 문제의 결정권자와 부모로부터의 도움 유무 등이 분석되었다. 한편 비동거의 경우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접촉의 정도가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은 자녀의 필요성과 남아선호를 통하여 자녀관을 파악하였고, 자신이 생각하는 노부모 봉양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하여 노후관을 살펴보았다.

2. 女性の 經濟活動 參與가 家族構造 및 家族關係에 미치는 影響

가. 女性の 經濟活動參與와 家族構造

分析對象 有配偶婦人의 대부분은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적어도 1명은 생존해 있으며, 생존해 계시는 부모가 한 분도 없는 경우는 4.8%에 불과하다. 부인의 79% 정도가 생존해 계시는 시부모가 있고, 약 87%는 친정부모가 생존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부모와의 관계정립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경우 부모 중 한 분만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모두 약 40%정도이며, 주로 생존해 있는 부모는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3-2, 附表 1 참조). 여성의 높은 평균수명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表 3-2〉 父母의 生存現況

(단위: 명, %)

	시부모			친정부모		
	양친사망	편친	양친생존	양친사망	편친	양친생존
전체 유배우부인	1,028 (21.4)	1,828 (38.1)	1,949 (40.6)	631 (13.1)	1,882 (39.2)	2,290 (47.7)

〈表 3-3〉에 의하면 대상자의 77.2%가 核家族을 이루고 있어¹²⁾, 센서스 자료분석에서 보고된 76%와 비슷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형태상 核家族이 普遍的 家族形態임을 보여주는 것이다¹³⁾. 부인의 12.7%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도 확대가족은 부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확대가족의 90%가 시부모와의 동거이다. 수정확대가족은 확대가족과는 달리 부모, 자녀 가족이 각기 별개의 가구를 마련한다는

12) 그러나 이것이 곧 분석대상 부인의 부모세대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분석대상 부인의 가족과는 동거하지 않지만 다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약 절반 정도가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의 부모들중 약 50%정도가 65세 이전이므로 일반적인 노령층의 단독가구비율과도 다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율은 58.7%이며, 65세 이상의 경우는 69.9%이다.

(단위: 명, %)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부인수	확대가족	핵가족	확대가족	핵가족
총부인수	4,805(100.0)	1,915(49.7)	1,903(50.3)	2,076(49.8)	2,093(50.2)

13) 그러나 이것이 곧 직계가족원리의 붕괴라는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점에서는 전통적인 核家族과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살면서 한 집과 같은 왕래와 협조를 하며 사는 家族構造를 의미한다(김태현, 1993).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유배우부인의 11%가 수정핵가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확대가족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表 3-3〉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家族形態

(단위: 명, %)

제 특성	부인수	확대가족 ⁴⁾		수정확대가족 ⁵⁾		핵가족 ⁶⁾
		시부모와 동거	친정 부모와 동거	시부모	친정 부모	
전체 유배우부인 ¹⁾	4,575	520(11.4)	59(1.3)	238(5.2)	263(5.7)	3,534(77.2)
취업상태 ²⁾						
미취업	2,554	285(11.2)	30(1.8)	143(5.6)	122(4.8)	1,998(78.2)
취업	1,585	235(14.8)	29(1.8)	95(6.0)	141(8.9)	1,100(69.4)
직업:전문직/사무직	360	57(15.8)	12(3.3)	25(6.9)	45(12.5)	228(63.3)
판매직/서비스직	564	101(17.9)	6(1.1)	30(5.3)	49(8.7)	381(67.6)
기능직	286	34(11.9)	6(2.1)	21(7.3)	23(8.0)	204(71.3)
기타	374	44(11.8)	6(1.6)	18(4.8)	23(6.1)	285(76.2)
가족주기 ³⁾						
형성기	364	44(12.1)	3(0.8)	20(5.5)	21(5.8)	279(76.6)
재생산기	875	104(11.9)	18(2.1)	63(7.2)	65(7.4)	635(72.6)
집중육아기	1,155	123(10.6)	14(1.6)	74(6.4)	67(5.8)	890(77.1)
육아완료기	1,685	239(14.2)	23(1.4)	77(4.6)	101(6.0)	1,258(74.7)

- 註: 1)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유배우부인은 총4,810명중 4,575명임.
 2)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유배우부인 중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부인은 4,139명임.
 3) 생존부모가 1명이라도 있는 유배우부인 중 가족주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부인은 89.2%인 4,079명임.
 4) 1명의 부인이 시부모와 친정부모와 동시에 거주하고 있음.
 5) 38명의 부인이 동시에 시부모의 주거지와 친정부모의 주거지 모두와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음.
 6) 시부모와 친정부모와 동시에 동거하거나 이웃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합이 100을 넘고 있음.

그렇다면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與는 이러한 家族構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表 3-3>은 현재 도시지역의 맞벌이 가족이

전통적인 核家族 形態와는 상이한 家族構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취업부인 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4.8%로 미취업부인의 11.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부인의 14.9%가 수정확대가족을 이루고 있어 미취업부인의 10.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就業女性이 미취업여성보다 주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就業女性이 더 빈번히 확대가족과 수정확대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家族構造가 核家族에 비하여 용이하게 시부모나 친정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家族構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정확대가족은 확대가족과는 그 조직원리에 있어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반면, 수정확대가족을 이루는 비율에 있어서는 친정과 시댁이 비슷하다. 특히 就業女性의 경우는 친정부모를 중심으로 수정확대가족을 형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就業女性이 친정부모와 수정확대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은 8.9%로 미취업여성의 4.8%의 약 두배에 해당하고 있다. 즉, 아직도 부계중심의 직계원리라는 규범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확대가족의 경우와는 달리 수정확대가족은 비교적 자발적인 관계로 취업부인이 도움을 받는데 심리적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친정부모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조병은·신화용, 1992).

다변량 분석에 의하면 既婚女性의 就業이 擴大家族 形成에 미치는 統計的 影響力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⁴⁾. <表 3-4>는 부인의 취업 유무가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14) 확대가족의 90%가 부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사례는 매우 적으므로(59명), 시부모와의 확대가족형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만을 실시하였음.

〈表 3-4〉 老父母와의 同居與否 및 近距離 居住를 決定하는 要因들

변수들	시부모와의 동거		근거리 거주 ¹⁾	
	전체	경제활동중	시부모	친정부모 ²⁾
유배우 부인수	3,135	1,178	2,706	3,400
절편	-1.372(.51) ⁴⁾	-.611(.81)	-2.096(.77) ⁴⁾	-3.662(.68) ³⁾
부인의 연령	-.007(.01)	-.015(.02)	-.031(.02)	-.002(.02)
부인의 교육수준	.021(.02)	-.004(.03)	.097(.03) ⁴⁾	.049(.03)
남편의 직업				
(기능직)	-	-	-.774(.24) ⁴⁾	-
(판매직/서비스직)	-	-	-.839(.25) ³⁾	-
(사무직)	-	-	-1.316(.28) ³⁾	-
(전문직/관리직)	-	-	-.957(.29) ³⁾	-
가족주기				
(재생산기)	.003(.22)	-.168(.35)	.500(.29)	.395(.28)
(집중육아기)	-.231(.22)	-.070(.36)	.437(.30)	.114(.29)
(육아완료기)	-.036(.25)	.005(.39)	.445(.37)	.197(.35)
부인의 경제활동	.577(.16) ³⁾	-	.214(.16)	.713(.14) ³⁾
부인의 직업				
(기능직)	-	-.074(.28)	-	-
(서비스직)	-	.565(.24) ⁵⁾	-	-
(사무/전문직)	-	.682(.30) ⁵⁾	-	-
부모의 건강상태	.282(.15)	-.131(.18)	.018(.16)	-.078(.16)
양친생존여부	-.557(.12) ³⁾	-.648(.20) ³⁾	.076(.17)	.049(.16)
부모의 경제적 능력	-.716(.15) ³⁾	-1.542(.22) ³⁾	-.140(.17)	.170(.17)
부모의 거주유형	-	-	-.287(.16) ⁶⁾	-.310(.15)
부인의 경제활동× 부모의 건강상태	-.432(.23) ⁶⁾	-	-	-
부인의 경제활동× 부모의 경제적 능력	-.799(.25) ³⁾	-	-	-
Model χ^2	166.853 ³⁾	110.654 ³⁾	36.491 ³⁾	36.462 ³⁾
d.f.	11	11	14	10

註: 1) 여성의 경제활동과 제변수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으나 의미있는 것이 없었고, 경제활동중인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인의 직업을 포함한 분석하여 <附表 2>에 제시하였음.

2) 친정부모와의 근거리거주의 분석에 남편의 직업을 포함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직업이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남편의 직업을 뺀 결과를 제시함. 참고로 남편의 직업이 포함된 분석은 <附表 2>에 제시하였음. 남편직업의 경우는 무직 및 단순노무직이 준거범주임.

3) $p < 0.001$ 4) $p < 0.01$ 5) $p < 0.05$ 6) $p < 0.10$

부인이 취업하고 있을수록 부모와의 동거율이 높고, 특히 就業女性의 경우 전문직을 갖고 있을수록 동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부모보다 더 적절한 대리양육자를 찾을 수 없으며, 전문직 여성일수록 동거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父母의 特性 특히 有配偶 與否와 經濟的 能力 또한 확대가족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부모가 무배우 상태일 때와 부모가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확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친일 때 확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녀가 결혼후에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살다가 부모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할 때는 다시 합치는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최재석, 1983). 또한 부모의 經濟的 能力이 없을 때 확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확대가족내에서 자녀부부가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고 부모세대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특성이 갖는 영향력은 부인의 경제활동유무에 따라서 다르다. 무엇보다도 먼저, 父母의 健康狀態는 취업여성의 경우와 비취업여성의 경우 정반대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취업부인의 경우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健康狀態가 좋지 않을수록 모시고 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父母의 健康狀態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곧 부양의무의 가중을 의미하므로 취업여성에게는 과중한 역할을 요구하게 되어 확대가족형성을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에 따르는 惠澤보다는 費用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확대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動機設定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經濟力 有無가 갖는 影響力은 就業婦人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취업여성과 비교하여 볼 때 취업여성은 부모

의 經濟的 能力이 없을수록 확대가족을 훨씬 더 많이 형성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시각에서 볼 때 부모세대가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일을 하고 있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부부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表 3-4>는 수정확대가족으로 정의될 수 있는 父母와의 近距離 居住를 결정하는 요인이 확대가족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의 경제활동유무와 가족주기는 전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배경적 특성인 婦人の 教育水準과 男便의 職業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부모와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이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시부모와 이웃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경우에 근거리에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모가 다른 자녀와 확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단 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의무감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모두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친정부모의 경우는 이러한 부인의 배경적인 특성이나 부모의 특성은 전혀 영향력이 없고 단지 부인의 취업상태만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與가 家族生活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私的 支援體系에의 欲求와 가족내에서의 影響力의 擴大라는 두 축에 의하여 한국가족을 부계중심에서 兩系制로의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규범적인 대변혁을 요구하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의 단계까지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 擴大家族에서의 世代間的 關係

본 연구에서는 확대가족내에서의 세대간의 관계를 크게 권력관계와

서비스교환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權力關係는 의사결정권을 어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고, 父母의 役割은 자녀에게 제서비스를 주고 있는가 여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서비스의 제공은 交換論的 觀點에서 볼 때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가족내의 家族關係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부모에게서 받는 도움의 정도가 높아져 부모의 가족내 위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家族內的 權力關係

<表 3-5>에 의하면 30%에 못미치는 경우만이 부모가 의사결정에 강력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며, 70%정도가 부부(또는 그 중 1인)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확대가족내에서 부모세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의 확대가족구조는 동일하다고 해도 家族生活의 중심은 既婚子女 世代에게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3-5>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同居時 決定權

(단위: 명, %)

계특성	부인수	부모중심형	부부중심형
전체 유배우부인	576(100.0)	166(28.9)	409(71.1)
취업상태: 미취업	317(100.0)	116(36.6)	201(63.4)
취업	257(100.0)	50(19.5)	207(80.5)
전문직/사무직	66(100.0)	19(28.4)	47(71.6)
판매직/서비스직	104(100.0)	21(20.4)	83(79.6)
기능직	38(100.0)	5(12.2)	33(87.8)
기타	49(100.0)	6(11.2)	43(88.8)
가족주기: 형성기	47(100.0)	24(51.9)	22(48.1)
재생산기	121(100.0)	40(33.4)	80(66.6)
집중육아기	135(100.0)	54(40.0)	81(60.0)
육아완료기	263(100.0)	45(17.2)	217(82.8)

한편, 가족주기를 보면 육아완료기에 의사결정권이 확연히 자녀에게 치우쳐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주기 때문이 아니라 육아완료기에 이른 부인들(평균연령 40.4세)의 부모는 노쇠하여 제 자원을 적게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변량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表 3-7>에 의하면 의사결정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부부의 특성이 아니라 父母世代의 특성이다. 즉, 부모세대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는 父母世代가 經濟力을 갖고 있는 경우이거나, 양친이 생존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부모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影響力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家族內 父母의 役割

同居時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65%이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손자녀 돌보기와 가사일 보조로 40~50%정도이며 그 다음은 집보기로 32.5%이다. 이러한 역할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온 역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거시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가족내에서 기여하는 측면이 많아서 훨씬 그 위치가 확고하고 생활이 무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 도움이나 경제적 보조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인 25% 정도이다(表 3-6 참조).

就業女性の 경우는 자녀를 낳기 전인 결혼초기를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정서적 의존은 낮지만 그 대신 손자녀돌보기와 가사일돕기 등에 있어서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확대가족을 이룸으로써 자녀양육과 가사돌보기라는 도움을 통해서 가정과 일의 양립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미취업여성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골고루 받고 있고, 특히 經濟的 도움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여성의 40%가 부모로부터의 經濟的 도움을 받고 있다.

〈表 3-6〉 女性的 經濟活動與否別 同居時 父母의 도움 (단위: 명, %)

특성	유배우 부인수	부모님의 도움		도움의 종류				
		없음	있음	경제적 보조	손자녀 돌보기	가사일 보조	정서적	집보 기
전체 유배우부인	574 ¹⁾	203(35.3)	371(64.7)	24.8	42.0	48.2	24.3	32.5
미취업	318	123(38.8)	194(61.2)	39.8	33.4	33.5	31.1	27.9
취업	257	78(30.7)	177(69.3)	8.3	51.5	64.3	16.9	37.6
전문직/사무직	64	12(19.4)	52(80.6)	12.3	46.9	63.0	24.5	27.7
판매/서비스직	104	32(30.3)	73(69.7)	8.4	47.4	64.6	9.0	37.9
기능직	38	13(34.3)	25(65.7)	4.3	36.0	70.9	18.0	40.6
기타	49	21(43.6)	28(56.4)	4.4	33.4	59.9	22.5	52.3
가족주기								
형성기	45	8(18.7)	37(81.3)	41.0	0.0	61.5	38.7	9.0
재생산기	121	27(22.8)	93(77.2)	24.6	67.1	45.6	21.3	22.8
집중육아기	135	36(27.1)	98(72.9)	30.3	60.2	35.3	21.8	25.1
육아완료기	263	127(48.4)	135(51.6)	17.8	21.8	54.0	25.0	49.3

註: 1) 이는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있었는가 여부에 응답한 부인의 숫자이며, 그 중 구체적인 도움의 종류에 응답한 부인의 수는 이보다 적은 371명임.

부모로부터 받는 도움의 決定要因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經濟的 도움의 경우는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저하하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을수록 증가한다. 한편 養育이나 家事補助 등은 부인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서적 도움이나 집보기등에는 부인의 경제활동유무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취업주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양육에 대한 도움을 살펴보면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세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는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 養育補助와 집보기의 경우는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수록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월한 방법이므로 경제적인 의존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表 3-7 참조). 또한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의 여가나 사회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¹⁵⁾.

〈表 3-7〉 도움의 決定要因들

변수들	의사결정 유형	경제적 도움	양육 도움	가사 도움	정서적 도움	집보기
유배우 부인수	399	263	263	263	263	263
절편	.311 (1.31)	-2.038 (1.86)	-1.878 (1.30)	-.884 (1.37)	-2.896 (1.55)	-.023 (1.59)
부인의 연령	-.104 (.03)	-.059 (.05)	-.047 (.03)	.027 (.03)	-.001 (.04)	.014 (.04)
부인의 교육수준	.067 (.05)	.092 (.08)	.103* (.05)	-.008 (.05)	.136* (.06)	-.082 (.06)
가족주기						
재생산기	-.509 (.47)	-.635 (.59)	2.807 ¹⁾ (.47)	-.694 (.49)	-.443 (.51)	.480 (.71)
집중육아기	.190 (.49)	.840 (.67)	2.587 ¹⁾ (.49)	-1.252 ³⁾ (.53)	-.518 (.55)	.203 (.72)
육아완료기	.106 (.60)	.606 (.90)	1.239 ³⁾ (.61)	-.850 (.64)	-.144 (.70)	1.353 (.81)
부인의 경제활동	-.442 (.27)	-1.458 ²⁾ (.45)	.905 ¹⁾ (.27)	1.030 ¹⁾ (.28)	-.453 (.33)	-.423 (.32)
건강상태	.282 (.28)	.162 (.45)	.001 (.29)	.112 (.31)	-.229 (.36)	.147 (.34)
양친 생존여부	.875 ¹⁾ (.27)	.183 (.42)	.031 (.30)	.445 (.31)	-.032 (.35)	.301 (.36)
경제적 능력	.870 ²⁾ (.29)	2.945 ¹⁾ (.52)	-1.018 ²⁾ (.32)	-.203 (.34)	.323 (.37)	-1.534 ¹⁾ (.40)
친정/시부모	1.058 ³⁾ (.52)	.033 (.63)	.005 (.42)	.233 (.45)	.614 (.55)	-.428 (.49)
Model χ^2	97.164 ¹⁾	111.519 ¹⁾	116.803 ¹⁾	28.377 ²⁾	13.302	50.950 ¹⁾
d.f.	10	10	10	10	10	10

註: 1) $p < 0.001$ 2) $p < 0.01$ 3) $p < 0.05$ 4) $p < 0.10$

15) 199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주요여가활동은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이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여가활동 참여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核家族 形成時의 世代間的 接觸

核家族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곧 부모로부터 또는 방위가족(Family of Orientation)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리트왁(Litwak, 1960)은 미국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생존력이 강한 가족은 고립된 전통적인 核家族 形態가 아니라 방위가족 내지는 친족과 밀접한 연계망을 형성하고 접촉과 도움을 주고 받는 형태임을 밝힌 바 있다(Litwak, 1960; 1989).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核家族이 방위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만일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긴밀한 紐帶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유대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때 女性의 就業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訪問 및 電話를 통한 接觸

<表 3-8>은 核家族을 이루고 있더라도 부모와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방문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접촉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동거시 시부모를 평균 1년에 33회 방문하고 있으며 전화는 한달에 7회 정도 하고 있다. 즉,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만은 일주일에 2회정도, 직접적인 방문은 2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정부모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 31회 방문하고 있어 시부모보다 약간 낮고, 전화의 경우는 월 8회로 약간 높은 편이다. 즉 방문은 시부모가 우선시되는 반면, 친정부모와의 접촉은 수월한 전화로 하고 있다.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에 비하여 부모와 빈번한 接觸을 하고 있지만 다변량 분석결과 여성의 취업이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체가 갖는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취업여성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취업여성의 경우는 친정보다는 시댁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있지만 취업여성의 경우는 친정부모와의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취업을 할수록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가정내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규범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세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전통적으로 친족관계유지의 중심이 되어왔던 여성 자신의 선호가 반영된 세대간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女性の 經濟活動參與와 兩系制로의 변화는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3-8〉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非同居時 父母와의 接觸度

제 특성	유배우 부인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년간 방문회수 (일)	월간 전화회수 (회)	년간 방문회수 (일)	월간 전화회수 (회)
전체 유배우부인	3,449	32.5	7.1	30.7	8.1
미취업	2,130	31.4	9.2	25.7	8.1
취업	1,319	34.5	6.6	38.8	8.1
전문직/사무직	96	39.6	5.8	60.1	10.8
판매/서비스직	473	34.8	6.3	40.7	8.4
기능직	235	32.9	7.1	22.6	6.1
기타	315	30.3	7.1	28.6	6.5
가족주기					
형성기	305	33.6	8.1	35.6	11.2
재생산기	717	38.2	8.7	40.9	10.0
집중육아기	958	31.8	7.0	30.3	8.6
육아완성기	1,420	28.3	5.8	24.6	6.2

〈表 3-9〉에 의하면, 부인의 年齡과 教育水準이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접촉 모두에 큰 影響力을 갖고 있다. 전화를 통한 접촉이나 방문의 경우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教育水準과 社會的 地位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낮은 교육수준은 곧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아서 중산층처럼 친족과 빈번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한 구조적으로 해체와 유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현상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들은 교환정도가 매우 낮은 고립된 核家族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이효재, 1971; 조은, 1990). 또한 부모들이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도 적고, 노인들은 자녀의 경제적 보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주거거리의 영향력이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경우 모두 절대적이다. 즉, 地理的 距離가 좀 더 빈번한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접촉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에 비하여 빈번하게 친정부모와 같은 동네 또는 이웃에 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정부모와의 근거리 거주는 취업여성의 비공식적 지원에 대한 욕구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빈번한 접촉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家族週期가 부모와의 接觸에 미치는 영향은 시택과 친정의 경우에 따라서 매우 相異하다. 즉, 시부모와의 접촉은 가족주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친정부모와의 접촉은 가족주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는 친정부모와의 접촉 특히 방문의 빈도를 저하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친정부모의 방문보다는 시부모의 방문을 저하했을 때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家族週期가 시부모와의 동거율이나 접촉빈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친정부모와의 접촉빈도에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시부모와의 관계와는 달리 친정부모와의 관계는 여성의 여건에 따라서 그 접촉빈도가 조절되는 彈力的 關係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表 3-9〉非同居時 父母世代와의 接觸程度를 決定하는 要因들

변수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년간 방문회수	월간 전화회수	년간 방문회수	월간 전화회수
절편	4.505 ¹⁾ (.19)	1.904 ¹⁾ (.16)	4.322 ¹⁾ (.18)	1.953 ¹⁾ (.15)
부인의 연령	-.010 ³⁾ (.00)	-.007 ⁴⁾ (.00)	-.009 ³⁾ (.00)	-.005 (.00)
부인의 교육수준	.031 ¹⁾ (.01)	.033 ¹⁾ (.01)	.059 ¹⁾ (.01)	.054 ¹⁾ (.01)
가족주기				
재생산기	.094 (.08)	.056 (.06)	-.022 (.07)	-.076 (.06)
집중육아기	-.088 (.07)	-.075 (.06)	-.214 ²⁾ (.07)	-.182 ²⁾ (.06)
육아완료기	-.069 (.09)	-.098 (.07)	-.214 ³⁾ (.08)	-.316 ¹⁾ (.07)
부인의 경제활동	-.025 (.04)	.011 (.03)	.060 (.04)	.021 (.05)
건강상태	-.030 (.04)	-.015 (.03)	-.026 (.04)	.055 (.031)
양친생존여부	.126 ²⁾ (.04)	.140 ¹⁾ (.04)	-.009 (.04)	.007 (.04)
주거형태(단독유무)	.012 (.04)	.060 (.03)	-.123 ¹⁾ (.04)	-.090 ²⁾ (.03)
거주거리				
(동일읍·면·동)	-.953 ¹⁾ (.12)	-.175 (.10)	-1.067 ¹⁾ (.13)	-.121 ¹⁾ (.10)
(가깝지는 않지만 동일 읍·면·동)	-1.238 ¹⁾ (.09)	-.264 ¹⁾ (.07)	-1.431 ¹⁾ (.08)	-.241 ¹⁾ (.07)
(같은 시도)	-1.505 ¹⁾ (.08)	-.270 ¹⁾ (.07)	-1.864 ¹⁾ (.08)	-.274 ¹⁾ (.07)
(다른 시도)	-2.450 ¹⁾ (.07)	-.615 ¹⁾ (.06)	-2.776 ¹⁾ (.08)	-.712 ¹⁾ (.06)
경제적 능력	-.062 (.04)	.070 (.04)	.073 (.04)	.167 ¹⁾ (.04)
R ²	.40	.12	.43	.18
사례수	2,653	2,680	3,344	3,376

註: 1) p< 0.001 2) p< 0.01 3) p< 0.05 4) p< 0.10

시부모의 경우는 배우자를 사별한 상태일수록 방문과 전화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친정부모의 경우는 양친생존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을수록 접촉빈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父母가 제측면에서 社會的 支援을 필요로 하는 狀況에 놓여있을 때 子女의 接觸 頻度 또한 低下됨을 보여주고 있다.

라. 女性의 經濟活動 與否別 家族觀

家族構造的 變化와 價値의 變化가 항상 동일한 速度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核家族化나 家族關係에서의 變化가 價値觀의 變化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價値觀 또한 領域別 또는 對象別로 상이한 변화의 속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가치관의 변화속도와 영역별 변화속도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족관의 제측면에 여성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子女觀

子女觀에 女性의 就業이 미치는 影響力은 매우 적다.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77% 정도가 자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 정도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강한 남아선호를 보이고 있다(表 3-10 참조). 오히려 就業보다는 教育水準과 家族週期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적인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子女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表 3-13 참조).

男兒選好의 경우는 年齡이 많을수록 또한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다. 즉, 자녀관은 교육수준별 차이가 크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적다.

2) 老後觀

老後觀에도 변화가 있어 자녀에게서 노후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3/4 이상이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단독세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로 10%가 안되고 있다(表 3-12 참조).

〈表 3-10〉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子女의 必要性和 아들 的 必要性에 대한 態度

(단위: 명, %)

제특성	유배우 부인수	꼭 있어야 한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기타
자녀의 필요성					
전체유배우부인	4,816(100.0)	3,719(77.2)	703(18.9)	378(7.8)	8(0.2)
미취업	2,900(100.0)	2,247(77.6)	418(14.4)	223(7.7)	6(0.2)
취업	1,917(100.0)	1,472(77.1)	284(14.9)	152(7.9)	1(0.1)
아들의 필요성					
전체유배우부인	4,816(100.0)	1,213(25.2)	1,624(33.7)	1,956(40.6)	24(0.5)
미취업	2,894(100.0)	731(25.3)	936(32.3)	1,210(41.8)	17(0.6)
취업	1,908(100.0)	479(25.1)	683(35.8)	739(38.7)	8(0.4)

經濟活動 與否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장남 또는 형편되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85%내외),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여성일수록 현재도 노부부가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表 3-11 참조).

老後觀 또한 婦人의 經濟活動參與가 미치는 影響力은 미미하며, 대부분 교육수준에 의하여 이러한 態度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발전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이 이미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 부모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자신의 미래는 (앞으로의 준비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고로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分析結果들은 子女觀에서는 急進的인 變化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老後觀에서는 큰 변화가 있어 자신의 노후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세대간의 관계와 노후생활의 계속적인 變化를 예측케하는 단서이다.

〈表 3-11〉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理想的 老父母扶養者에 대한 意見 (단위: 명, %)

계특성	유배우 부인수	장 남	형편되는 자녀	단독가구	기 타
전체 유배우부인	4,800(100.0)	1,334(27.8)	2,734(57.0)	429(8.9)	303(6.3)
취업상태					
미취업	2,891(100.0)	797(27.6)	1,634(56.5)	271(3.0)	189(6.5)
취업	1,907(100.0)	536(28.1)	1,100(57.7)	158(8.3)	113(5.9)
전문직/사무직	386(100.0)	86(22.2)	226(58.7)	50(12.9)	24(6.2)
판매/서비스직	698(100.0)	196(28.1)	417(59.8)	44(6.4)	41(5.9)
기능직	360(100.0)	109(30.5)	210(58.3)	24(6.7)	17(4.7)
기타	463(100.0)	144(31.1)	246(53.1)	40(8.6)	33(7.1)

〈表 3-12〉 女性の 經濟活動與否別 자신의 老後扶養에 대한 意見 (단위: 명, %)

	유배우 부인수	생각해본 적 없음	함께살면 서 자녀의 부양받음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	스스로	기 타
전체유배우부인	4,800(100.0)	353(7.3)	276(5.8)	451(9.4)	3,714(77.4)	5(0.1)
취업상태						
미취업	2,889(100.0)	219(7.6)	139(4.8)	272(9.4)	2,255(78.1)	5(0.2)
취업	1,908(100.0)	134(7.0)	137(7.2)	180(9.4)	1,456(76.3)	1(0.1)
전문직/관리직	386(100.0)	27(6.9)	18(4.8)	26(6.7)	315(81.7)	0(0.0)
판매/서비스직	698(100.0)	49(7.1)	49(7.0)	66(9.4)	533(76.4)	1(0.1)
기능직	360(100.0)	19(5.2)	32(8.9)	44(12.3)	265(73.6)	0(0.0)
기타	464(100.0)	39(8.5)	37(8.1)	44(9.4)	343(74.0)	0(0.0)

본 장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이루어졌던 남녀간의 분업이 깨어지고 있는 맞벌이 가족에서 家族構造, 家族關係, 家族規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전업주부의 가족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核家族이 普遍的 家族形態이고 확대가족과 수정핵가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核家族을 이루고 있더라도 孤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일정수준의 持續的인 接觸을 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도 核家族의 孤立化 및 親族關係의 弱화를 주장한 파슨스(Parsons)의 논의보다는 핵가족에서도 수정확대된 형태로서의 친족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리트왁(Litwak)의 논의가 더 현실 검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대가족내에서 의사결정이 대부분 부부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대의 확대가족이 과거의 확대가족과는 다름을 볼 수 있었다.

〈表 3-13〉 子女觀과 老後觀의 決定要因들

변수들 ¹⁾	자녀의 필요성	남아선호	부모부양	노후설계
유배우 부인수	4,008	4,008	4,004	4,012
절편	1.155(.34)	-.497(.30)	-1.34(.33) ²⁾	-.458(.34)
부인의 연령	.005(.01)	.034(.01) ²⁾	.017(.01) ⁴⁾	.017(.01) ⁴⁾
부인의 교육수준	-.063(.01) ²⁾	-.054(.01) ²⁾	-.028(.01) ⁴⁾	-.092(.01) ²⁾
가족주기				
재생산기	.704(.14) ²⁾	.461(.14) ²⁾	.348(.16) ⁴⁾	-.277(.16)
집중육아기	.812(.14) ²⁾	.396(.13) ³⁾	.081(.16)	-.408(.16)**
육아완료기	.750(.17) ²⁾	.227(.16)	.105(.18)	-.352(.18) [#]
부인의 경제활동	-.090(.08)	.027(.07)	-.025(.07)	-.031(.08)
Model χ^2	76.401 ²⁾	98.597 ²⁾	24.275 ²⁾	79.168 ²⁾
d.f.	6	6	6	6

註: 1) 자녀관, 남아선호의 경우, 남편의 직업을 포함하는 모델분석을 하였으나,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음.

2) $p < 0.001$ 3) $p < 0.01$ 4) $p < 0.05$ 5) $p < 0.10$

둘째, 아직도 확대가족의 구성이 이루어질 때는 父系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정핵가족은 친정과 시댁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부계중심의 직계원리라는 규범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확대가족의 경우와는 달리 수정확대가족은 비교적 자발적인 관계로 친정부모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就業女性의 경우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와의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취업을 할수록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가정내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계중심의 친족관계가 갖고 있는 義務的이고 儀禮的인 성격이 갑자기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은 지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家族關係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經濟活動參與와 兩系制로의 變化는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就業女性의 경우 부모와의 同居率이 높다. 더불어 부모의 특성 즉 결혼상태와 경제적 능력 또한 동거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상이하다. 취업여성의 경우는 시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동거하지 않고 있으며, 시부모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을 때 확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확대가족은 부모와 자녀편에서 모두 惠澤과 費用을 계산한 후에 형성되며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유무가 그 惠澤과 費用의 계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就業女性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은 거의 받지 않는 대신 養育이나 家事補助등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에 비하여 부모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자체가 갖는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私的 支援體系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취업여성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변량 분석결

과 여성의 취업이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며 1/4 정도의 부인이 강한 남아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家族規範에 부인의 취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며, 대부분 교육수준에 의하여 이러한 태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발전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이 이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관에도 변화가 있어서 자녀에게서 노후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경제적인 기초가 마련됨에 따라 독립적인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노년기의 생활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미취업여성과 비교하여 볼 때 취업여성은 전통적인 핵가족과는 다른 모습의 가족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은 확대가족 내지는 수정확대가족이라는 家族形態가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여성은 정과 상호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兩系制의 방향으로 家族關係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獨立的인 老後生活을 추구하고 있다.

〈附表 1〉 父母生存類型(性構成比)

	유배우부인	
	빈도	%
유배우 부인수	4,806	100.0
생존부모수: 4명(양가부모 모두 생존)	1,153	24.0
3명 아버지 두분과 어머니 한분	186	3.9
아버지 한분과 어머니 두분	1,280	26.6
2명 아버지 한분과 어머니 한분	624	13.0
아버지 두분만 생존	20	0.4
어머니 두분만 생존	582	12.1
1명 아버지	82	1.7
어머니	647	13.5
없음	231	4.8

〈附表 2〉 父母와의 近距離居住를 決定하는 要因들(全體모델)

변수들	시부모와의 근거리 거주		친정부모와의 근거리 거주	
	경제활동중인 유배우부인	경제활동중인 유배우부인	전체유배우 부인	
유배우 부인수	990	1,273	3,400	
절편	-3.509(1.31) ²⁾	-3.591(1.00) ¹⁾	-3.753(.74) ¹⁾	
부부 특성				
부인의 연령	-.021(.03)	.018(.02)	-.001(.02)	
부인의 교육수준	.190(.06) ²⁾	.009(.04)	.047(.03)	
남편의 직업: (기능직)	-.422(.38)	-	.113(.27)	
(서비스직)	-.727(.41)	-	.003(.28)	
(사무직)	-1.537(.48) ²⁾	-	.209(.29)	
(전문직)	-1.587(.52) ²⁾	-	-.003(.32)	
가족주기 (가족형성기)	.640(.45)	.095(.38)	.391(.28)	
(양육집중기)	.391(.49)	.202(.39)	.107(.29)	
(양육완료기)	.338(.57)	.037(.46)	.195(.35)	
부인의 경제활동	-	-	.722(.14) ¹⁾	
부인의 직업 (기능직)	.481(.39)	.282(.35)	-	
(서비스직)	.299(.37)	.411(.30)		
(사무/전문직)	.433(.44)	.891(.35) ³⁾		
(시)부모의 특성				
건강상태	.199(.26)	-.090(.22)	-.078(.16)	
양친생존여부	.137(.27)	-.003(.23)	.049(.16)	
경제적 능력	-.435(.28)	.302(.23)	.162(.17)	
부모의 거주형태	-.340(.25)	.302(.24)	-.310(.15) ³⁾	
건강상태× 부인의 경제활동	-	-	-	
경제적 능력× 부인의 경제활동	-	-	-	
Model χ^2	30.708 ³⁾	14.514	37.970 ¹⁾	
d.f.	16	12	14	
%correctly predicted	67.6%	59.3%	60.4%	

註: 1) p< 0.001 2) p<0.01 *p<0.05

第 4 章 女性の 經濟活動 參與가 家族의 子女養育機能에 미치는 影響

본 장에서는 「1994년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의 양육이 어떤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意思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여성의 취업과 자녀 양육을 주제로 한 先行 研究들을 검토하고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示唆點을 정리하며, 이의 政策的 含意를 제시하고자 한다.

1. 女性の 就業과 子女 養育

여성의 취업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음의 몇가지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가 就業함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연구, 둘째, 就業한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받는 영향에 관한 연구, 셋째, 託兒 및 保育施設을 중심으로 한 代理養育體系에 관한 연구 등이다.

첫째는 아동의 福祉 및 教育的 측면에 관한 연구로서, 취업모의 자녀와 비취업모의 자녀가 發達上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아동의 학업성취 등의 인지적 성취, 정서 상태, 인성 측면의 영향을 측정한 것들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몇몇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88 등)를 제외하고는 비취업모와의 差異를 구별하지 않고 취업모 자녀의 특성만을 조사하였다거나 대부분 小規模 調査標本에

의한 결과이므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자녀발달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취업모의 階層과 職種¹⁶⁾이 주요하며,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滿足度가 높은 경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 주제는 女性福祉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들로서 취업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떤 負擔을 느끼고 가정의 環境的 여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代理養育者의 특성과 대리양육의 質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에 관한 연구이다. 취업모의 二重役割이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며, 적절한 대리양육자의 존재 특히 보육시설 등 支援서비스의 효과로 취업모의 부담이 감소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대리양육자 특히 보육시설 등의 質의 水準을 고려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취업모 부재시에 代理養育者가 있는지, 대리양육자의 양육은 어머니의 양육과 비교하여 兒童發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궁극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반 支援프로그램의 모색과 깊이 관련되어,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대리양육체계 즉, 託兒 및 保育施設의 형태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政策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보육체계에 대한 논의에 더욱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취업과 양육지원체계는 상호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성의 취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및 부양 등의 家事를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體系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

16)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취업의 동기와 태도, 근무시간, 직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환경이 취업모의 정서상태에 직결되며,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자녀의 특성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옥, 1996: 39)

한 체제가 마련되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결국 세 측면으로 살펴 본 취업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에게 最適의 養育環境을 제공하고 어머니는 그들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가장 적은 負擔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통된 연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리양육자의 실태는 여타 연구에서 간략하게 논의한 경우들이 있으나, 어머니 부재시의 자녀양육 방법을 여러 背景變數에 따라 實證的으로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몇 가지의 대표적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女性開發院(1987)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6세 이하 자녀 양육자를 조사하여, 도시 취업모의 1/4은 자녀를 일터에 데려가고 3/4는 가족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⁷⁾. 이 영(1986)의 子女管理 現況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직을 가진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60% 이상이 시부모 및 친정부모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및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行動科學研究所(1990)에서는 탁아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자녀의 양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도시 취업모의 경우 중류층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¹⁸⁾가 대다수(65.6%)를 차지한 반면, 저소득층은 자녀를 데리고 일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36.6%)을 차지하였고, 탁아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중류층(17.2%)보다 저소득층(26.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연구를 살펴 보면 조사대상의 취업모가정의 60~75%가 保育施設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1990년 이전에 실시한 조사로서 탁아 및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보육시설의 설치 확대와 정책

17) 확대가족에서는 97.5%가 가족원이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나, 핵가족에서는 26.2%가 시설 등에 위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대리양육자는 도시중류층과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 각각 시부모가 41.0%, 56.1%, 친정부모가 30.4%, 22.4%로 나타났다.

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1990년대 이후의 실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모 자녀는 누가 어떤 方式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둘째, 취업모 가정에서는 子女養育 費用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양육담당자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기혼여성이 經濟活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다음에는 이러한 세가지 문제영역에 대하여 전국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 조사 자료¹⁹⁾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子女養育의 實態와 부인의 未就業 事由를 파악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첫째, 취업모 자녀의 양육담당자 실태를 就業母 및 家口의 特性別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육아 및 보육시설 利用者의 특성을 파악하며, 둘째, 취업모 가정의 자녀양육 비용을 취업모 및 가구의 특성, 양육담당자별로 구분하여 養育費 支出 實態 및 與件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응답자인 부인이 취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본인 및 가정의 특성별로 분석하여, 就業妨害要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분석대상이 된 기혼여성은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4,510명으로서, 취업한 부인 1,839명과 미취업 부인 2,6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육담당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學齡前 兒童이 있는 491명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 중 이에 응답한 2,656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취

19) 분석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3장 1절 참조.

업모 및 일하지 않는 부인의 특성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직종, 일일 근로시간,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종 등을 설정하였고,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 현존자녀 수, 학령전 아동 수, 막내자녀 연령, 시부모 및 친정부모 동거여부, 부모로부터의 도움여부, 결혼가정 여부(혼인상태) 등을 포함하였다.

2. 就業女性 兒童의 養育 實態

가. 學齡前 兒童의 養育擔當者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6세 이하의 學齡前 兒童을 누가 돌보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表 4-1>과 같다²⁰⁾. 우선 전체 분포를 살펴 보면, 養育者가 없다는 응답이 25.0%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없다는 의미는 취업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이므로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일터에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 혹은 가정에서 돌보고는 있으나 적절한 양육자가 없다는 의미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家族이나 親戚이 돌보고 있는 경우는 24.5%로 나타났고, 이 밖에 파출부가 돌보거나 아이보는 사람을 채용(2.9%)하고, 이웃에게 맡기는 (0.3%) 등 탁아·양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내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유치원·놀이방·어린이집·학원 등 施設에 보내 돌보게 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7.6%로 나타났으며, 전적으로 시설에 보낸다는 경우는 40.0%였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취업모가정의 반수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용하는 시설의 種類

20) 본 분석에서는 학령전 아동이 1명 있는 첫째자녀 491명, 학령전 아동 2명이 있는 취업모의 둘째자녀 126명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학령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돌보고 있었다.

別로 살펴 보면, 가정에서 함께 돌본다는 응답과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을 종합해 볼 경우,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18.9%, 놀이방 16.4%, 학원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9%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두 군데의 시설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表 4-1〉 學齡前 兒童의 養育擔當者

(단위: %, 명)

양육담당자	전체	첫째자녀 ¹⁾	둘째자녀 ²⁾
양육자 없음	25.0(154)	20.1(99)	43.7(55)
가정에서 담당	27.4(169)	28.1(138)	24.6(31)
가족·친척	24.5	31.6	21.5
파출부, 아이보는 사람	2.8	3.2	3.7
이웃	0.2	0.3	-
시설 이용 및 가정 담당	7.6(47)	8.1(40)	5.6(7)
유치원/가족·친척	2.9	3.7	-
놀이방, 어린이집/가족·친척	2.9	2.2	5.6
학원/가족·친척	1.0	1.2	-
놀이방·어린이집·학원/가족·친척	0.4	0.4	-
유치원/파출부, 아이보는 사람	0.5	0.6	-
시설 이용	40.0(247)	43.6(214)	26.2(33)
유치원	18.3	27.4	4.1
놀이방, 어린이집	13.3	14.9	17.6
학원	5.5	7.9	2.5
유치원·어린이집·학원	2.5	3.6	1.7
기 타	0.3	0.6	-
전 체	100.0(617)	100.0(491)	100.0(126)

註: 1) 첫째자녀는 학령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임.

2) 둘째자녀는 학령전 자녀가 2명인 경우의 막내자녀를 의미함.

3) '양육자 없음'은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는가의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임.

한편, 학령전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 있는 경우의 둘째자녀 양육 담당자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육담당자가 없는 경우(20.1%, 43.7%), 가족 및 친척이 돌보는 경우(31.6%, 21.5%),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51.7%, 31.8%)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두번째 자녀에게 적절한 養育者가 不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低年齡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고, 나이 많은 자녀가 동생을 돌보는 경우가 있으며, 첫째 자녀에 비해 친지에게 養育 도움을 청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용하는 施設의 분포를 보면, 첫째 자녀의 경우는 저연령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14.9%)보다 유치원이나 학원(38.9%)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둘째 자녀의 경우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17.6%)이 유치원이나 학원(8.3%)에 보내는 경우보다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전 아동의 양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인 就業母와 男便의 특성, 그리고 家族의 특성에 따라 양육담당자의 분포를 살펴 보았다. 먼저 취업모의 연령, 학력, 직업, 일일 평균근로 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表 4-2>와 같다.

취업모의 年齡帶別로 자녀의 양육담당자의 유형을 살펴 보면, 20대의 젊은 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51.9%, 31.7%)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30대 전반(21.3%)이나 후반(23.0%)보다 월등히 높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30대(60%정도)의 절반 수준으로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에의 양육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젊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아 시설에 맡기는 것이 여의치 않고 친정 혹은 시부모 등에게 양육을 위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취업모의 學力別로도 자녀양육 유형의 차이가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더 많이 자녀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많아, 고졸 이하 취업모 가운데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졸 취업모는 44.6%, 대졸 이상 취업모의 경우는 32.1%에 불과하다.

〈表 4-2〉 就業母 特性別 養育擔當者

(단위: %, 명)

	가정	가정+시설	시설	없음	전체
연령 ¹⁾ (평균)	30.1세	32.5세	31.4세	30.3세	
20~25세	51.9	4.2	24.4	19.5	100.0(29)
26~30세	31.7	4.5	31.5	32.4	100.0(263)
31~35세	22.5	8.1	50.1	19.4	100.0(267)
36세 이상	23.4	20.8	40.1	15.8	100.0(58)
학력 ¹²⁾					
국졸	22.9	18.7	31.6	26.9	100.0(30)
중졸	12.7	7.4	55.8	24.2	100.0(92)
고졸	21.4	5.6	43.7	29.3	100.0(304)
전문대졸	33.6	10.3	32.4	23.7	100.0(50)
대졸이상	50.8	8.5	26.1	14.5	100.0(141)
직업 ¹⁾					
전문/준전문관리직	47.9	8.3	26.0	17.8	100.0(123)
사무직	51.0	18.2	28.9	1.9	100.0(64)
판매/서비스직	28.4	6.1	37.5	28.1	100.0(196)
기능/조립직	11.4	11.9	52.0	24.7	100.0(100)
단순노무직	9.7	0.8	53.1	36.5	100.0(131)

註: 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2) 졸업 및 중퇴 포함.

職業別 분석에서는 專門·準專門管理職, 事務職 취업모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한다고 하여, 그 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技能·組立職, 單純勞務職의 경우는 시설에 맡기는 경우(63.9%, 53.9%)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²¹⁾, 특히 양육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단순노무직(36.5%)과 판매·서비스직(28.1%)은 사무직

21) 이와 관련하여 취업모 남편의 학력과 직업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취업모의 학력 및 직업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취업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일수록 시설이용 비율이 대체로 낮으며,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도 국졸남편의 경우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 분석에서도 판매·서비스직,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높은 것은 취업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1.9%), 전문·준전문관리직(17.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이들의 자녀양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학력별 분석과 직업별 분석은 조사대상의 經濟的 地位와 階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²²⁾. 앞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고학력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직종인 전문·준전문 관리직이나 사무직의 취업모가 가정에서 양육을 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父母의 도움여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취업모의 직업에 따라 분석한 결과, 도움을 받는 경우는 무직이 33.5%로 나타난 반면, 전문·준전문관리직 67.0%, 사무직 72.7%, 판매·서비스직 49.2%, 기능·조립직 42.2%, 단순노무직 37.5%로, 전문·준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취업모의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모의 도움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

家族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가구규모와 현존자녀 수, 마지막 자녀의 연령, 부모 동거여부 등에 따른 양육담당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表 4-3>과 같다. 家口 規模는 4인 이하의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였는데, 4인 이하의 가구에서 전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높았고(42.0%), 양육담당자가 없다는 경우도 26.4%에 이르렀다. 5인 이상 가구에서는 시설 이용과 함께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비율(16.2%)까지 하면 반수정도가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現存子女 數에 따르면 1명이 있는 가구에서는 반수정도가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2명인 경우는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45.6%)가 1명인 경우(26.1%)보다 많았다. 마지막 子女의 年齡別로 보면, 가정에서 전담하는 경우가 자녀가 어릴수록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자녀 연령

22) 본 연구에 이용한 조사에서는 가구소득 등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높아짐에 따라 16.9%(0세)에서 65.8%(6세)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父母와 同居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보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44.7%,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79.6%가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경우 모두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28%, 시설이용만을 하는 경우가 40% 정도로 나타났다.

〈表 4-3〉 家口 特性別 養育擔當者

(단위: %, 명)

	가정	가정+시설	시설	없음	전체
가구규모 ¹⁾ (평균)	4.0명	4.5명	4.0명	4.0명	
가구원 4인 이하	26.4	5.2	42.0	26.4	100.0(487)
가구원 5인 이상	33.5	16.2	32.3	17.9	100.0(130)
현존 자녀수 ¹⁾	1.5명	1.8명	1.9명	1.9명	
1명	48.4	9.1	26.1	16.4	100.0(188)
2명	19.1	6.3	45.6	29.0	100.0(389)
3명	14.2	12.0	55.7	18.1	100.0(32)
4명	27.3	14.2	31.2	27.3	100.0(8)
마지막자녀 연령 ¹⁾	1.6세	2.5세	0.9세	1.2세	
0세	52.3	5.5	16.9	25.3	100.0(83)
1세	35.4	3.1	20.5	41.0	100.0(94)
2세	29.7	2.5	43.2	24.7	100.0(139)
3세	17.0	14.3	39.5	29.2	100.0(87)
4세	14.5	11.6	56.6	17.3	100.0(82)
5세	12.9	8.2	60.0	19.0	100.0(76)
6세	20.2	11.5	65.8	2.6	100.0(41)
부모 동거 ¹⁾					
시부모 동거	44.7	18.8	18.7	17.9	100.0(81)
시부모 별거	26.3	5.7	42.1	25.9	100.0(469)
친정부모 동거	79.6	5.8	14.6	0.0	100.0(18)
친정부모 별거	27.1	7.8	40.9	24.2	100.0(553)

註: 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면, 家庭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家口員 數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와 자녀의 年齡이 어릴수록, 그리고 父母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

며 대체로 이와 반대의 경우에 전적으로 施設을 이용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學齡前 兒童의 養育費用 支出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支出費用 수준에 따라 양육담당자 분포를 살펴 보면(表 4-4 참조), 지출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다수가 가정내에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78.4%)²³⁾, 3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가정에서는 대다수가(89.5%, 87.5%, 60.5%) 保育施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가정의 92.7%가 家庭內에서 양육을 全擔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의 극단적인 두가지 양상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양육비 지출수준이 경제적 여건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보는 사람이거나 자녀를 돌봐주는 부모 등의 代理養育人에게 양육비를 개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經濟的 餘裕가 있는 가정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양육에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投資가 미흡한 가정이 공존하는 것이다.

〈表 4-4〉 養育費支出에 따른 養育擔當者

(단위: %, 명)

	가정	가정+시설	시설	없음	전체
없음	78.4	9.8	11.8	0.0	100.0(102)
10만원 미만	10.5	7.0	82.5	0.0	100.0(114)
20만원 미만	12.4	12.4	75.1	0.0	100.0(153)
30만원 미만	37.5	16.7	43.8	2.1	100.0(48)
30만원 이상	92.7	4.9	2.4	0.0	100.0(41)

23) 양육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응답 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20%가량 나타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을 就業母의 特性別로 분석한 결과는 <表 4-5>와 같다. 취업모의 年齡帶別로 보면 젊은 층인 20대 후반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자녀가 어린 가정에서 더욱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취업모의 學歷別로는 국졸(6만 4천원)부터 대졸(15만 9천원)의 순으로 고학력의 취업모일수록 많은 양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정규직의 고소득직종에서, 저학력일수록 불안정 저소득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경제적 지위에 따라 양육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4-5> 就業母 特性에 따른 養育費用 支出 實態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연령 ¹⁾	20~25세	21	7.6	8.2
	26~30세	144	13.2	12.9
	31~35세	177	10.5	9.6
	36세 이상	41	10.4	9.2
학력 ¹⁾	국졸	19	6.4	6.1
	중졸	55	8.5	5.0
	고졸	177	10.0	9.0
	전문대졸	32	12.4	12.8
직업 ¹⁾	대졸이상	100	15.9	14.6
	전문(준)관리직	83	16.2	15.2
	사무직	52	15.0	14.1
	판매/서비스직	116	9.1	8.8
	기능/조립직	62	9.8	5.7
	단순노무직	68	7.9	4.7

註: 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취업모의 職業別로는 전문·준전문관리직(16만원 2천원)과 사무직(15만원), 기능조립직(9만 8천원), 판매서비스직(9만 1천원), 단순노무직(7만 9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의 취업모가정에 비해 관리직, 사무직 취업모가정에서는 절반 정도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²⁴⁾

한편 취업모의 家口 特性에 따른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表 4-6>과 같다.

<表 4-6> 家口 特性에 따른 養育費用 支出 實態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가구규모 ¹⁾	4人以下	296	12.4	11.1
	5人以上	87	7.7	9.5
현존자녀수 ¹⁾	1명	132	15.6	14.7
	2명	225	9.2	7.7
	3명	21	8.0	4.5
	4명	5	6.4	6.5
막내자녀 연령 ¹⁾	0세	51	12.4	13.6
	1세	46	16.1	14.2
	2세	97	12.6	11.8
	3세	51	10.8	10.1
	4세	55	8.3	4.8
	5세	50	8.8	5.3
결혼상태	6세	34	7.1	5.3
	유배우 동거	376	11.4	11.0
시부모 동거 ¹⁾	이혼·사별·별거	7	7.9	8.1
	동거	55	7.5	11.2
친정부모 동거	비동거	284	12.1	11.3
	동거	15	6.7	7.6
부모로부터 양육 도움받음	비동거	344	11.7	11.3
	양육 도움받음	64	7.5	10.9

註: 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家口規模에 따르면 4인 이하의 가구(12만 4천원)가 5인 이상 가구(7만 7천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지출하는 비용이 많았으며, 자녀가 한명일 경우에는 15만 6천원으로 2명 이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막내자녀의 年齡別로는 어릴수록 많은 양육비가 들었으며, 1세의 막내자녀(16만 천원)가 있

24) 남편의 학력 및 직업별 양육비용 지출은 취업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직업별로는 사무직(19만 4천원), 전문·준전문 관리직(14만 8천원)의 경우가 높은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다.

는 가구와 막내자녀가 6세인 가구(7만 천원)는 9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父母의 同居與否에 따른 분석에서는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7만 5천원, 6만 7원) 모두 별거하는 경우(12만 천원, 11만 7천원)보다 적은 양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에게서 養育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7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가구들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의 평균 양육비 부담액 11만 4천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 補助養育者가 가족 및 친지인 경우 양육비용 지출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4-7〉 子女養育 擔當者에 따른 養育費用 支出 實態
(단위: 명,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가정에서 담당			
가족·친척	166	9.1	12.6
이웃	1	20.0	-
파출부	1	50.0	-
가족·친척 / 파출부	2	15.0	7.1
아이보는 사람	16	33.4	16.2
시설 이용 및 가정 담당			
유치원 / 가족·친척	17	10.8	6.0
놀이방 / 가족·친척	3	16.0	8.7
학원 / 가족·친척	2	15.0	7.1
유치원·학원 / 가족·친척	6	8.2	5.3
어린이집 / 가족·친척	15	10.5	15.5
어린이집·학원 / 가족·친척	1	6.0	-
유치원 / 파출부	1	15.0	-
유치원 / 아이보는 사람	4	28.8	6.3
시설 이용			
유치원·학원	15	14.1	4.3
유치원·어린이집	3	9.0	5.2
유치원	107	8.7	4.2
놀이방	57	13.2	6.4
어린이집	42	10.5	6.4
학원	35	10.1	4.2
없음	25	9.0	5.0

한편 子女養育擔當者가 누군가에 따라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表 4-7 참조), 양육담당자 유형별 전체 평균은 家庭에서 담당하는 경우 11만 4천원, 施設에 함께 보내는 경우 12만 4천원, 施設에 보내는 경우 10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아이보는 사람이나 과출부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높고 실제로 家族이나 親戚이 담당하는 경우는 9만 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대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婦人의 未就業 要因과 子女養育

조사대상 가구의 부인이 就業하지 않은 경우 그 理由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表 4-8>과 같다. 子女 養育者가 없어서(50.3%)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적당한 일이 없어서(19.8%), 일하고 싶지 않아서(12.3%)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고, 그 밖에 健康問題와 妊娠 및 出産, 집안일, 식구반대의 이유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이 역시 기혼여성의 취업을 妨害하는 주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양육자가 있거나 적당한 일이 있으면 취업할 意思가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70%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4-8> 婦人의 일하지 않는 주된 理由

이 유	%
자녀양육자 없어서	50.3
적당한 일이 없어서	19.8
일하고 싶지 않아서	12.3
건강이 안좋아서	6.1
임신·출산 등으로	5.2
집안일 때문에	4.4
집안식구들의 반대로	1.9
전 체	100.0(N=2655)

부인이 취업하지 않는 이유를 부인의 연령과 학력, 그 남편의 학력과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表 4-9>와 같다.

<表 4-9> 婦人 및 男便特性別 일하지 않는 理由

(단위: %, 명)

	하고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 없어서	자녀양육자 없어서	임신 출산	기타 ¹⁾	전체
연령						
20대	8.9	7.8	69.3	9.6	4.4	100.0(788)
30대	10.3	19.6	56.3	3.5	10.3	100.0(1273)
40대	21.0	36.2	12.1	3.1	27.7	100.0(595)
학력 ²⁾						
국졸	13.4	31.4	20.7	1.6	32.8	100.0(222)
중졸	17.2	21.9	39.9	2.6	18.4	100.0(480)
고졸	10.9	19.3	53.9	5.9	10.1	100.0(1436)
전문대졸	9.1	13.7	66.6	5.6	5.0	100.0(131)
대졸이상	11.4	14.6	61.4	8.0	4.7	100.0(384)
남편학력 ²⁾						
국졸	10.9	35.9	18.5	1.7	32.9	100.0(111)
중졸	13.8	26.5	32.8	3.3	23.6	100.0(280)
고졸	12.6	17.4	52.4	5.9	11.7	100.0(1259)
전문대졸	7.8	12.7	64.7	6.8	8.0	100.0(136)
대졸이상	12.1	20.1	54.8	5.1	7.9	100.0(865)
남편직업						
전문/준전문관리직	15.2	21.2	48.8	4.9	9.9	100.0(434)
사무직	11.7	19.5	54.2	6.1	8.5	100.0(644)
판매/서비스직	12.7	16.9	51.6	4.9	13.9	100.0(565)
기능/조립직	9.8	19.0	53.3	5.7	12.3	100.0(784)
단순노무직	14.4	26.6	30.8	3.2	25.0	100.0(158)
무직	20.5	31.1	22.5	2.2	23.8	100.0(56)

註: 1) 건강이 안좋아서, 집안 일, 집안식구 반대 때문 등이 포함됨.

2) 졸업 및 중퇴 포함.

부인의 年齡帶別로는 출산 후 집중적으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20대는 자녀 양육자가 없다는 이유가 69.3%에 이르렀고, 30대에는 56.3%, 40대에는 12.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적당한 일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주요한 이유(36.2%)로 나타나 기존

여성의 경우 20~30대에는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퇴직하게 되고, 양육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인 40대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취업이나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결과를 할 수 있다. 부인의 學歷別로는 고학력일수록 자녀양육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전문대졸 이상 부인의 경우는 60% 이상이 이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국졸·중졸 부인의 경우 적당한 일이 없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저학력의 부인일수록 강력한 就業意思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男便의 職業別 분석에서도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적당한 일이 없다는 이유를 지적한 경우가 양육담당자가 없다는 이유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양육담당자가 문제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취업에 대한 의사가 더욱 강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이 低學歷이고 남편이 不安定 低所得 職種에 종사하는 경우 즉, 低所得層을 형성하기 쉬운 이들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문제를 우선 고려하기 이전에 취업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강하므로, 이들 계층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보호에 소홀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家口의 特性에 따라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表 4-10>과 같다. 家口規模로 구분해 보면, 5인 이상의 가구보다 4인 이하의 가구에서 자녀양육자가 없다는 이유를 더 많이(52.4%)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表 4-3>의 취업 부인가구의 양육담당자 실태에서 4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가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감안할 때, 일단 가구구성원이 많은 大家族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소규모 核家族의 경우 가정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4-10〉 家口 特性別 婦人의 일하지 않는 理由

(단위: %, 명)

	하고싶지 않아서	적당한 일 없어서	자녀양육자 없어서	임신 출산	기타 ²⁾	전체
가구규모						
가구원 4인 이하	12.1	18.7	52.4	5.8	11.0	100.0(2098)
가구원 5인 이상	12.9	24.0	42.3	3.1	17.7	100.0(557)
결혼상태 ¹⁾						
유배우 동거	12.3	19.6	51.0	5.3	11.8	100.0(2607)
이혼·사별·별거	13.2	29.8	11.7	0.0	45.3	100.0(48)
막내자녀 연령 ¹⁾						
7세 미만	4.8	10.9	76.4	3.3	4.7	100.0(1088)
13세 미만	16.8	35.7	26.5	2.2	18.8	100.0(564)
19세 미만	24.0	36.4	5.9	3.9	29.8	100.0(325)
시부모 동거 ¹⁾						
동거	9.8	19.9	44.3	8.6	17.3	100.0 (260)
비동거	11.7	17.7	56.1	5.3	9.2	100.0(1864)
친정부모 동거						
동거	20.9	12.2	46.1	0.0	20.7	100.0 (28)
비동거	11.9	18.4	53.1	5.4	11.2	100.0(2299)
부모님 양육도움 ¹⁾						
도움받음	5.2	12.4	71.6	3.7	7.0	100.0 (60)
도움받지 않음	14.2	26.2	34.4	8.4	16.8	100.0 (119)

註: 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2) 기타 이유에는 건강이 안좋아서, 집안 일, 집안식구 반대 때문 등이 포함됨.

結婚狀態에 따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달리 이혼 등의 사유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건강이 안좋아서, 집안 일, 집안식구 반대 때문) 이유가 가장 많고, 적당한 일이 없어서가 다음으로 지적되어 결혼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도 저소득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에 있어서 子女養育問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적당한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을 優先視 할 수 있다는 결과이므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막내자녀의 年齡帶에 따라 학령전 아동인 7세 미만의 아동과 초등학교재학 연령인 13세 미만, 중

고교재학 연령인 19세 미만의 연령대로 나눠 분석한 결과, 막내자녀가 학령전일 경우 76.4%가 자녀 양육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그 외 연령대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다.

父母와 同居與否別로는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시부모 44.3%, 친정부모 46.1%)보다 별거하는 경우에 양육담당자가 없어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더 많이(시부모 56.1%, 친정부모 53.1%) 지적하였다.²⁵⁾ 이는 앞의 양육담당자 실태에서 나타났듯이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양육을 대행해줌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子女養育 實態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未就業 事由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자녀를 가족이나 친척 등 家庭內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가 27.4%를 차지했으며, 養育者가 없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전적으로 保育 및 託兒施設에 보내는 경우는 40.0%, 시설에 보내면서 가정에서도 돌본다는 가정이 7.6%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첫째 학령전 자녀와 학령전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의 두번째 아이의 경우를 비교하면 둘째 자녀의 경우 양육자가 없다는 응답이 40%에 이르러 첫째 자녀의 두배정도였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첫째 자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就業母의 特性에 따라 양육담당자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적으로 家庭에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20대의 젊은 취업모일수록, 學歷이 높을수록, 專門·事務職의 직종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직종의 취업모들은 타직종에 비해 父母들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25) 시부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친정부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었다. 單純勞務職과 販賣·서비스職의 취업모들은 양육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째, 家口의 特性別로 양육담당자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양육을 전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는 비율은 家口員이 많을수록, 마지막자녀의 年齡이 어릴수록,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同居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녀양육을 위한 費用 支出實態를 분석한 결과,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의 취업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젊은층일수록, 高學歷일수록, 專門·事務職種일수록 보다 많은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特性別로는 4인 이하 가구이고, 자녀가 적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들과 별거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양육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다섯째,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는 자녀 養育者가 없기 때문이 과반수(50.3%)를 차지하고 있었고, 적당한 일이 없어서(19.8%), 일하고 싶지 않아서(12.3%)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있거나 적당한 일이 있으면 취업할 意思가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70%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子女養育者 不在의 문제를 주로 지적한 경우는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4인 이하의 가구에서,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들과 별거하는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適切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는 저학력의 부인과 남편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결혼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 많이 지적되어 이들은 자녀양육의 문제를 고려하기 보다는 취업에 대한 의사가 강력하여 이들 계층의 子女 養育 및 保護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第 5 章 低所得層 女性の 經濟活動 參與와 家族問題

1. 低所得層 家族의 特性과 家族問題

生態學的 觀點에서 볼 때 低所得層 家族은 經濟적 貧困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다중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취약한 미시체계이다. 이들 가족은 보유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중간체계나 거시체계와의 연계가 취약하고, 적응능력이 낮으며,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 건강한 인간발달과 정상적 가족기능의 수행에 위기로소로 알려진 많은 불리한 환경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소위 貧困문화로 일컬어지는 家族특성이나 人性特性, 生活樣式은 이러한 환경의 불리함에 대한 가족의 일정한 반응이나 적응방식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노동자 계층, 도시빈민층 등 低所得層 家族에 대한 關心과 研究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궁핍한 經濟적 狀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概括的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렀고, 家族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低所得層 家族의 불리한 經濟的, 社會的 環境이 가족원들의 일상, 구성원들간의 역학관계 및 가족기능에 어떠한 구체적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나라 저소득층 가족이 가지는 구조적, 기능적 특성과 가족문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低所得層 家族의 構造的 特性²⁶⁾

우리 나라 低所得層 家族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첫째, 核家族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대부분이 농촌영세농 출신으로 직업을 찾아 도시에 옮겨온 離農家族이 많다는 점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혼으로 도시에 와서 취업하였다가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教育水準이 낮고 도시에 생활기반이 약한 이들은 저소득층에 편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대구지역의 생산직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가호 외(1991)의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출신으로, 역시 농촌출신인 남편과 결혼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 가족구조의 두번째 특성으로는 소위 缺損家庭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25.3%로, 일반가구에 있어서의 여성가구주 비율보다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는 빈민가구 남성가장들의 높은 상해율, 발병, 사망률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김영모(1990)의 조사에서는 女性家口主의 비율이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正常家族(intact family)은 50.1%에 불과하였다.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경우 평균소득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62%에 불과하여, 특히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26) 저소득층 가족은 보통 빈곤가족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필요에 따라 약간씩 다른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복지부, 1990)가구당 월 평균 소득 6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객관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되는 소득을 가진 가정을 저소득층 가족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그런가 하면 '열악한 주거환경, 저소득, 불안정한 취업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가족'(박혜인, 1994)을 총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貧困의 여성화’(faminization of poverty)로 표현되는 여성가구주 가정의 경제적 열악함은 우리 나라 생활보호가구 중 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현재 50.7%로 과반수가 넘는다는 사실에 잘 반영되어 있다. 家族解體가 貧困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족의 높은 構造的 解體率은 또한 혼전동거 및 출산, 출가 취업, 가출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도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박숙자(1990)의 연구에서는 혼인신고를 생략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비율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구성상의 이러한 특성을 두고 궁핍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동거가 시작되기도 하며 결혼 및 이혼에 따르는 법적 복잡함, 비용 등의 현실적 문제로 볼 때 동거는 생활형편에 대한 적응방식이라는 것이다.

서구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家族安定性이 낮아지고 구조적 해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난과 가족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으면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세대간에 전승되기도 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빈곤한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와 동일시하며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보호받는 아동기”는 중산층의 자녀에게나 해당되는 현실이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있어서 아동기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애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서 부모품을 떠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부모들처럼 불안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경험을 일찍 하게 되고, 안정된 생활기반이 잡히기 전에 자녀를 출산하기 쉽다(Reese, 1982). 또 하나의 貧困家族의 불안정한 출발이며, 빈곤가족의 재생산인 것이다.

나. 低所得層 家族의 機能的 特性和 家族問題

“우리 동네에는 남자 일과 여자 일을 바꾸어서 사는 사람이 많다. 엄마는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오는데 아빠는 잠옷 바람으로 방에서 빈둥거리다가 화투치고 술도 먹다가 애들만 야단치고 밤에 돌아오는 엄마에게 주정하고 싸운다. 그런 아빠들은 보통때는 말씨가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판사람이 되어 큰소리치고 시끄러운 동네를 만든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엄마 오기만 기다리고 큰애들은 저녁 늦게 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빌거리고, 집이 재미없다고 가출 소년이 된다”(손덕수, 1983).

家族研究는 서구나 우리 나라 모두 中産層 家族에 편향되어 이루어져 왔으며, 貧困家族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서구의 경우 大恐慌(Great Depression)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 본 연구들이 있어서 경제적 긴장,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가족기능에 얼마나 복합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바 있지만, 이들 연구결과를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가족에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失業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들 연구 또한 慢性的 貧困으로 특징지워지는 저소득층 가족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더구나 이들 연구결과를 사회문화적 배경, 가족규범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우리 나라의 저소득층 가족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우리 나라의 저소득층 가족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가 대부분으로 가족의 일상, 내부모습에 관하여 분석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실태조사결과에서 저소득층 가족의 機能的 特性和 家族問題에

대한 短篇的 情報를 얻을 수 밖에 없겠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족에게 있어 貧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慢性的으로 지속된다는데 특히 문제가 있다. 만성적 빈곤이나 직업불안정성 등의 經濟的 壓迫이 가족의 삶의 質과 家族機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서, Briar & Knighton(1988)은 '심각한 빈곤으로 인한 박탈에 맞서 싸울만한 가족은 많지 않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만성적 경제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및 이웃환경, 폭력범죄에의 노출, 가족원의 건강문제, 역기능적 가족관계 등 많은 어려움의 근원이 된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식생활도 조악하고, 위생불량의 주거환경,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저소득층 가족은 慢性疾患 罹患율이 21.4%로, 일반가구의 8.0%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 생활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지게되는 가장 큰 이유가의 의료비로 나타나서, 가족원의 疾病으로 인하여 빈곤이 지속, 심화됨을 알 수 있다(노인철 외, 1995).

남성가구주의 질병은 저소득층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의 생계는 가구주 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도 소득활동을 하는 多家口員 就業方式(김익기, 1988)이나 全家口員 勞動(조은·조옥라, 1987)을 통하여 유지된다. 생계유지를 위해 부부가 모두 생산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남편의 手段的 역할, 여성의 表現的 역할이라는 전통적 형태의 성별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며,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은 경제적 단위로는 물론 情緒的 單位로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이재경, 1994) 지적된다. 임금노동에 가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二重負擔으로 여성들은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들어줄만한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애정

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증, 무력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하는 등 정신건강의 손상을 가져오기 쉽고(Belle, 1990),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은 子女의 社會化와 같은 주요한 家族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화를 잘내고 체벌을 자주하며 애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의 非效率的 養育行動(parenting behavior)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Chilman, 1991). 부모가 경험하는 環境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에 대한 兒童虐待가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Gabarino, 1977).

그런데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부모에게 있어 子女는 오늘의 어려움을 참게 하는 힘이면서 장래의 희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빈곤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의지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자 애를 쓰며 교육을 통한 자녀의 계층 상승을 기대한다. 생활비 중에 자녀의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강인순, 1990) 여성들의 취업도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손덕수, 1983). 그러나 자녀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투자면에서 중산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거나 학업부진이나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쉽다. 자원이 극도로 궁핍하기 때문에 人的資本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의식주의 기본생활해결에 매달려 자녀를 돌보고 교육할 여가와 여력과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 대부분이다. 김영모의 연구(1990)에 따르면 조사대상 빈곤가족에서 취학기 연령의 자녀들 중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12%에 달하였다. 教育의 機會를 박탈당한 아이들이며 貧困이 세습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다. 가출자녀가 있는 가족의

비율도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貧困文化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빈곤층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폭력에 대한 갈등 해결의존도가 높다는 점, 알콜중독 발생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 나라 저소득층 가족에서도 자녀교육이나 부부간 갈등해결에 暴力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 남성들의 男性優越意識, 家父長 이데올로기가 강하다는 특성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덕수(1983)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남자가 매로 다스리는 집안은 여자가 설 설 긴다’라는 유행어가 돌고, 두서너번 이상 구타당한 부인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옥선화, 1990)에 의하면 남편의 지나친 음주가 부부간 갈등의 첫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에서 행해진 유가호 외(1992)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41%가 남편의 술버릇을 부부간 문제로 지적하는 등 음주문제 또한 저소득층 가족에게 상당히 일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주와 폭력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 가족은 친척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親戚과의 경제적 교환을 비롯한 相互交換이 타계층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호 외(199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비율도 낮고, 응답자 대다수가 부모세대로부터 받는 도움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층 가족에게 부모세대를 포함한 親族集團이 人的 資源, 社會的 支援網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2. 低所得層 女性 就業과 家族問題

우리 나라 低所得層 家族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既婚女性들의 다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 가족의 특성 중의 하나로 지적

하고 있다. 남자가장이 실직,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혹은 가족의 소득 극대화를 꾀하는 생존전략으로, 女性の 就業率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婦人の 就業與否는 빈곤가족의 중요한 상황적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빈곤가족의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할 때 부딪히게 되는 家族問題에 대하여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족내의 役割構造, 相互作用 類型 등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부부관계, 자녀양육 및 사회화 등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여성의 취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나 방향은 就業環境과 家族環境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저소득층 여성들의 취업환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이들의 취업이 子女나 夫婦關係에 미치는 影響과 家族問題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 低所得層 女性就業의 現況과 問題

저소득층 가족에게 있어 남성 가구주 이외에 婦人이 所得活動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生計維持 戰略인 것으로(김미숙, 1990) 나타난다. 경인 지역 노동자가족의 경우 가구당 취업자 수는 1.68명(이효재·지은희, 1988: 79)이며, 주부의 취업률은 61.5%였다. 도시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빈민가족들의 경우에는 29.2%만이 남성 가구주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었으며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가 36.4%, 자녀까지 버는 경우가 5.0%이었다(조 은·조옥라, 1992: 13). 강인순(1990)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빈곤가족의 약 1/2는 생계를 남성의 소득에 의존하지만 그외 1/2는 專業이든 副業이든 가구구성원 중 주로 부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所得의 結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결혼전 직장을 다녔던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결혼생활이 결혼 후에 부인이 취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김미숙, 1990). 여성의 취업은 가계소득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必須的인 所得源으로, 유가호 외(1992)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가계소득의 40%~49%를 담당하는 경우가 24.4%, 30~39%를 담당하는 경우가 45.5%에 달하였다. 한편, 현정혜·박혜인(1993)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16.8%가 가구주였으며 남편이 무직인 경우도 1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의 취업이 家計補助的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生計擔當者 역할을 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가구주가 현재 취업을 한 상태로 나타난 경우에도 취업과 실업 상태가 계속 엇갈리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의 상당수가 부인의 소득활동 없이는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장의 가족소득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의 경우 총가구소득에 대한 婦人所得의 寄與도가 40%를 넘어서며, 일단 부인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低所得層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서구에서도 저소득층 가족에 있어서는 주부의 취업이 가족이 貧困線 이하로 떨어지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1991년의 미국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백인가정의 경우 아버지만 취업한 가족의 18%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주부가 취업을 한 가족은 2%만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1995). 빈곤층의 경우 부인소득의 家族所得 寄與도는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Rainwater, 1970; Brown, 1979).

이렇게 저소득층 가족에게 있어 여성의 취업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은 비교적 잘 밝혀진 편이지만, 취업이 여성자신들의 福祉에 얼마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

진 바가 없다. 취업이 子女養育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적인 관심에서 이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취업여성 자신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왔기 때문이다. 소수의 연구들마저 대부분 中産層 여성에 대한 것으로, 취업상황이 貧困女性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기혼여성에게 있어 취업은 二重役割 수행을 의미하며, 따라서 역할과다에 따르는 身體的, 心理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여성의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돈을 번다는 것이 자경심과 통제감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전반적인 心理的 福祉感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Mirowsky & Ross, 1986; Pearlin et al., 1981) 있지만 그러나 취업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취업의 조건 및 동기, 남편의 가족역할 분담정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취업을 한 경우, 남편의 家族役割 分擔程度가 낮은 경우, 그리고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혼여성에게 있어 취업은 많은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특히 이러한 제반 여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就業이 여성의 복지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환경은 대부분 낮은 賃金, 열악한 作業條件, 不安定性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저소득층 남녀가 소속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공식부문에 흡수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약 3/4은 非公式部門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형, 1985).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부문인 소규모의 전근대적 생산제조업, 소규모 서비스업 등 零細事業場에서 不完全雇傭 형태의 노동자로 일하거나 행상, 노점상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파출부·청소부·차담이·때밀이 등 각종 개인 서비스업은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이 가장 쉽게, 흔히 참여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비공식부문 노동은 노동시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나 절차같은 것이 생략된다. 이러한 非形式性은 가사 역할 수행과 병행하는데 이점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의 不安定性과 勞動 保護의 결여를 뜻한다. 임금도 낮고 급여형태도 월급제보다는 일당제, 시급제로 소득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가호 외(1991)의 연구에 따르면 월급제는 19.6%에 불과하고 43.5%가 일당제, 36.5%가 시급제로 전체의 80%정도가 月所得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자신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하면서도 소득 때문에 작업시간을 줄이기도 어렵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고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 속에 차별적이고 열악한 작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유가호 외, 1991).

저소득층 여성들의 취업은 대개 經濟的 理由 때문이고 自我實現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일하고 저임금을 받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満足度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재경, 1994). 생산직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일의 경우 임금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13시간 26분으로 하루시간의 56%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60% 이상의 응답자가 家事勞動時間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유가호 외, 1991). 일요일에도 대상자의 1/4 가량은 계속해서 직장일을 하고 있었으며, 쉬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일에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조희금, 1991). 여가를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적절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종사 여성들이 사무직 여성들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맹광호, 1988)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여성의 健康問題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가사노동과 직장일의 二重役割에 따른 과부담은 기혼취업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기는 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勞動時間의 증가가 所得의 증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위하여 일에 매달리게 된다. 또한 離農家族이 많아서 친족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일상에서 도움을 받을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하고, 代替勞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役割 過負擔 문제는 이들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유가호 외, 1991). 기혼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 이중역할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시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재화와 용역에 지출을 늘리게 되는데(Reynolds, 1980), 저소득층은 經濟的 資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짐을 덜어주는 시간, 에너지 代替財 購入이 어렵게 된다. 요즈음은 소비문화의 침투로 가사를 보조하는 전기밥솥,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저소득층에도 일반화된 것으로 논의되지만, 취업여성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는 자녀의 保育서비스 구입은 높은 비용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低所得層 女性の 就業이 子女에게 미치는 影響

여성의 취업이 子女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일상에서의 반복적 어머니 不在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취업모의 자녀와 비취업모의 자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여성취업의 直接的 效果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사회성, 문제행동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들 연구들은 그러나 취업의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一貫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때 비로소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취업이라는 변수가 多次元的 性格을 가지며, 따라서 단순히 취업여부만을 가지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인식의 확산은 就業環境, 家庭環境 등 여러 매개요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이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過程(process)에 대한 연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에 있어 계층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는 주로 中產層 家族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족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어서 빈곤가정의 아동에 관하여서는 단편적인 실태조사가 소수 있을 뿐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육아문제가 저소득층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은 많았다(양옥승, 1994). 저소득층 취업모 대다수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를 지적하였고(민정유, 1985; 정세화 외, 1987; 위미혜, 1988;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오선영·이숙, 1993), 자신의 직장생활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같다고 걱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유가호 외, 1992).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여성일수록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아동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이순형 외,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低所得層 女性이 취업을 한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오선영·이숙, 1993).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 과정요인들을 저소득층 가족의 현실과 연결시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過程變數(process variable)로 어머니의 心理的 福祉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취업으로 인한 역할과부담과 역할긴장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질, 자녀와의 상호작용 패턴 등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否定的 影

響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就業動機, 作業條件 등이 자녀에 대한 영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경제적 필요에 의한 취업이 아니고, 職業滿足도가 높고, 소득,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역할은 오히려 어머니의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따라서 자녀에게도 성취지향성을 높힌다든지 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Branch, 1972; Etaugh, 1974; Yarrow et al., 1962).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우리 나라의 저소득층 취업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의 就業動機, 作業條件 등을 고려해 볼 때 취업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Marshall & Barnett(1991)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가사와 임금노동의 이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특히 役割緊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충분한 소득, 경제적 긴장, 남성가장의 실직 등은 자녀에게 쏟아야 할 어머니의 情緒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環境要因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의 우울증 등 心理的 디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父母行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는 어머니들일수록 자녀에게 반응적, 애정적이지 못하고 子女訓育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처벌지향적이 되는 등 비효율적 부모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Belle, 1982; McLoyd, 1990, 1994). 계층과 취업의 상호작용 효과로, 즉 저소득층 자녀들은 貧困과 어머니의 就業에 의해 二重的 타격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정변수는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時間의 量과 質이다. 어머니 취업은 아동과 相互作用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대체로 시간의 양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

간을 무슨 활동을 하며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시간의 質的 側面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장시간의 힘든 작업을 하는 저소득 여성 취업의 특성상 이들 어머니에게서 질적으로 우수한 시간(quality time)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적 매개요인은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줄 代理養育者가 있는가, 대리양육의 질은 어떠한가 하는 대리양육자 요인을 들 수 있다. 대리양육자의 安定性, 質에 따라 어머니 취업의 영향이 달라지며 대리양육자 요인은 子女가 어릴수록 특히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데 이들 연구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 나라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經濟的 理由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個人的 負擔으로 양육대리인을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박숙자, 1994)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子女의 放置로 나타난다. 영세지역 아동의 보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87)에 의하면 자녀를 일터에 데리고와 '준방치'상태로 두거나 집 또는 길거리에 '방치'하는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숙자, 1994). 따라서 低所得層 就業母와 子女를 위한 保育施設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90)의 보고서를 보면 1989년도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42.4%가 취업여성의 자녀로,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는 1백 8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13만명이 저소득층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난다(양옥승, 1994).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가족에 있어 여성의 취업이 자녀에게 肯定的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된다. 어머니의 취업이 가정의 所得을 높이고, 아동의 敎育費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肯定的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머니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敎育的 惠澤은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이라고 가정되고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취업모 자녀보다 就業母 子女가(Heynes, 1978) IQ, 교사평가, 지적 성취도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Smith(1994)는 어머니의 취업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23,000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低賃金 직업에 종사하는 低所得層 여성의 취업은 자녀에게 否定的 影響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여성취업의 영향을 階層의 影響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계층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다르고 또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에서 보면 취업모의 아동과 비취업모의 아동사이에 學業成就의 차이가 階層變數의 중재하에 나타나고 있으며 非行頻度의 차이도 나타났다.(Hoffman, 1974: Nye, 1974) 중산층 가정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사이에는 학업성적의 차이가 없으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보다 성취에서 떨어진다(Hoffman, 1974). 또한 비행발생의 빈도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의 범 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ye, 1974). 서울의 중·상류층, 중·하류층 지역 5개 국민학교 4, 5, 6학년 123개 학급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문희(1981)의 연구에서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아 집단에는 적응아집단의 경우보다 취업모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9.0% : 21.5%).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조사대상 학생의 어머니 중 취업모들이 低所得層에 偏重되어 노동, 서비스, 상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적응아의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 보면 전문직 취업모 자녀 중에는 부적응아가 한명도 없는 반면 상업이나 노동에 종사하는 저소득 취업모의 자녀 중에서 부적응아가 가장 많았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저소득층의 부모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녀를 교육시켜 자녀의 성취에 의해 貧困을 벗어보려는 기대를 공유

한다. 여성들의 취업도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취업모들이 勤務時間이 길거나 피로도가 높은 직장 생활과 전담해야 하는 가사의 二重 負擔으로 인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거의 쉬지않고 일해야 할 정도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막연한 희망의 수준에 그칠 뿐,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지도 및 지원부족으로 학교의 준비물이나 숙제를 제대로 해가지 못하는 등 학습의욕 및 준비도면에서 떨어지고 종내에는 전반적인 學習能力의 低下를 초래하기 쉽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 잘 해서 대학 가 주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막연한 희망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는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강영자, 1985; 김재근, 1985)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용숙 외, 1988).

다. 低所得層 女性の 就業이 夫婦關係에 미치는 影響

여성취업이 夫婦關係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의 經濟的 扶養者 역할에 대한 일종의 위협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에 緊張이 형성될 수 있고 따라서 부부관계에 否定的 影響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Parsons 등의 구조기능론에 기초한 ‘地位競爭모델(status competition model)’ 이나 新經濟理論(New Home Economics)에 기초한 ‘相補的 役割모델(complementary role model)’ 등이 그 이론적 근거를 이룬다. 이들 연구들은 부인의 취업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Kessler & mcRae, 1982; Staines, Pottick, & Fudge, 1986; Stanley, Hunt & Hunt, 1986), 남편이 스스로에 대해 느

끼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자신감의 상실이 이러한 영향의 핵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기 연구결과들은 또한 부인이 취업을 한 경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최근들어 여성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취업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체계적 연구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經濟的 必要에 의하여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므로 남성의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된다(Nye, 1974). Hoffman(1989)도 상층가족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남편의 상대적 권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일수록 남편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취업여부 자체보다는 就業條件, 就業動機,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態度, 남편과 부인의 性役割 態度, 家事役割 分擔 및 가사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公評性 知覺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방향으로 연구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저소득층에 있어 여성의 취업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부정적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자아실현 등 非經濟的인 動機로 취업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은(박미령, 1988; 정혜정, 1985; 임정빈 외, 1989; 최규련, 1988; 한경미, 1995; 서동인, 1985)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및 전반적인 가족 만족도 (family life satisfaction)가 높아지며(Voydanoff, P., 1990) 職業地位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였다(Ulbrich, 1988; Pleck, 1985; Mirowsky, 1985)는 연구결과들 또한 마찬가지로의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支持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의 結婚満足도가 높았고(김양희 외, 1992; 최규련, 1988; 정혜정, 1985; 박미령, 1988; Pleck, 1985), 우울증 등 심리적 스트레스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pitze, 1988; Pleck, 1985). 그리고 남편의 가사조력정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김양희 외, 1992; 한 경미, 1995), 남편의 결혼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한경미, 1995) 결과도 있다.

주부의 취업은 夫婦間 家事役割 分擔構造에도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가사역할분담에 있어 저소득층 가족은 타계층 가족에 비해 부인의 전담률이 높다는 주장도 있고, 의식이나 태도는 전통적이거나 실제로는 남편의 가사역할 참여도가 높다는 논의도 있다.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부인의 취업은 남편들이 자녀의 일상 양육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어서 부인의 취업 이전보다는 자녀양육에 남성 참여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재경, 1994).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이 거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二重役割負擔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일은 가사 책임의 일부로 간주되며, 나아가 그들의 임금노동이 가사노동의 연장적 성격을 띠므로써 家父長制 社會의 性別 分業의 특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남편의 가사노동 비협조에 대해서는 체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들 스스로가 이미 가부장적 가치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거나 이미 기대가 낮아진 까닭에 포기하고 지내는 것일 수도 있다(유가호 외, 1992). 김미하(1990)의 저소득층의 취업 부부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도 남편은 부인이 자기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부인의 취업상태를 一時的이고 家計補助的으로 평가하고 가사노동에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들도 집안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면서도 남편의 협조를 바라지는 않는 점이 중산층의 취업여성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손덕수(1983)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약 1/2이 “남자가 부엌일을 하는 것은 꼴불견이다”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덕수, 1983). 남자가 ‘여자일’인 부엌일을 하는 것은 남자가장의 위신이 훼손된다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표현이고 ‘바깥일’ 대신에 ‘안살림’을 거들어 주는 것은 남성의 主務를 상실한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남편의 도움은 좋지만 부인을 위하는 길은 “설거지”가 아니라 ‘돈벌어 오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은 資源의 增加를 의미하고 따라서 夫婦間 權力關係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취업과 부부권력 유형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資源理論的 觀點에서 이들 연구들은 여성이 취업을 하면 가정내에서 의사결정권등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층이나 중류층 가족보다 저소득층에서 婦人所得의 相對的 寄與度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Foster & Metzen, 1981) 하층 가족의 경우 그러한 변화가 상류층 가족보다 더 클 것으로 논의되었다(Goode, 1960). 같은 맥락에서 우리 나라 저소득층 가족에 있어서도 여성의 취업은 부부권력관계에서 여성의 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중류층 이상 가족보다 의사결정에 여성이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이정우·김규원, 1986). 그런가 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家族生存 維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유교 이데올로기 속에서 권력관계의 자원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補助的인 것으로 수용하여 동등한 부부관계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으로(조혜정, 1981)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저소득층 여성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도(조형, 1985)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女性就業과 夫婦 權力과의 관계를 탐색한 실증연구 결과들도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주부가 비취업 주부보다 의사결정권이 크고, 취업주부내에서도 부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권력이 증가하고, 이 경향은 특히 저소득계층에서 현저한 것으로(강수경, 1985; 김홍은, 1986; 이정우·김규원, 1986; 이해경, 1986; 이진숙, 1989; 전춘애, 1989) 나타나는 연구들이 있다. 저소득층 내에서도 남편이 무직일 때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가장 높았고(이정우·김규원, 1986), 저소득층에서 부인의 취업은 특히 경제문제가 개입된 결정에서 부인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취업을 한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부부 합의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의 經濟權이 부부간의 葛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이정우·김규원, 1986). 반면에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연구들은 여성취업이 이들 가족의 부부간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복잡한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文化的 規範, 남편과 부인의 性役割 態度 등에 따라 권력관계의 변화 정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低所得層 偏母家族의 家族問題

우리 나라 偏母家族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死別이나 離婚으로 偏母家口가 된 경우가 약 110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5년에 84만 9천 가구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5만 7천 가구나 증가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남성가구주의 부재는 주된 부양자 상실을 의미하며 그 결과 대부분의 偏母家族이 經濟的으로 貧困한 상태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편모가족 중에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요보호 편모가족이 1989년에는 50.8%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 54.6%, 1991년 65.2%, 그리고 1992년에는

72.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보건사회백서, 1991~1993). 그러나 이들 빈곤 편모들의 가족생활, 특히 이들이 就業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족문제와 자녀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편모가족은 經濟的 자원, 일상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용, 부모 자녀 관계 등에 있어 양친가족과 차이가 나므로 여성의 就業이 家族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먼저 편모가족의 전반적 生活實態와 가족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어머니의 就業이 家族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해 보기로 한다.

가. 低所得層 偏母家族의 現況과 問題點

低所得層 偏母家族은 구조적이며 만성적 貧困과 생계를 위한 편모의 就業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나라 편모가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經濟的 어려움과 子女問題인 것으로 나타난다(공세권 외, 1995). 편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賃金水準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경제백서」에 따르면 1995년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임금의 59.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은 就業經驗이 부족하거나 學力이 낮고 專門技術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편모가 취업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낮은 임금노동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한 원인이다. 대전지역 빈곤층 편모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등(1996)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편모들의 54.3%가 단순노무직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그 중 파출부나 청소부, 식당종업원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90% 이상이 월평균 70만원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專業職 취업이 어렵다는 점, 비용 때문에 代理養

育者を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저소득층 편모들이 취업할 수 있는 職種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離婚으로 인한 편모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위한 經濟的 支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편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한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양부모가족은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는데 비하여 偏母家族은 약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cLanahan & Booth, 1989). 저소득층 편모의 경우 편모가구가 되기 이전부터 빈곤했던 경우가 많지만, Duncan & Hoffman(1985)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의 경우 이혼전 소득수준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많은 경우 편모가구가 된 후의 所得減少가 貧困의 原因임을 알 수 있다. 공세권 외(1995)의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족의 56.6%가 월평균수입이 7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3%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층 편모가족의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들(공세권·조애저, 1995; 김인숙, 1994; 김정자, 1985, 1988; 백경희, 1987; 송정옥, 1993)은 공통적으로 子女問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자(1985)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친구관계로 야기된 문제, 학교 성적 및 진학문제 등의 자녀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근심거리였고, 청소년 자녀의 비행, 가출등도 종종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편모가족의 자녀는 양부모 가족의 자녀보다 自我概念이 부정적이고 情緒的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된다(Amato, 1984; Kline & Tschann, 1991). 대인관계에서 억압적 충동적이며 학업성취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Astone & McLanahan, 1991) 나타난다. 또한 양부모 家族의 자녀들에 비하여 약물중독, 알콜 등 일탈행동을 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atsueda & Heimer, 1987).

1950년대, 1960년대에 수행된 서구의 편모가족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이러한 자녀문제를 비롯한 편모가족의 문제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偏母家族 자체를 問題視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대 들어서서 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편모가족의 강점, 대응행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편모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자녀문제는 표집의 선택성 등 研究方法의 誤謬로 실제보다 확대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偏母家族을 일률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관찰이 아니지만, 편모가족 자녀가 양부모 가족 자녀에 비하여 發達上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확실히 높으므로 어떤 요인들이 자녀문제를 가져오는가 하는 과정을 탐색해야 한다는 균형잡힌 시각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편모가족의 자녀들이 양부모 가족의 자녀들에 비하여 學業成就度, 適應力 水準 등이 낮고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요인들의 複合的 影響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偏母家族이 직면하는 불리한 환경과 스트레스가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고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빈곤층 편모가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자녀에 대한 정서적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原因이 될 것이다. 편모는 양친가족 어머니에 비하여 부적절한 부모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편모들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체벌 등 처벌적 훈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Zelkowitz, 1982). McLanahan & Booth (1989)는 경제적 압박, 역기능적 편모-자녀 관계, Demo(1992)는 편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Amato(1993)은 편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상실에 대한 심리적 적응 및 환경적 스트레스를 편모가족의 자녀들이 부적응이 높은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이러한 불리한 영향이 아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양부모 가족 자녀보다 학업을 중도 포기하

는 비율이 높아서(Krein & Beller, 1988; McLanahan & Bumpass, 1988) 청년기의 소득수준도 낮으며 스스로가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Corcoran, Laren & Solon, 1987). 높은 교육비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가 좌절감이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김정자, 1988)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찍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며, 미혼모가 되는 확률도 높고 離婚率도 양부모 가족의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cLanahan & Bumpass, 1987). 한마디로 편모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스스로도 편모가족을 이루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偏母가 된 原因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否定的 影響의 정도가 달라서, 선행연구들은 離婚으로 인한 편모가족이 配偶者 死亡으로 인한 편모가족보다 否定的 影響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偏母家族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문제 외에도 社會的 支援의 喪失, 居住地의 변화 등 많은 環境的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거주지의 변화는 특히 편모가족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변화 중의 하나이다. 특히 離婚으로 편모가 된 경우 대부분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주거이동은 새로운 이웃환경이나 生活條件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社會的 關係망의 상실도 의미하게 된다.

나. 偏母의 就業과 子女問題

공세권 외(1995)의 조사에 따르면 偏母의 就業率은 87.7%로 유배우 부인의 취업률 34%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들이 취업전선에 들어가거나, 이미 취업을 하고 있던 어머니들의 경우 經濟的 必要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늘이는 것은 편모가족이 되면서 자녀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변화이다. Duncan & Hoffman(1985)에 따르면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 중 1년에 100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51%에서 이혼후에는 7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일상에서 適應을 요하는 스트레스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편모의 就業은 役割過負擔을 가져오고 자녀를 돌볼 時間的 餘裕가 없게되므로 父母役割 수행에 否定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편모의 就業이 자녀의 問題行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時間이 충분한가 여부와 자녀의 활동 및 생활에 대한 충분한 監督과 統制가 이루어지는가 여부이다. 서구의 연구들에 따르면 편모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監督이나 相互作用의 時間과 量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학교숙제에 대한 도움이라든지(McLanahan et al., 1988), 가정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감독정도가 낮고, 자녀들이 일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개입하는 정도도 낮아서 편모가정의 아이들은 양부모 가정의 아이들보다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McLanahan & Booth, 1989). 대부분의 편모들이 家計責任者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心理的 에너지 부족하다는 점을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편모는 먼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이나 지도에 사용할 시간이나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자녀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처벌적 훈육을 사용하는 등 非效率的 父母行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극소화된 부모역할수행을 Zussman(1982)은 “最小限의 父母役割 遂行(minimal parenting)”이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

김영희등(1996)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편모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70%이상이 토요일에도 일을 하였다.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 60%이상이 9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이들이 자녀와 함께 할 時間이 절대적으로 부

족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편모의 情緒的, 身體的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따라서 자녀와 함께 하는 相互作用의 質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편모의 자녀들은 貧困, 아버지 不在에 어머니의 기능적 부재까지 겹치는 다중의 불리한 발달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편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김정자, 1988; 백경희, 1987)에 의하면, 이들 가정의 자녀 3명 중 2명이 방과후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들은 생계유지에 바빠서 자녀교육에 신경을 쓸 經濟的·時間的 餘裕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편모에게 있어 就業이 가지는 肯定的 側面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소득층 편모집단 내 비교결과를 보면 취업한 여성들이 비취업여성보다 心理的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심리상태는 자녀에 대하여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여행동의 수준을 높이고 처벌적, 비일관적 훈육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效率的 父母行動을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김영희·한경혜, 1996). 김정자(1985)의 연구에서도 생활비를 스스로가 버는 편모들이 우울증 정도가 낮았으며, 친척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높은 우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自我尊重感이나 心理的 福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Kessler & McRae, 1982)들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일자리가 있어 직장에 나가는 것이 가정의 스트레스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편모가족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生計의 維持와 子女의 教育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이 자녀와 여성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는 否定的 영향을 최소화하고, 편모가족이 겪고 있는 多衆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社會政策的 支援이 요구된다.

4. 低所得層을 위한 家族政策

이상에서 低所得層 家族의 生活實態와 家族問題를 여성 就業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지적되는 偏母家族의 현황과 이들 偏母들의 취업실태 및 가족문제도 탐색하여 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연결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간단히 논의해보기로 한다.

우선 經濟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所得保障 또는 각종 手當의 現實化가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雇傭 및 賃金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가족에서의 여성취업과 관련된 어려움과 그 부정적 영향은 결국 經濟的 資源의 不足이라는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작업조건이나 임금수준이 보다 양호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되어야 하겠다.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지원의 활성화는 저소득층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모와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본다. 직업교육을 받는동안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므로(김정자, 1988), 교육훈련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여성이나 편모가족의 여성가구주를 위하여 고용자 측에서도 兒童保護 프로그램의 실시 및 勤務時間의 融通性을 높힐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역할과 가계책임자로서 역할의 二重負擔을 緩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子女養育責任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취업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부분 방치 내지는 준방치 상태에 있게 된다는 현황과 그에 따르는 여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을 돌볼 保育프로그램의 보급이 정책적 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偏母家族에게 있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 서울시 보건복지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저소득층 편부모 가족은 放課後 子女教育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96.5). 빈곤층 편모의 경우 대부분이 生計를 위해 취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이 방과후 집에 돌아와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자녀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관 중 초,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나 공부방 운영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겠다. 이들 복지관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의 적응, 학습문제, 진학문제 등에 대한 상담창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相談 서비스의 내실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兒童福祉法과 母子福祉法의 수혜대상 확대, 서비스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既存政策의 改善부터 시작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第 6 章 女性の 經濟活動 參與와 家族福祉政策의 特性變化

산업화 이후 傳統的 擴大家族의 體系가 크게 변천함으로써 家族이 가족성원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가족을 支持, 補完, 代理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관심은 사회체제의 존속을 위해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家族의 構造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복지국가들은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家族福祉政策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家族問題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老人, 兒童, 母子世帯 등 要保護者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치료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가족을 하나의 統合된 體系로 접근하는 시각이 부족하였다. 또한 가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國家의 家族政策的 關心은 매우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문제에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自由主義的 理念에 입각한 것으로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산업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人口學的 變化, 핵가족으로의 家族類型의 變化, 이에 따른 就業女性の 增加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취업한 기혼여성은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의 役割遂行과 經濟活動이라는 二重負擔을 감수하는 입장이 되었다. 취업기혼여성들은 취업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예컨대 자녀양육 등)를 個人的 次元에서 해결해야만 하였고 政策的 對應은 미비하였다. 즉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율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으나 1980년대 말까지 이에 대한 國家介入은 미약한 실정이었다.

한편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은 女性雇傭의 創出이라는 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經濟活動 參與는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도 産業勞動力의 제공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여러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女性人力의 효과적 창출이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즉, 우리 나라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女性勞動力의 효과적 창출을 위해서도 就業女性을 위한 家族福祉的 對應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여성취업에 따른 福祉欲求를 살펴보고, 취업여성을 위한 현 家族福祉政策을 분석해 보며, 이에 기반하여 앞으로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發展方向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家族福祉의 概念 및 類型

가. 家族福祉의 概念

家族政策의 일반적 의미는 政府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조치로서 一般的·統一的·統合的 觀點에서 가족생활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Kammerman & Kahn, 1978). 따라서 가족정책은 국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동 및 여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家族政策, 兒童政策, 女性政策間의 관계에 관해 우선 살펴 보고자 한다. 가족정책, 아동정책, 그리고 여성정책은 서로 관점만 달리 했지 실제 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런 혼란을 보이고 있다.²⁷⁾ 이러한 概念과 對象의 혼란이 왜 오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가족정책의 일차적 관심이 아동의 보호이기 때문에 廣義의 가족정책에 아동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여성정책은 가족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家族政策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미 가족구조나 가치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가 制度나 法律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制度遲滯 現象’이 일어난다(변화순, 1989: 141). 이렇게 변화해 가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채 전통적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여성의 의존적 지위를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家族政策과 女性政策은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존재하면서 때로는 갈등적 측면도 보였다(D. C. Miller, 1987: 289~292). 家族政策이 단지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내의 性平等 問題에도 관심을 가지려면, 새로운 概念化에 입각한 정책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의 가치적 갈등은 가족 내에서의 女性의 役割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家族支持的 政策이 반드시 여성의 의존적 지위를 강화시키는가? 단순히 가족지지적 정책이 여성의 의존성을 강화시킨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는 결국 가족에 대한 개념 및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와 궁극적으로 관련되며, 나아가 母性機能의 範圍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즉, 정책에서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전통적인 가사 일과 아동양육 등 保護業務까지 포함하는 擴大的 概念을 전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妊娠, 出産, 授乳 등 일차적 母性機能만을 여성의 재생산 역할로 간주하는 制限的 概念을 전제로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27) 예를 들어 한국여성개발원(1990)의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의 경우, 그 부제로 ‘여성·아동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라고 해놓고, 내용에 있어 가족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윤락여성에 관한 서비스까지 다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역할은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保護業務(Caring Work)를 포함한 再生産으로 간주되었으며, 현존 사회복지정책이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家族政策이性に 의한 勞動分業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여성의 일차적인 母性役割을 제외한 再生産 役割은 社會化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兩性平等을 추구하는 女性政策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家族政策은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또한 兒童政策도 가족, 특히 어머니의 전통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Miller, 1987: 289), 인식의 전환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적 성격의 家族政策은 兩性平等을 추구하는 女性政策과는 계속 갈등 상태에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女性の 勞動參與의 增加는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나. 家族福祉政策의 類型

家族福祉政策은 단일 制度가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關係이나 制度가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행해진 家族福祉政策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家族福祉政策의 分類이다. 따라서 家族福祉政策의 전반적인 性格糾明 뿐만 아니라 각 정책간의 論理差異도 밝혀 주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分類基準을 導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라 家族福祉政策을 類型化하기 위해 '福祉欲求'와 '標的程度'란 두 變數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을 '福祉欲求'의 차이에 따라 (1) 要保護家族, (2) 就業女性家族, (3) 一般家族 등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要保護家族이란 전통적으로 가족복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집단으로 빈곤 母子家庭

등이다. 둘째, 就業女性家族이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특별한 복지대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며, 셋째, 一般家族이란 普遍主義的 觀點에서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

한편, ‘標的程度’란 가족을 어느 정도 標的(Target)으로 했는가에 따라 政策을 분류한 것으로서 (1) 家族을 一次對象으로 하는 정책, (2) 家族을 兒童의 측면에서 보는 정책, (3) 家族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 등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家族을 一次對象으로 하는 정책이란 家族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도입된 정책이며, 둘째, 가족을 兒童의 측면에서 보는 정책은 家族이 아동을 양육하는 주요 主體이므로 아동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兒童養育의 수단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母子福祉事業 및 嬰幼兒保育制度 등의 정책이 女性福祉의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면 兒童福祉 혹은 家族福祉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家族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이란,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福祉欲求’와 ‘標的程度’란 두 변수에 입각하여 家族福祉政策을 분류해 보면, 이론상 9개 유형의 정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表 6-1>과 같다.

<表 6-1> 家族福祉政策의 類型

표적 정도 \ 욕구종류	요보호가족 (I형)	취업여성가족 (II형)	일반가족 (III형)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A형)	요보호가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I-A형)	취업여성가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II-A형)	일반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III-A형)
가족을 아동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정책 (B형)	요보호가족을 아동 측면에서 본 정책 (I-B형)	취업여성가족을 아동 측면에서 본 정책 (II-B형)	일반가족을 아동측면에서 본 정책 (III-B형)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 (C형)	요보호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I-C형)	취업여성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II-C형)	일반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 정책(III-C형)

1) 家族을 一次對象으로 하는 社會福祉政策

家族을 一次對象으로 하는 A형 정책은 福祉欲求라는 변수에 따라 要保護家族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I-A형), 就業母家族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II-A형), 一般家族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III-A형) 등 다시 세 유형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家族福祉政策 즉, 家族을 일차대상으로 한 意圖의 政策(explicit policy)이 존재하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에서 家族單位의 概念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 일반 모든 家族의 福祉問題에 관심을 가진 『家族福祉基本法(假稱)』이 제정된다면 A형 정책에 해당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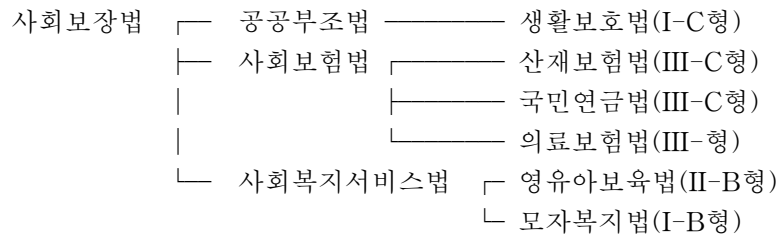
2) 家族을 兒童 側面에서 보는 社會福祉政策

가족은 아동을 위한 경제적 보장, 양육, 보호 및 사회화의 機能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을 언급할 경우 아동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家族을 兒童 側面에서 본 政策인 B형 정책도, 欲求라는 변수에 따라 다시 세 유형의 政策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要保護家族을 兒童 側面에서 본 정책(I-B형)에는 母子福祉法(1989년 제정)이 있다. 둘째, 就業女性家族을 아동의 측면에서 보는 政策(II-B형)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嬰幼兒保育法(1991년 제정)이 대표적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근로여성 뿐만 아니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유아보육정책의 일차적 대상이 자녀를 가진 女性勞動者이다.. 또한 男女僱傭平等法 중 母性保護 부문도 취업모가족을 아동의 측면에서 보는 정책에 속한다. 셋째, 一般家族을 아동의 측면에서 보는 정책(III-B형)에 속하는 법제는 社會保障法에는 없다. 이에선 서구 복지국가의 普遍主義 原則에 입각한 兒童手當 등을 들 수 있다.

3) 家族에게 影響을 미치는 기타 社會福祉政策

家族에게 影響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인 C형 정책도 욕구 변수에 따라 다시 세 유형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要保護家族에게 影響을 미치는 기타 社會福祉政策(I-C형)에는 生活保護法이 속하는데 생활보호법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貧困家族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다. 둘째, 就業女性家族에게 影響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II-C형)에는 적절한 法制가 없다. 셋째, 一般家族에게 影響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III-C형) 國民年金法과 醫療保險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분류는 가족에게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 社會保障體系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圖 6-1] 과 같다.

[圖 6-1] 社會保障體系에 따른 家族福祉法制的 分類



부인의 年齡帶別로는 출산 후 집중적으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20대는 자녀 양육자가 없다는 이유가 69.3%에 이르렀고, 30대에는 56.3%, 40대에는 12.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적당한 일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주요한 이유(36.2%)로 나타나 기혼 여성의 경우 20~30대에는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퇴직하게 되고, 양육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인 40대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취업이나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인의 學歷別로는 고학력일수록 자녀양육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전문대졸 이상 부인의 경우는 60% 이상이 이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국졸·중졸 부인의 경우 적당한 일이 없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저학력의 부인일수록 강력한 就業意思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男便의 職業別 분석에서도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적당한 일이 없다는 이유를 지적한 경우가 양육담당자가 없다는 이유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양육담당자가 문제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취업에 대한 의사가 더욱 강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이 低學歷이고 남편이 不安定 低所得 職種에 종사하는 경우 즉, 低所得層을 형성하기 쉬운 이들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문제를 우선 고려하기 이전에 취업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강하므로, 이들 계층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보호에 소홀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결과로 보인다.

결국 가족복지정책의 다양한 유형 중 就業女性을 위한 政策은 II형 정책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은 嬰幼兒保育政策과 男女僱傭平等法 중 母性保護 부분뿐이다.

2. 福祉國家와 家族

초기 서구 복지국가는 男性의 所得과 女性의 家事勞動으로 유지되는 가족형태를 은연중에 지지하였다. 英國 福祉國家의 기초가 되었던 『베버리지 報告書(the Beveridge Report)』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을 통한 안정적인 家族制度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를 계획하였다.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W. Beveridge의 구상은 가정주부가 남편의 배우자로서 給與나 年金을 공유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한 것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여성이 아동을 양육하

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복지국가 형성기의 이러한 母性을 보호하려는 복지 페미니즘(Welfare Feminism)의 의도가, 당시 여성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한 반면, 그대로 복지국가의 구조에 깊이 뿌리내려 性別分業의인 정책이 계속되는 기초가 되었다(정재훈, 1988: 56~59, 66~67). 즉, ‘남성은 생계 책임자이고 여성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사 책임자’라는 社會福祉政策의 전제가 강력한 전통적 가족윤리를 보존하고자 했으며, 이렇게 전통적 유형의 가족을 지지하는 社會福祉制度가, 여성의 家事從事者로서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家族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家族賃金體系(Family Wage System)라고 할 수 있다. 가족임금체계란, 남성이 전체 가족 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금을 벌어들임으로써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F. Williams, 1989: 61). 社會福祉政策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家族手當制인데, 영국 家族手當制의 발달을 고찰해 볼 때 가족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차적 사회복지의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L. Land, 1985: 9~29). 즉,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단위로 그것도 전통적 가족을 중심으로 福祉給與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은 가족 내의 家事從事者로서 男性에게 계속 依存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베버리지식의 이러한 전제들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78년 E. Wilson이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그대로 社會福祉制度에 반영되어 이는 현행 家父長的 社會秩序를 유지·강화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福祉國家는 가족을 강화시키고 원조하기 위해 의미 있게 작용하였으며, 國家는 여성의 無報酬 家事勞動에 뒷받침되어 소수 남자 성인의 소득에 가족성원 전체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家族體制를 社會福祉政策을 통해 지지해 왔던 것이다(E. Wilson, 1977: 7~13).

즉, 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여성의 勞動力 再生産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여성, 가족간의 관계를 분석한 F. Williams는, 國家가 家父長制와 資本主義의 利益을 대변하며,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는 의존자와 보호 담당자로서 勞動市場에서는 低賃金 勞働者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였다(F. Williams, 1989: 85). 결국, 기존 福祉國家의 家族政策은 國家의 본래 역할인 社會的 再生産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性別分業을 지속시키고 여성의 母性役割을 강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여성의 삶을 통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형태의 福祉國家가 발달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복지국가는 資本主義의 필요에 의해 발달하였기에 國家는 勞動力 再生産이라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이처럼 국가정책이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한 여성에게는 억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福祉國家는 資本과 男性 주도의 勞動運動의 타협으로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社會福祉制度가 노동자계급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을 주었지만 여성의 종속적인 의존을 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자본의 요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양보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남성 부양자와 여성 의존자’라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유지·강화하는 機制로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혜경, 1994: 31~34).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 국가가 정책을 통해 位階的 性別分業을 지지하고 여성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家父長制를 유지하려 하나? 그 이유를 가장 단순화시켜 답하면, 여성의 無報酬 家事勞動을 전제로 하는 性別分業 體制가 전체 社會의 再生産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國家가 가족을 유지하고 여성의 위치를 가족 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노동력 재생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低賃 女性勞動力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女性勞動力은

호황기에 노동에 유입되었다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방출되는 勞動豫備軍, 혹은 전쟁 같은 위기 시에 남성을 대신하는 대체적인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되는 것이다(E. Wilson, 1977: chapter 8).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하여 현대 資本主義國家에서 여성은, 기존의 가부장제적 질서에 따라 가족 내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남성의 衣食住를 보살피는 가사노동자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자라는 二重의 負擔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는 여성의 ‘어머니와 임금노동자로서의 二重役割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에게 재생산 역할을 담당하게 함과 동시에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 수급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産業豫備軍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서구 복지국가에서 가족 개념이 우리 나라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가정 내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적절한 社會的 支援體系 없이 여성취업이 증가할 경우, 여성은 이중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家族福祉政策의 介入이 전제될 때 현 취업여성의 이중부담도 덜어 주고 나아가 潛在的 女性勞動者를 勞動市場으로 유인할 수 있는 積極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就業女性과 福祉欲求

가. 就業女性の 現況

出生率 減少 등으로 가족 내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줄어들어 여성의 就業欲求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就業率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추이를 보면,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表 6-2>에서 보듯이 여성 經濟活動參加率이 1965년에는 36.5%, 1970년에는 38.5%, 1975년에는 39.6%, 1980년에는 41.6%로 꾸준히 증

가하다가, 1994년에는 47.9%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하다.

〈表 6-2〉 女性 經濟活動 參加率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여성경제활동인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남성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중 여성비
1965	3,051	36.5	76.6	34.3
1970	3,683	38.5	75.1	35.9
1975	4,456	39.6	74.5	36.9
1980	5,435	41.6	73.6	36.1
1985	5,975	41.9	72.3	37.5
1990	7,474	47.0	73.9	40.4
1994	7,657	47.9	76.4	40.3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이렇게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就業構造 側面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從事上 地位別 就業構造의 추이를 보면 無給 家族從事者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表 6-3>에서 보듯이, 1970년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50.3%이었던 반면, 1980년에는 37.4%로 감소하였고, 1988년에는 27.3%로 감소하고 있다.

〈表 6-3〉 女性の 雇傭地位別 勞働力の 分布推移

(단위: 천명, %)

연도	계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근근로자
1963	1,896(100.0)	17.0	0.3	75.3	7.4
1970	3,578(100.0)	21.0	-	50.3	16.1
1980	5,243(100.0)	23.1	-	37.4	39.4
1983	4,633(100.0)	19.7	1.0	40.4	38.9
1988	6,771(100.0)	21.5	-	27.3	51.2
1990	7,341(100.0)	16.1	2.7	24.6	56.7
1992	7,508(100.0)	16.1	2.8	23.8	57.4
1994	7,609(100.0)	16.8	2.9	22.8	57.6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반면, 賃金勞動者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에는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16.1% 였으나, 1980년에는 39.4%로 무급 가족종사자를 앞지르고 있고, 男女雇傭平等法이 제정된 무렵인 1988년에는 51.2%를 차지하고 그후 다소의 증가를 보여 1994년 현재 57.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既婚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表 6-4>에서 보듯이 1970년 36.9%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에는 47.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70년에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이 중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農家의 경우 농업이 家族勞動의 性格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 육아 및 농사일을 융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농업 부문 감소라는 産業構造의 變化와 같이 고려해 볼 때, 기혼여성의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6-4> 婚姻狀態別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推移

(단위: %)

혼인상태	1970	1975	1980	1985	1991	1994
기혼	36.9	43.1	35.6	41.0	47.2	47.7
미혼	44.3	55.8	49.1	39.5	46.4	46.8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表 6-5>에서 보듯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의 경우, 20~24세에는 65.9%의 참가율을 보이다가, 일반적으로 子女出産 및 養育期에 해당하는 25~29세에는 42.9% 30~34세에는 49.5%로 그 참가율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35세가 지나면 다시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結婚과 育兒問題가 여성의 經濟活動參與의 阻害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表 6-5〉 年齡別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

(단위: %)

연령	1989	1990	1991	1992	1994
15~19세	18.6	18.6	18.9	17.4	15.6
20~24세	68.5	64.5	65.9	65.4	64.7
25~29세	43.0	42.8	42.9	44.3	45.6
30~34세	49.5	49.6	49.5	47.9	48.6
35~39세	57.3	58.0	59.0	57.8	59.6
40~44세	61.0	60.3	60.4	60.5	64.2
45~49세	63.5	63.9	62.0	61.0	61.1
50~54세	60.4	60.0	60.0	60.8	58.7
55~59세	52.7	54.4	54.5	54.1	53.9
60세이상	25.7	26.5	26.5	27.8	27.9
계	46.5	47.0	47.3	47.3	47.8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이렇게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므로서 就業女性들의 다양한 福祉欲求도 증가하게 되었다.

나. 就業女性의 福祉欲求

취업여성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女性의 再生産 範圍에 관해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재생산의 범주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人間 자체의 再生産, 勞動力의 再生産, 그리고 기존의 社會的 關係의 再生産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재생산 영역의 상호작용 관계에서는 가정이 노동력의 생물학적·세대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장으로서 일종의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역할은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保護業務를 포함한 재생산으로 간주되었으며, 현존 사회복지정책이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여성 再生産役割에 대한 쟁점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 역할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政策에서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전통적인 가사 일과 아동양육 등 보호업무까지 포함하는 확대적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임신, 출산, 수유 등 一次的 母性機能만을 여성의 재생산 역할로 간주하는 制限的 概念을 전제로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자유방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가정 내의 재생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擴大的 概念에 입각하고 있으며 여성의 再生産 役割은 國家가 아닌 남성(남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가정내 재생산 역할을 강조하지만, 여성이 노동에 참여할 때에는 그의 재생산 역할이 부분적으로 社會化될 수 있다고 하여, 中道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가족 밖에서의 경제활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정내 再生産 役割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임신, 출산, 수유 등 一次的 母性機能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의 傳統的 役割은 社會化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이혜경, 1994: 44).

그런데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保護業務 機能은 여성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이제는 더 이상 가족내에 보호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거나 혹은 여성의 二重負擔을 시사한다. 따라서 취업 기혼여성의 福祉欲求는 가정과 일터라는 이중부담에서 오는 문제점, 그 중 일차적으로는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김양희(1991)의 경우 就業女性(맞벌이부부)家族 부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 ② 학교에서 기능 및 예능교육 프로그램
- ③ 학교급식 실시
- ④ 공공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단체생활 학습 및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
- ⑤ 부부를 위한 레크레이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 ⑥ 여성의 직업문제에 대한 생활, 법률상담소
- ⑦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활상담 전화
- ⑧ 노인을 맡아 주는 곳(託老所)
- ⑨ 관공소 및 은행 등의 야간창구 개설

제시된 9개의 프로그램 중 가장 要求水準이 높은 것은 學校給食 실시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가장 낮은 수준은 부부 프로그램과 託老所였다. 이 조사 결과 기혼 취업여성은 夫婦나 老父母 문제보다 子女體系에서 더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은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였는데 취업과 더불어 아동양육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취업여성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家族福祉政策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복지문제를 託兒欲求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최성재, 1992; 김성천, 1995; 변화순, 1995). 이들 연구를 종합하여 就業女性の 福祉欲求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一次的 母性保護와 관련된 福祉欲求

여성은 남성과 달리 妊娠, 出産, 授乳 등 一次的 母性機能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社會的 再生産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요청된다. 즉, 여성은 다음 세대의 勞動力 再生産을 담당하고 이와 같은 재생산 활동 없이는 그 사회가 존속될 수 없기 때문에 國家는 이를 각종 정책을 통해 보호해야만 한다. 이런 母性政策은 여성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이나 개별 자본 입장에서는 손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국가의 개입이 요청된다. 취업여성들은 産前産後休暇, 有給流産休暇, 妊娠檢診休暇, 育兒休職 등을 필요로 한다. 특히 농촌여성,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빈곤여성의 경우 현재 취업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母性保護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託兒欲求

행동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9년도에 就業女性の 子女數는 6세 미만 전체 유아 4백 53만명 중에서 42.4%인 1백 92만명을 차지하고, 이 중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는 1백 8만명 정도(저소득층 자녀 13만명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행동과학연구소, 1990). 就業母의 증가에 따라 0~5세 보육대상 영·유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表 6-6>에서 보듯이 1990년 1,086천명(0~5세 아동의 27.3%)에서 2000년에는 1,246천명(0~5세 아동의 30.1%)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表 6-6> 保育對象 嬰幼兒 推計

(단위: 천명, %)

아동구분	대상 인원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0-5세 영·유아	3,971(100.0)	4,118(100.0)	4,140(100.0)
취업모의 0-5세 영유아	1,926(48.0)	2,073(50.3)	2,192(52.9)
보육대상 영·유아	1,086(27.3)	1,166(28.3)	1,246(30.1)
저소득 영·유아	131(3.3)	141(3.4)	151(3.6)
일반 영·유아	955(24.0)	1,025(24.9)	1,095(26.5)

資料: 보건사회부,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

3) 子女 教育關聯 欲求

교육이 가정, 특히 母의 依存度가 높은 상황에서 자녀 숙제 봐주기, 학교 준비물 챙겨 주기, 도시락 싸 주기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김양희(1991)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就業한 既婚女性들이 자녀 도시락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커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타 保護 業務(障礙人·老人) 代行

老父母와 동거하는 경우, 老父母가 臥病狀態일 때 이들에 대한 保護

業務가 취업여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의 依存者를 돌보는 일은 여성, 특히 며느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 臥病老人이나 障礙人이 발생할 경우 여성은 상당한 부담과 갈등을 겪게 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김양희(1991)의 연구에 의하면 託老所의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 이들이 비교적 젊은층이기 때문일 수 있다. 점차 中長年 女性勤勞者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臥病老人의 保護業務를 대행해 주는 일이 취업여성의 家族福祉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5) 家事勞動

취업여성은 家事助力者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費用負擔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안일과 직장생활이라는 二重負擔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빈곤층 여성의 경우에는 有給 家事助力者를 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다양한 가사업무로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여성, 특히 기혼 취업여성의 증가 추이를 살펴본 후, 이들의 복지욕구를 一次的 母性保護와 관련된 福祉欲求, 託兒欲求, 기타 子女關聯 欲求, 그리고 老人 및 障礙人 保護代行 欲求, 家事勞動 欲求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 就業女性家族을 위한 家族福祉政策 分析

현재 就業女性이 안고 있는 문제는 거의 개별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회나 국가에 의한 支援體系는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취업여성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면 男女僱傭平等法 중 母性保護 부문과 嬰幼兒保育事業 정도이므로 이들 정책을 분석해 보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男女雇傭平等法 中 母性保護 部門

男女雇傭平等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雇傭上의 性差別 問題에 대한 법적조치는 존재해 왔었다. 1953년 제정된 勤勞基準法에서 고용상의 男女均等待遇原則(제5조)을 基本原則으로 규정하였으나, 雇傭上의 性差別이 법적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사실상 死文化되어 왔었다. 제6공화국 憲法改正 당시에는 男女平等權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女性差別禁止條項(제32조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기반 하여 1987년 男女雇傭平等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4월에 일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김엘림, 1993: 5~6). 男女雇傭平等法의 내용 중에는 母性保護와 관련된 조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근로자, 특히 기혼여성의 母性을 보호하기 위해 職場保育施設과 育兒休職制를 두게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2월 현재 職場保育施設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체는 87군데에 불과하다. 育兒休職制를 살펴 보면, 최근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보다는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어 1992년 7월 현재 300인 이상 근로여성 고용업체의 약 61%에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노동부, 1992). <表 6-7>에서 보듯이, 男女雇傭平等法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의무화된 1988년 4월 이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女性勤勞者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근로자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表 6-7> 育兒休職制度 運營實態

	1988	1989	1990	1991	1992
건수(6,189, 건)	478	975	1,561	1,991	1,189
전년대비 증가율(%)	-	106%	60%	27.5%	-19.4%

資料: 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운영실태조사』, 1992.

이렇게 育兒休職制度의 활용 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제의 8.8%만이 有給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無給이어서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는 저소득층 기혼여성에게는 육아휴직제가 유명무실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88년 이후 전체 利用件數(6,189건) 중 제조업체의 비율은 3.7%에 불과하며 84.1%가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1992). 그러므로 男女雇傭平等法은 母性保護를 위한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은 매우 미흡한데 기업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재의 정책이 재고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母性保護 措置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男女雇傭平等法과 같은 女性保護 立法이 오히려 여성의 차별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母性保護 등에 있어 國家責任이 확인되지 않은 채, 企業에만 비용을 전가할 경우, 은밀한 방법으로 여성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 男女雇傭平等法이 제정되었던 1980년대 후반만 해도 25~54세 남성으로 구성된 제1차 노동력의 고갈로 인해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 및 해외 현지 공장의 건립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는 기업 입장에서 母性保護를 위한 費用을 부담하면서까지 여성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값싼 해외인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女性人力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母性保護에 있어 國家責任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嬰幼兒保育事業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 女性人力의 주종을 형성했던 未婚 生産職 勞動力의 공급감소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人力活用に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노동력의 부족은 개별 자본측에 原價의 上昇, 統制力의 弱化 같은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人力確保에 주력하게 되었고 기혼여성을 포함한 女性人力 活用に 대한 구체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있어서 일차적 장애요인은 자녀양육 문제이고, 더욱이 低所得層 既婚 女性의 대부분이 양육문제가 해결되면 취업할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託兒需要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990년 10월에 당시 집권당인 民自黨은 『託兒關聯法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1.1 嬰幼兒保育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8월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嬰幼兒保育法은 男女雇傭平等法의 育兒施設規定과 1989년 개정된 兒童福祉法 시행령의 託兒施設規定 등을 통합·조정하여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그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表 6-8>에서 보듯이, 嬰幼兒保育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에는 1,919개의 保育施設에서 48,000명의 아동이 보육되었으나, 嬰幼兒保育法이 제정된 이후인 1991년 말에는 3,670개의 보육시설에서 89,441명의 아동이 보육되어 保育施設은 91.2%가 증가하고 보육아동은 86.3%가 증가하였다.

<表 6-8> 保育施設 및 保育兒童 推移

(단위: 개소, 명,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균 증감율
보육시설 (증감율)	1,919	3,670 (91.2)	4,513 (23.0)	5,490 (21.7)	6,975 (27.0)	8,129 (16.5)	35.9
보육아동 (증감율)	48,000	89,441 (86.3)	123,297 (37.9)	153,270 (24.3)	219,308 (43.1)	269,538 (22.9)	42.9

資料: 보건사회부, 『영유아보육사업현황』, 1993.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지침』, 각 연도.

1995년 현재 8,129개의 보육시설에서 269,538명의 아동이 보육되어 嬰幼兒保育法이 제정된 후 보육시설은 연평균 35.9% 증가하였고 보육아동은

연평균 42.9% 증가한 것으로 상당한 양적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1994년 10월에 와서 保健福祉部가 1995년부터 3개년간 약 1조 3천 억원의 재정 투·융자로 시설 7,590개소를 확충하여 아동 427천명을 추가 보육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表 6-9>에서 보듯이 1995년의 경우 目標達成이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95년 목표에는 공공 1,000개소, 민간 800개소, 직장 446개소가 계획되었으나 推進實績은 공공 46개소, 민간 2,014개소, 직장 50개소로 특히 공공과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5 보육아동수의 목표도 150천명이었으나 추진실적은 49.3%인 74천명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해 볼 때 政府의 보육시설 擴充計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6-9> 1995年 保育事業 擴充 推進實態

구 분	'95 계획	'95 실적	진도(%)
보육시설(개소)			
계	2,246	2,110	93.9
공공	1,000	46	4.6
민간	800	2,014	251.8
직장	446	50	11.2
보육아동(천명)	150	74	49.3

資料: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장관업무보고』, 1995. 12.

이러한 擴充計劃에도 불구하고 1995년 6월 현재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수 100만명 중 보육대상 아동 중 27만명만이 보육시설은 8,12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어 保育率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설이 절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나머지 아동은 가정에서 친척이나 가족(시부모, 친정부모 등) 또는 개별적인 고용탁아모에 의해 보육되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탁아시설의 미비가 기혼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성이 育兒와 經濟活動의 二重故에 시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嬰幼兒保育事業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表 6-10>에서 보면, 1995년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9,085개 중 민간보육시설이 4,125소이고 가정보육시설이 3,844개소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에 있어 國家責任을 강화하기보다는 市場機能에 맡겨 민간의 보육시장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保育政策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비가 월등히 비싸다. 예를 들어, 1995년 현재 保健福祉部에서 제시한 保育單價가 市地域의 경우 2세 미만의 영아일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월 197,780원, 민간보육시설은 244,830원, 가정보육시설은 286,530원이다(보건복지부, 1995). 따라서 현행 保育政策이 이육아문제를 보육비가 비싼 民間市場에 맡김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表 6-10> 主體別 嬰幼兒保育施設(1991~1995)

	1991	1992	1993	1994.6	1995
보육시설수(개소)	503	720	804	950	1,029
국공립	1,217	1,808	2,238	2,802	4,125
민간	19	28	29	31	87
직장	1,931	1,957	2,168	2,587	3,844
가정					
계	3,670	4,513	5,239	6,371	9,085
보육아동수(명)	89,441	123,297	149,102	207,233	293,747

資料: 보건사회부, 『여성정책 현황 평가자료』, 1994.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장관업무보고』, 1995.12.

이처럼 就業既婚女性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적고 就業母들의 欲求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해 많은 취업여성들이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여성의 가족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 母

性保護 및 자녀와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母性保護의 強化가 필요하다. 育兒休職制度가 性役割 分業의 思考의 극복을 위해 아버지도 가능하게끔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육아휴직제의 有給化를 통해 아동에 대한 社會的 保護의 개념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無給 育兒休職制로는 취업여성의 모성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가 없다. 특히 농촌여성 및 비공식 부문에 취업한 여성들은 현재 모성보호의 혜택으로부터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 이들 脆弱階層의 母性保護政策이 추진되어 할 것이다.

둘째, 保育서비스의 擴充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절대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94~’97)』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施設設立費用의 融資, 金利引下 및 保育費用稅制 惠澤方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 및 도시영세지역의 保育施設의 擴充과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개선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여성의 욕구에 따라 보육 형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 전일제 보육 등 보육 시간의 탄력적 운용 및 영아보육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保育政策은 민간시장에 의한 受惠者 負擔原則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및 貧困 母子世帶(7등급 이하)에게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일반 저소득 就業母의 경우 상당한 보육료 부담을 안고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저소득 취업모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프로그램의 도입 및 학교급식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就業母의 경우 학령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자녀를 두었을 경우 방과후 이들의 보호 및 학습지도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就業母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큰 부담이 되므로 취업여성의 家族福祉라는 측면에서도 학교급식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5. 就業女性을 위한 家族福祉政策의 方向

살펴본 것과 같이 취업여성을 위한 家族福祉政策이 미비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들을 위한 家族福祉政策의 方向은 어떠해야 하는가? 國家政策이 취업여성의 家族問題를 해결하려는 積極的 役割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여성의 社會參與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존의 ‘男性-生産領域 對 女性-再生産領域’의 二分法的 社會構成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女性人力政策에 대한 再考가 있어야 할 것이다.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는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도 産業勞動力의 제공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여러 福祉國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女性人力의 효과적 창출이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女性人力政策을 비교한 M. Ruggie는, 영국은 기혼여성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이미 발생한 문제를 事後解決하려는 方向의 政策이었던 반면, 스웨덴은 여성인력을 積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保護業務를 社會化하는데 주력한 方向의 政策이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⁸⁾. 스웨덴의 경우, 國家가 적극적으로 市場支配力을 통제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비교적 兩性平等的 認識에 기반한 女性人力政策

28) 물론, 이러한 차이는 여성 및 가족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이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영국은 자유주의적 복지 모델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에 입각하고 있다 (M. Ruggie, 1984: Chapter I).

이었다고 볼 수 있다. 男女平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단지 資本의 필요에 의한 産業豫備軍으로서의 女性人力政策이 아닌 兩性平等이라는 목표를 지닌 人力政策이어야 할 것이다²⁹⁾.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經濟成長으로 인해 제1차 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노동력 풀(Pool)이 감소되었을 때 女性勞動力을 동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人力政策은 女性人力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보다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묵인 및 해외 현지 공장의 건립 등으로 人力亂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女性勞動力을 産業豫備軍으로 취급하고 있는 태도를 반영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母性保護에 대한 國家責任이 강화되지 않은 채 기업에만 그 비용을 전담시킬 경우, 女性勞動力의 産業豫備軍의 特性은 계속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政府가 女性人力政策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여성 근로자의 母性保護에 좀더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첫 번째 논의와 관련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擴充이 요청된다. 즉, 여성이 가족 내에서 아동, 남성,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을 돌보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裝置가 필요하다. 이는 女性人力政策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기혼여성의 생산활동 참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의 傳統的 役割에 대한 社會化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가정과 일터라는 二重役割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보호업무 역할이 사회화되지 않은 채, 여성(특히 기혼여성)의 勞動需要만 증가할 경우, 여성이 가정에 머물러 保護業務를 담당할 것인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가의 주요 결정 변수가 ‘個人

29)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여성 인력정책이 비교적 양성평등적 성격을 보이거나, 어느 정도는 여성의 이중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A. Liera(1993), "Mothers, Markets and the State: A Scandinavian 'Model'?", *Journal of Social Polic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의 機會費用 變數'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노동자의 가족 중 장기 요보호자가 발생할 경우 그 여성은 費用變數에 따라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 保護業務 擔當者의 역할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비록 實效性이 낮고 미비하기는 하지만 현재 아동보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진척된 입장에서,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保護業務의 社會化 문제일 것이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在家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대상자의 수가 매우 적고, 이들 소수의 대상자들조차도 돌볼 가족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이기 때문에 취업여성의 가족 내 保護業務의 社會化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노인보호(특히 와병노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미비한 이유는 물론, 臥病老人의 보호 욕구가 아동에 비해 그 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노인을 돌보는 역할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의 家父長制的 思考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 노인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 아동 양육자(20대 후반~30대)에 비해 고령층(40~50대)이고, 이들이 아직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勞動力으로서의 아동 양육자에 비해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中長年層 女性의 勞動參與가 높은 미국의 경우,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보호 담당자로서의 역할간의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든 노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상당수의 직장여성들이 無報酬 休職을 택하거나 勞動時間을 단축하여 직장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Hagen & Davis, 1992: 496). 우리 나라도 점차 中長年 여성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臥病老人 保護의 社會化 문제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인에 대한 다양한 療養施設, 在家保護, 託老所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看護休職制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취업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母性을 강조하고 여성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가족 내로 한정하려 했던 영국 복지국가 형성기의 베버리지식 구상과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취업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인 嬰幼兒保育政策도 다른 사회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適切性和 實效性이 낮은 문제 이외에도, 전통적인 확대적 母性概念과 성역할 구분적 전제를 그대로 정책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남성-생산 對 여성-재생산’이라는 二分法的 社會構成 概念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재생산 영역에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여성을 生産 領域으로 이끌어내려는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취업여성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화된 후 이에 대처하는 事後的이고 消極的인 아닌 豫防的이고 積極的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이는 정책의 先賣的 性格을 강조하는 것으로 國家가 가족의 생활 주기를 고려하여 여성취업의 결과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이 기존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업무를 다양한 형태로 社會化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費用負擔에 있어 國家責任이 강화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保護業務의 社會化, 즉 國家의 財政責任하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이 전제될 때 현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潛在的 既婚女性勞動力을 勞動市場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第7章 要約 및 政策課題

본 장에서는 앞에서 각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선진국의 지금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정책적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여성취업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에서의 주제 구분을 좇아 각 주제별로 간단한 분석 결과의 요약과 함께, 여성취업과 관련된 가족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 要約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 혹은 남성과는 달리 취업여부의 결정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혼여성 개인에게 보다는 기혼여성 이 속한 가족과 보다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구조와 세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가족형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변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變異로 요약될 수 있는 데 전반적으로 취업여성 가족의 경우 일반적인 변화의 정도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면, 한국사회에서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형태이지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 擴大家族의 경우 노부모가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 부양의 수혜자

가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양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약 60%가 형편되는 자녀가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택적인 세대관계로의 변화가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와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는 취업여성의 경우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먼저,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율이 높다. 이는 擴大家族이 취업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시고 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의 건강악화가 擴大家族 형성에 따르는 비용을 높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시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擴大家族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交換關係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세대간의 관계가 비용과 보상이라는 교환론적 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에 비하여 부모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자체가 갖는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취업여성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에 따른 양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와의 접촉이 많아지는 것이다. 취업여성의 경우 친정쪽으로 修整擴大家族을 이루는 비율이 높으며, 친정부모와의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취업을 할수록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가정내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와 더불어 兩系制로의 변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가족변화에 기초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까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이루어지는 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참여의 증대에 따른 제반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자아실현과 같은 비경제적 동기로 취업을 하는 기혼여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양육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원을 훨씬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보육서비스의 증진과 같은 사회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부모가 자원으로서 갖는 중요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며 이는 곧 擴大家族 형성에 따르는 혜택의 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개인주의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擴大家族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구조와 세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과도기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기혼여성의 취업이 擴大家族을 증대시킨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擴大家族의 비중-바꾸어 말하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은 보육정책, 소득보장정책 등 제반 사회적 여건의 개선과 맞물려 변화할 것이다.

둘째로, 자녀세대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들도 개인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대간의 관계가 費用과 報償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孝意識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노후관에도 변화가 있어서 자녀에게서 노후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제도에 의해서 노후보장이 확실해지면서 노년층도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개인수준에서의 孝意識의 昂揚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결이 제한점을 갖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실천적인 측면에서 두가지의 함축성을 갖고 있다. 첫째, 자녀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孝思想의 고취보

다는 비용과 혜택의 틀에 영향을 줌으로써 세대간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孝思想의 고취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가족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위에 두는 사회에서는 점차로 交換原理的 原則에 의거하여 세대간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권력자원 증대에 의한 지위향상을 통해서 세대간의 교환관계가 '高互惠均等型'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擴大家族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 혜택을 유사하게 많이 주고 받는 高互惠均等型일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의 동거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이숙현, 손승영; 1992).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의 강화를 통한 노인들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질 때 세대간의 관계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세대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을수록 자녀들이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부모가 갖고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세대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힘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세대가 자원과 권력에서 동등성을 유지할 때 바람직한 세대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개인의 차원에서도 가정경제설계가 단일가족생애주기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 여유자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축적하기 보다는 자녀세대의 주거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이전시키는 두세대에 걸친 연속적인 가정경제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대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계층별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녀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갖게 되든지, 아니면 고립되고 있다. 반면 중산층부모들은 자녀

에게 경제적, 정서적인 도움, 집안일 도움을 줌으로써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별 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복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취업여성이 벌어들인 소득을 통해서 일 것이며, 거꾸로 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 특히 남편의 소득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 양태가 크게 영향 받는다. 본 분석의 결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부부의 취업 결합유형에 있어 저소득층과 상위소득층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자영업 혹은 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상위소득층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자영업이나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반면, 남편은 고용주거나 임금근로자이고 여성은 자영업이나 가족종사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취업하지 않았다는 가상적인 경우의 가구소득인 취업여성 본인의 소득분을 差減한 타가구원소득에 기준해 볼 때 소득이 낮을 수록 부인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취업부인의 소득을 포함한 가족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높을 수록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소득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의미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계층간의 부인 취업가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취업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부터 중위이상의 소득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중위 소득층으로 부터 상위소득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취업가구는 여성 비취업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소득을 누리고 있으나 취업가구가 누리고 있는 소득에서의 우위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가장 큰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좁어지며 매우 부유한 상위 5% 所得集團의 경우 여성취업가구가 도리어 비취업가구 보다 소득이 낮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여성의 家口所得 寄與度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구의 수준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비율로는 약간 높은 수준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서구의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편소득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특히 부부의 근로소득을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 부인의 소득이 가계에서 큰 몫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소득에 기여하는 바는 일부 예외적인 상위소득집단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의 취업이 가계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일부 중간 소득계층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여성의 소득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의 빈곤층에 관한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취업은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서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따라서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들 가족의 생존현실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여성의 취업확대가 소득평준화를 가져오고 특히 하위소득계층의 경제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은 인력자원을 활용한다는 목적과 함께 저소득 계층 가족의 經濟的 福利를 끌어올리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子女養育 실태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未就業 事由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취업모의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은 가족이나 친척 등 家庭內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가 1/3가량을 차지했으며, 양육자가 없다는 응답도 1/4에 달했고, 전적으로 保育 및 託兒施設을 이용하는 경우가 반수정도에 불과했다. 둘째, 20대의 젊은 취업모일수록, 취업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의 직종일수록 家庭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직종의 취업모들은 타직종에 비해 父母들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單純勞務職과 販賣·서비스職의 취업모들은 양육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할 수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째, 부인이 就業하지 않은 경우 주된 理由는 자녀 養育者의 不在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적당한 일이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있거나 적당한 일이 있으면 취업할 意思가 있는 경우를 응답자의 70%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네째, 子女養育者 不在의 문제를 주로 지적한 경우는 젊은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4인 이하의 가구에서, 막내자녀의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들과 별거하는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求職의 문제는 저학력의 부인과 남편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결혼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 많이 지적되어 이들은 자녀양육의 문제를 고려하기 보다는 취업에 대한 의사가 강력하여 이들 계층의 子女 養育 및 保護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의 經濟活動 參與를 용이하면서 동시에 子女養育의 質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女性就業과 家族福祉 向上을 위한 政策課題

여성의 취업을 중심으로 低所得層의 家族問題 및 이의 해결을 위한 政策을 검토하고 취업여성을 위한 전반적인 家族政策의 現況 분석을 토대로 여성취업과 관련된 바람직한 가족복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가족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인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취업에 관련한 가장 큰 정책의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확인했다. 양질의 인

적자원을 가진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보육제도를 확충하는 노력과는 별도로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키기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중년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권장하는 장치와 함께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並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정책적 비중이 두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기혼여성을 위한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자를 위한 노동시장이 内部勞動市場(Internal labor market)의 구조를 취하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일단 퇴직한 다음에 다시 중도에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퇴직후 재고용의 경우 정년후의 고령인력을 재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일부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중년 여성 인력을 퇴직 혹은 장기 휴직후 재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이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³⁰⁾

한편 저소득 계층 가족 여성들의 경우 임시직이나 비공식 부문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 여성들의 所得 寄與率이 서구에 비하여 낮은 점에 대한 개선의 방향도 이러한 열악한 임금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데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비숙련 노동력이 주종을 이루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알선을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통한 소득이 높아짐으로서 빈곤수준으로 부터의 탈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대를 통한 貧困의 世襲을 막는 방안이 가장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30)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된 상세한 정책논의는 김태홍, 김재원(1995)의 연구를 참조할 것.

이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중 여성의 경우 남자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경향이 높은 현실에 대한 유효한 정책적 대응이 될 수 있다(조 은, 1990).

여성취업과 관련된 세대간의 관계가 개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을 앞에서 밝혔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세대간의 관계 해결을 위한 정책은 크게 네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다.

첫째,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위한 정책이다. 세대간의 관계는 當爲의 문제에서 選擇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구조와는 별도로 부모와 밀접한 정신적, 감정적 유대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까지 할 수 있고 세대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감정적 유대로서의 세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유희정, 1995). 따라서 이러한 세대간의 관계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혈연관계이지만 서로 다른 개성과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세대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自發性에 기초한 세대간의 관계가 공고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修整擴大家族이나 핵가족을 근간으로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가에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교육과 여가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아동, 노인, 여성등 개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을 단위로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앞으로 修整擴大家族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修整擴大家族은 세대간의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노인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는데서 겪게되는 어려움과 시설보호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방안이다. 修整擴大家族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한 지붕밑에서 동거하되 공간적으로 세대별로 분리된 구조를 가진 주택이나, 자녀세대와 인접한 구조의 노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형태의 개발이 요청된다. 현재까지는 1987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3세대 동거형 주택이 시험적으로 분양된 적이 있을 뿐이다. 입주자의 평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로, 擴大家族 형성에 따르는 비용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부모님의 건강문제이다. 노인부양은 여성에 의한 가족노동으로 대두되었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볼 때 여성에게 부모부양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의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기적인 요양원 부양과 단기적인 병원부양이 아니면 가족내에서의 장기부양이라는 二分化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에 따른 노인부양의 비용이 더 극대화되고 있다. 즉, 노인부양을 가정에서 집중적으로 담당한다고 하는 현재의 틀하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는 부모부양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여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부양의 임무수행이라고 하는 무보수 노동을 당연시 해서는 안되며, 비공식보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부양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휴무나 휴직, 퇴직등의 직업적인 불이익을 경험하는 부양자들에게 직접적인 가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간호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간호수당(nursing allowance)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부양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在家老人福祉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는 가정내에 노인보호인력의 不在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가족에 의한 전통적인 노인보호를 대체·보완해줄 수 있는 在家福祉 서비스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후기노인은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과 가족생활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전폭적인 가족간호휴직제(family leave)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관계가 父系制에서 兩系制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족간호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양쪽 부모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동일한 정책적 중요성을 갖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맞벌이 가족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손자녀 돌보기, 집보기등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공적인 양육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부모로부터의 혜택은 감소할 것이고, 부모가 고령화되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동거에 따르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취업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부적절한 보육환경에 있다는 점이 뚜렷해졌다. 여성의 經濟活動 參與를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子女養育의 質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학령전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에는 기혼여성들

이 주로 代理養育者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취업욕구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보육체계를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양육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높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요즈음에 들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95~'97년에 1조 3천억원을 지원하여 '97년까지 수탁능력을 62만명(보육대상 아동의 95%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보육 서비스의 多樣化, 예컨대 대상 아동의 연령대, 수탁비용, 수탁시간 등이 다양화됨으로서 수탁 서비스의 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높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육지원체계의 개발은 이용계층의 상태를 고려하여 多層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보육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財政責任과 運營主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단기적으로는 대상을 二元化하여 공공시설의 확충과 민간시설의 확충, 그리고 양 시설 모두 서비스와 教育內容의 수준이 제고되도록 하는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체계의 모색에 있어서는 위탁이 용이한 거리, 적합한 費用, 質 높은 교육프로그램, 적절한 時間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低所得 취업모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國家의 재정지원이 확충되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고, 民間保育施設의 경우도 모든 계층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족에 保育費用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취업자체를 결정하는 데 큰 隘路要因이 되는 반면 일단 취업후에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이는 6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지출 때문에 근로시간 증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거나 일정소득 이상을 유지할 수 있

는 취업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양승주, 1993: 148~152),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대리양육체계의 보육시간도 보다 融通性있게 운영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에서의 활동이 가정의 요구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직장에서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범주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育兒休職制度 및 彈力勤務制度(flexible working system)를 기혼여성의 경우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므로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育兒休職制度의 경우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60일의 산전, 산후 휴가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출산휴가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육아 휴직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 육아관련 제도는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기존 제도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취업여성을 위한 全般的인 家族政策을 검토한 결과 그 간 家族問題에 대한 社會福祉的 接近은 要保護者를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치료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취업 기혼여성들의 문제도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채 個人次元에서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취업여성의 가족문제는 國家가 가족의 생활 주기를 고려하여 豫防的이고 積極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할 때, 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家族福祉政策이 기존의 ‘남성-경제활동 對 여성-집안일’이라는 二分法的 概念에서 탈피하여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던 保護業務를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때, 취업여성의 二重負擔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潛在的 既婚女性勞動力을 勞動市場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강수경, 『취업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 강인순, 『마산, 창원의 노동자 계급의 가족생활』,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 강일구, 『취업한 어머니를 가진 어린이의 생활양태에 관한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 강희경·최인현·윤종주,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고선주,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 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세권 외,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권태환 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 김교연, 『탁아서비스의 질이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명자, 『가족학 연구와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교문사, 1991, pp.23~58.
- 김미숙, 『중소도시 빈민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격 - 청주시 D동의 경우』,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 김미하, 『노동자 가족의 성별 분업』,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pp.207~246.
- 김성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5.
- 김수곤·심경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4.
- 김양희,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1991.

- 김양희 외,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 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 가정학회지』, 제30권 제3호, 1992, pp.11~28.
- 김영모,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0.
- 김익기·장세훈, 「도시빈민의 내부 문화와 빈곤의 재생산과정: 난지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1집 겨울호, 1987.
- 김재근, 『맞벌이 가정 아동과 홀벌이 가정 아동의 제심리적 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맞벌이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김정옥 외, 「도시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새마을연구소 새마을연구논문집』, 1985, pp.25~52.
- 김홍은,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4호, 1986, pp.179~188.
- 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운영실태조사』, 1992.
- _____,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 1995.
- 노미혜·김영옥,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한국여성개발원, 1993.
- 노미혜 외, 『여성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1986.
- _____, 『여성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1992.
- 노인철 외,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대한통계협회,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맹광호,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그 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심포지움 자료), 카톨릭 의대, 1988.
- 민정유, 『생산직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서비스에 관한 연구-섬유생산업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미령,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하 일연구-성역할태도, 주관적 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 박숙자, 「직업과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 편, 1994.
- 박혜인, 「도시 빈곤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1994.

- 변화순, 「가족정책 연구의 관점과 쟁점, 자리매김」,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5.
- _____,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여성연구』, 제7권 1호, 한국여성개발원, 1989.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각 연도.
- 보건사회부, 『여성정책 현황 평가자료』, 1994.
- 서동인,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서병숙,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6권, 1986, pp.53~87.
- 서병숙·장선주,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 아들 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제3호, 1990, pp.171~186.
- 성규탁,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제15권 제1호, 1995, pp.1~14.
- 손덕수, 「도시빈곤과 빈민여성」,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1983.
- 손승영,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가족」, 『열린사회와 가족』(‘94 세계가족의 해 기념논문집), 한국여성개발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4, pp.145~164.
- 송현애·김순옥,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1988, pp.83~102.
- 신영수, 「여성인력의 노동공급행태 분석」,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안유경,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양승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1993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1993.
- _____,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행태분석」,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5.

- 김영희,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업 성취』, 『여성연구』, 제9권 제31호,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양옥승, 『탁아정책과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 편, 1994.
-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오선영·이숙,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실태 및 탁아서비스에 관한 요구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제31집 제2호, 1993.
- 옥선화,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관계』(한국가족학연구회 발표요지), 1990.
- _____,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엮음,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울, 1993.
- 위미혜, 『도시 빈민층 기혼여성의 탁아에 대한 요구』, 이화여대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유가효 외,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제29집 제3호, 1991, pp.227~246
- _____,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제1호. 1992.
- 유희정, 『부모자녀관계』,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pp.215~254.
- 윤순덕·한혜경,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제14권 제2호, 1994, pp.105~120.
- 윤정혜,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서울과 인천의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집 제2호, 1986.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숙현·손승영,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제26집 겨울호, 1992, pp.145~164.
- 이순형, 『취업여성의 자녀보육행태와 심리적 적응』, 『여성연구』, 1991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이 영,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양육환경과 애착, 유아의 언어행동, 애착, 어떻게 다른가?」, 『우리 탁아의 질, 어디로 가야하는가?』 (1994년 삼성어린이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1994.
- 이 옥, 「기혼여성의 취업이 자녀양육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1996년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족학회, 1996
- 이용숙·김영화·최상근,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 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이재경, 「사회계층과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 편, 1994.
- 이정우·김규원,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서울시·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4호, 1986, pp.161~177.
- 이진숙,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의 상대적 권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이혜경,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_____, 『사회주의 여권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관계」,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73.
- 이효재·지은희, 「한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실태」,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1988, pp.69~97.
- 임정빈·이중숙,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제3호, 1989, pp.117~132.
- 장경섭, 「가족복지의 여성정책적 의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 발표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장현섭,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편, 1993, pp.42~80.
- 진춘애,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제3호, 1989, pp.133~146.
- 정세화 외, 「여성자립을 위한 현장연구I :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87.

- 정재훈, 『복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조병은·신화용,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12권 제2호, 1992, pp.83~98.
- 조옥라, 『도시빈민가족과 농촌영세빈농 가족의 비교』,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 조 은, 『도시빈민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0.
- _____, 『한말 서울의 가족구조』,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1993.
- 조 형, 『비공식부문 여성노동』, 『한국 여성과 일』, 이화여대 출판부, 1985.
- _____, 『한국 사회의 재인식(I) - 한국의 도시비공식 부문과 빈곤』, 한울, 1992.
- 조혜정, 『부부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 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제15집 가을, 1981, pp.37~47.
- _____, 『우리의 가정환경, 과연 자녀양육에 바람직한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1.
- 조희금,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1집 제3호, 1991, pp.101-112.
- 최규련,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최규련 외, 『맞벌이가족의 실증적 연구』,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1995.
- 최성재, 『가족과 사회정책(가족정책)』(추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족학회, 1992.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3.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1995a 및 각 연도.
- _____,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 의한 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 1995c.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95b.
- 한경미,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1995, pp.47~57.
- _____,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1991, pp.171~190.
- 한국가족학회 편,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1995.
- _____,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1995.
- _____, 『한국가족문제: 진단과 전망』, 1995.
- _____, 『가족학』, 1993.
- 한국교육개발원, 『어미의 취업과 학교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1988.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 여성·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1990.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전국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 조사연구』, 1990.
- 함인희,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1993.
- 현정혜·박혜인,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 과출부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제4호, 1992.
-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Belle, D.,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Lives in Stress - Women and Depress*, Sage publications, 1982.
- Blau, P. 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Y, John Wiley, 1964.
- Brody, E. M.,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21, No.5, 1981.

- Brown, Clair,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in Ralph E. Smith, (ed), *The Subtle Revolution*,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1979.
- Burden, D. S.,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life Responsibilities", *The Work and Family Interface: Toward A Contextual Effects Perspectiv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86, pp.222~228.
- Burgess, "The Family as a Unity of Interacting Personality", *The Family*, Vol.7, 1926, pp.3~9.
- CB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rends in Family Income: 1970~1986*, Washington, D.C.,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 Chilman, C.S., "Working Poor Families: Trends, Causes, Effects, and Suggested Policies", *Family Relations* 40, 1991, pp.191~198.
- Dale J., "Feminists &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Critical Social Policy*, 6(1), 1986.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4th edition), New York,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1.
- Ferree, M. M., "The View from Below: Women's Employment and Gender Equality in Working Class Families", B.B. Hess & M.B.Sussman(eds.), *Women and the Family: Two Decades of Change*, The Haworth Press, 1984.
- Finley, M. J., "Theories of Family Labor as Applied to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or Elderly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1989, pp.79~86.
- Glick, Paul C., "Updat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 1977, pp.5~13.
- Glick, Paul C. and Robert Parker, Jr., "New Approaches in Study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Demography*, Vol.2, 1965, pp.187~202.

- Goode, William,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Y: Free Press, 1963.
- Hanson, Sandra and Thedora Ooms,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3, Aug., 1991, pp.622~634.
- Haraven, T., *Family Time and Industrial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War in a New England Industrial Communit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Harris, R. J. & J. J. Hedderson, "Effects of Wife's Income on Family Income Inequality",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0, 1981, p.211~32.
- Hegen, J. & V. Davis, "Working with women: Building a Policy & practice Agenda", *Social Work*, 37, 1992.
- Hiller, Dana V. and William W. Philliberg, "Necessity, Compatability and Status Attainment as Factors in the Labor-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May, 1980, pp.347~354.
- Hoffman, L. W.,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ist*, 34, 1974, pp.859~865.
- Hoffman, L. W., "Maternal employment 1979". *American Psychologist*, 34, 1979, pp.859~865.
- Horrigan, Michael and Steven E. Haugen, "The Declining Middle-class Thesis: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111, 1988, pp.3~13.
- Hoschild, A., *The Second Shift*, NY, Viking, 1989.
- Karmerman, A. B. & Kahn, J.,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Columbia Univ. Press, 1978.
- Karoly, Lynn A, "The Trend in Inequality Among Families, Individuals, an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 Twenty-five Year Perspective", in Danziger, Sheldon and Peter Gottschalk.

- (eds.).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3, pp.19~97.
- Kertzer, D. I., "Household History and Sociological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7, 1991, pp.155~179.
- Kessler, R. & McRae, J.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7, 1982.
- Laslett, P., *The World We Have Lost, England Before the Industrial Age*, NY, Scribners, 1965.
- Leira, A., "Mothers, Markets and the State: A Scandinavian 'Model'?", *Journal of Social Policy*, 22(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Levy, Frank and Richard C. Michael. *The Economic Future of American Families: Income and Wealth Trend*.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1.
- Litwak, E., "Geographic Mobility and Extended Family Cohe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5, 1960, pp.385~394.
- Litwak, E. and Messeri, P., "Organizational Theory, Social Supports, and Mortality Rates: A Theoretical Converg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4, No.1, 1989, pp.49~67.
- Menaghan, Elizabeth. G. and Toby, L. Parcel,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Research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2, 1990, pp.1079~1098.
- Miller, D. C., "Children's Policy and Women's Policy: Congruence or Conflict?", *Social Work*, 32, 1987.
- Mirowsky, J.,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985, pp.557~592.
- Mutran, E. and Reitzes, D. C.,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 1984, pp.117~130.

- Nye, F. I., "Effect on the mother", in L.W. Hoffman and F.I.Nye (eds.)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1974.
- Parsons, T., "The American Family: Its Relation to Personality and the Social Structure",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T. Parsons and R. F. Bales (Eds.), NY, Free Press, 1955.
- Piotrkowski, Chaya S., Robert N. Rapoport, and Rhona Rapoport, "Work and Family", in Marvin Sussman and Suzanne Stei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lenum, 1987, pp.251~283.
- Pleck, J.H, *Working Wives/Working Husband*, Sage Publications, 1985, pp.103~131.
- Popenoe, D., "Family Decline in America", in Blankenhorn D., Bayme, S., and Elshstein Jr. (Eds.), *Rebuilding the Nest: A New Commitment to the American Family*, 1990.
- Rainwater, Lee, "Mother's Contribution to the Family Econom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History*, Vol.4, 1970, pp.198~211.
- Reese, M. F., "Growing Up: The Impact of Loss and Change", D. Belle, *Lives in Stress - Women and Depress*, Sage, 1982.
- Ruggels, S., *Prolonged Connections- the Rise of the Extended Family in 19th-Century England and Ame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 Ruggie, M.(1984), *The State and Working Women: A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and Swede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Smith, J. R., Brooks-Gunn, J., & Jackson, A. P., "Parental Employment and Children", *IRP Special Report vol II: Child Health, Education, and Economic Security*, 1995, pp.280~310.
- Smith, James P. and Michael P. Ward. "Time-Series Growth in the Female Labor For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1985, pp.59~90.

- Spanier, G. B., Sauer W., and Larxelere, R.,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1, 1979, pp.27~38.
- Spitze, G.,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1988, pp.595~618.
- Sussman, M., "The Family Life of Older People", in R.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Y, Van Nostrand Reinhold, 1985, pp.415~443,
- Tilly, Louise A. and Joan W. Scott,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Loutledge, 1987.
- Treas, J. and Bengtson, V., "The Family in Later Years", in Sussman M. B. and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Press, 1987, pp.625~648,
- Treas, Judith. "The Effe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1987, pp.259~88.
- Treas, Judith. "Trickle Down or Transfers? Postwar Determinats of Family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83, pp.546~559.
- Voydanoff, P., *Work & Family Lif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87.
- Voydanoff, P.,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of the Eighties", *Contemporary Families*, 1990.
- Voydanoff, Patricia and Robert F. Kelly,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Family and Marriage*, (Nov.), 1984., pp.881~892.
- Weite, Linda J., "Working Wives and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6(2), 1980, pp.272~294.
- Williams, F.,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9.
- Wilson, E., *Wome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Tavistock, 1977.
- Zelkowitz, P.,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D. Belle, *Lives in Stress - Women and Depress*, Sage publications, 1982.